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2-4

ISBN 978-89-98568-04-7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연구



김정득, 오정수, 박현주, 주은주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6
제1절 아동보호제도 및 현황	6
제2절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32
제3절 소결	71
제3장 대상자별 조사결과	73
제1절 아동복지전문가 및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조사결과	73
제2절 지역주민 사회복지 욕구조사	97
제3절 대전광역시 내 아동양육시설 시설장 및 관리자 심층면접 조사결과	111
제4장 결론	126
부록	142

표 차례

〈표 1-2-1〉 주민육구조사 지역별 조사대상인원수	4
〈표 2-1-1〉 전국 보호대상아동 현황	12
〈표 2-1-2〉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15
〈표 2-1-3〉 연도별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16
〈표 2-1-4〉 전국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17
〈표 2-1-5〉 전국 입양아동 현황	18
〈표 2-1-6〉 성별/ 연령별 전국 소년소녀가정 현황	19
〈표 2-1-7〉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내용	20
〈표 2-1-8〉 대전광역시 아동 및 청소년 현황	22
〈표 2-1-9〉 대전광역시 보호대상아동 발생 내용(2008~2011)	23
〈표 2-1-10〉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현황	24
〈표 2-1-11〉 대전광역시 보호대상아동 보호 내용(2008~2011)	25
〈표 2-1-12〉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현황(구별)	26
〈표 2-1-13〉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현황(시설별)	26
〈표 2-1-14〉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28
〈표 2-1-15〉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현황	29
〈표 2-2-1〉 아동복지법상의 용어변화	32
〈표 2-2-2〉 20세기 미국 아동복지변천사	37
〈표 2-2-3〉 위탁보호배치 유형	38
〈표 2-2-4〉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현황	44
〈표 2-2-5〉 동명아동복지센터 직원현황	47
〈표 2-2-6〉 동명아동복지센터 아동현황	48
〈표 2-2-7〉 긴급전화 접수현황	58
〈표 2-2-8〉 학대사례 유형별 현황	58
〈표 2-2-9〉 피학대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	58

〈표 2-2-10〉 에덴원 직원현황	63
〈표 2-2-11〉 에덴원 아동현황	63
〈표 3-1-1〉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대한 아동복지전문가(학계)의 의견	73
〈표 3-1-2〉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74
〈표 3-1-3〉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가(학계)의 의견	75
〈표 3-1-4〉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76
〈표 3-1-5〉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77
〈표 3-1-6〉 아동복지영역 내 다기능화의 방향에 대한 아동복지전문가(학계)의 의견	78
〈표 3-1-7〉 아동복지영역 내 다기능화의 방향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79
〈표 3-1-8〉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가(학계)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84
〈표 3-1-9〉 기능전환의 방향에 대한 아동복지전문가(학계)의 의견	85
〈표 3-1-10〉 기능전환의 방향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86
〈표 3-1-11〉 시설운영현황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평가	90
〈표 3-2-1〉 주민욕구조사 지역별 조사대상인원수	97
〈표 3-2-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9
〈표 3-2-3〉 지역의 살기 좋은 정도	100
〈표 3-2-4〉 지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101
〈표 3-2-5〉 지역의 복지 우선순위	102
〈표 3-2-6〉 지역문제의 심각성 정도	103
〈표 3-2-7〉 사회복지시설의 인지도	104
〈표 3-2-8〉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경험	106
〈표 3-2-9〉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의향	107
〈표 3-2-10〉 지역주민의 아동양육시설 인지도	108
〈표 3-2-11〉 아동양육시설의 대안사업	109
〈표 4-1-1〉 아동양육시설 구별 아동배치 현황	127
〈표 4-1-2〉 2013-2017년(5개년계획) 기간 중 아동양육시설의 배치 조정 방안	135

그림 차례

[그림 1-1-1] 연구의 필요성	2
[그림 1-2-1] 연구의 흐름도	3
[그림 1-2-2] 조사대상 및 방법	5
[그림 2-1-1] 전국 보호대상아동 및 인도된 아동 현황	13
[그림 2-1-2]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14
[그림 2-1-3] 성별, 건강상태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14
[그림 2-1-4]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내용	20
[그림 2-1-5]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내용에 대한 시도별 현황	21
[그림 2-1-6] 대전광역시 아동 및 청소년 현황	22
[그림 2-2-1]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34
[그림 2-2-2]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현황(시설별)	45
[그림 2-2-3] 동명아동복지센터 조직도	47
[그림 2-2-4] 입소절차	49
[그림 2-2-5]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조직도	57
[그림 2-2-6] 추진체계	60
[그림 2-2-7] 에덴원 조직체계	62
[그림 3-1-1]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대한 아동복지전문가(학계)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74
[그림 3-1-2]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가(학계)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76
[그림 3-1-3]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77
[그림 3-1-4] 아동복지영역 내 다기능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가(학계)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79
[그림 3-1-5]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가(학계)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84
[그림 3-1-6] 기능전환의 방향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가(학계)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86

[그림 3-1-7] 시설운영현황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평가	90
[그림 3-2-1] 주민육구조사 지역별 조사대상인원수	98
[그림 3-2-2] 지역의 살기 좋은 정도	100
[그림 3-2-3] 지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101
[그림 3-2-4] 지역의 복지 우선순위	102
[그림 3-2-5] 지역문제의 심각성 정도	103
[그림 3-2-6] 사회복지시설의 인지도	105
[그림 3-2-7]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경험	106
[그림 3-2-8]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의향	107
[그림 3-2-9] 지역주민의 아동양육시설 인지도	108
[그림 3-2-10] 아동양육시설의 대안사업	109
[그림 3-3-1] 아동양육시설장 및 관리자 심층면접 구조화 내용	111
[그림 4-1-1]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현황(구별)	128
[그림 4-1-2]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보호아동 업무처리 흐름도	130
[그림 4-1-3]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 방향	134
[그림 4-1-4] 아동양육시설 배치조정방안(향후 5개년)	135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아동양육시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형성과 발달과정에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여온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이다. 하지만 이전의 아동양육시설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시설수용 위주였으나 점차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위탁보호중심으로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었고, 아동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의 수요 또한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또한 아동학대와 위기가정의 아동 등 새로운 아동문제의 발생,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대한 요구 등 아동양육시설 중심의 아동복지사업의 지평이 변화하고 있다.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양육자와 건강하게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생애 발달단계에 따른 신체·심리·사회적 발달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성품과 태도 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듯 영아기부터 아동·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경험들은 향후 이들이 어떠한 성인이 되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해체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보호대상아동¹⁾들에게 부모와 가정을 대신하여 보호를 책임져온 아동양육시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과거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이 단순수용 보호 중심에서 가정해체와 위기로 인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행동, 정서적 치료와 가정의 회복과 복귀를 위한 전문적 서비스, 지역사회와 가정보호 중심의 대안적 아동보호시스템의 구축과 연계 등 아동들에게 보다 더 바람직한 아동보호서비스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전문가집단과 보건복지부 등 정책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효과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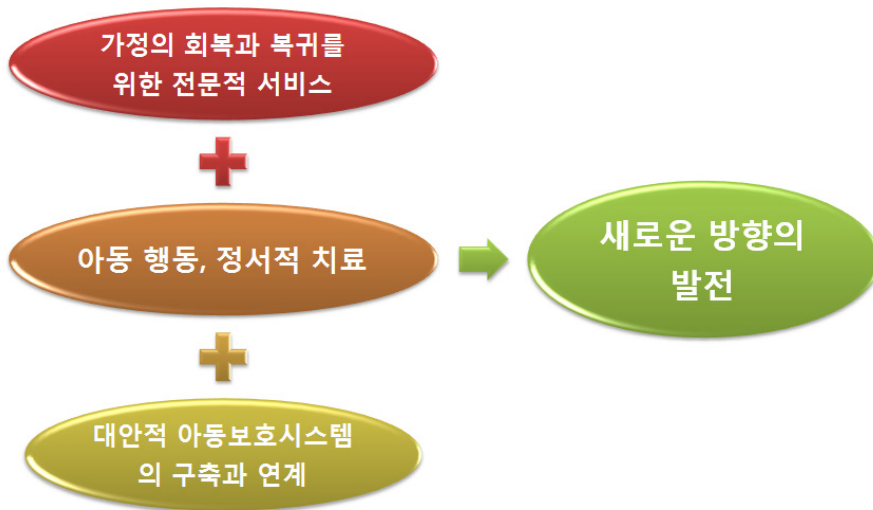
1) 이전 아동복지법에서 ‘요보호아동(1997)’,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2000)’으로 지칭하였으나, 201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달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영역별로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일부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중심이 되어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 시도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관내 아동양육시설은 총 12개이며, 아동인구의 감소와 입소아동의 특성변화, 시설배치 아동 인원의 불균형 등 전반적인 아동양육시설을 둘러싼 사회변화 현상 속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강화 등 새로운 방향모색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급변하는 지역사회 여건의 변화와 복잡한 사회현상들, 그리고 보호대상아동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향후 여기서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이 지역사회 주민과 보호대상아동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담아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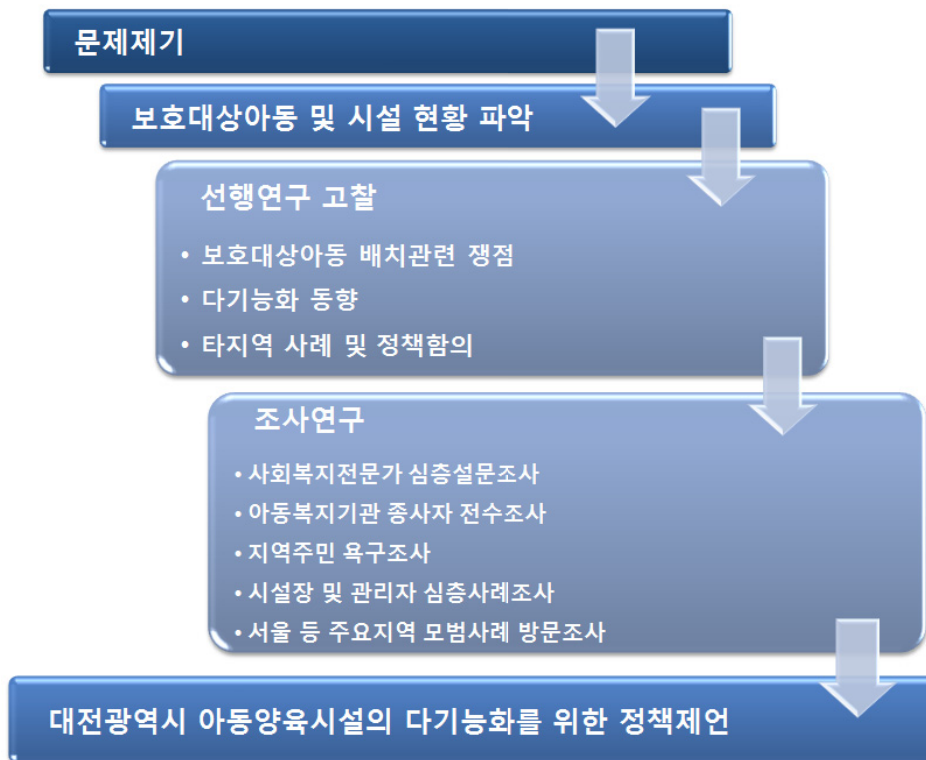
[그림 1-1-1]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은 아동양육시설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방향모색과 정책제안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입체적인 결과와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1-2-1] 연구의 흐름도



첫째,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가를 대상으로 2012년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까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으로 전국의 아동복지학 전공 교수 30명, 아동복지기관 대표 30명(서울, 부산, 대

구, 인천, 광주의 대표적 아동복지시설 15개소, 대전광역시 내 아동복지기관 15개소), 대전광역시 내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30명을 선정하여 협조를 얻어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 총 49부가 회수되었다.

둘째, 12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1개 기관 당 5명씩 총 60명에게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원은 사회과학조사방법에 익숙한 대학생 3~4학년을 사전교육 후 투입, 2012년 8월 한 달 동안 진행하여 총 56부가 회수되었다.

셋째, 아동양육시설이 기능전환 또는 다기능화 되어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 경우 어떠한 지역 욕구를 반영해야하는가를 확인하고자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해당지역주민(지역 내 여론주도층인 통반장, 복지만두레 회원, 상가번영회 임직원, 아파트부녀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된 조사원들을 통해 2012년 8월 한 달 동안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행정동)에 따른 조사대상의 인원수는 정림동 150명, 복수동 30명, 내동 60명, 회덕동 40명, 온천2동 40명, 산내동 70명, 가양동 30명, 석교동 30명, 중앙동 30명 이었고, 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수, 동 인구수, 해당지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할당표집 하였다.

〈표 1-2-1〉 주민욕구조사 지역별 조사대상인원수

조사지역(행정동)	조사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조사대상인원(명)	비율(%)
정림동	정림원, 돈보스코의집, 후생학원	150	31.3
복수동	대전혜생원	30	6.3
내동	시온보육원	60	12.5
회덕동	성우보육원	40	8.3
온천2동	천양원	40	8.3
산내동	성심보육원, 대전나자렛집	70	14.6
가양동	평화의마을	30	6.3
석교동	늘사랑아동센터	30	6.3
중앙동	대전지혜원	30	6.3
합계		480	100.0

마지막으로, 2012년 8월 동안 12개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장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현황,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해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 등 주요지역에서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를 경험한 기관을 방문하여 사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림 1-2-2] 조사대상 및 방법

사회복지전문가심층설문조사	• 사회복지전문가 90명(학계30+현장30+공무원30) • 우편 조사 / 2012년 8월~9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설문조사	• 12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설문 조사 • 조사원 방문조사 / 2012년 8월 10일-9월 10일
지역주민 욕구조사	• 아동양육시설 내 지역주민 할당 표집 480명 • 조사원 방문조사 / 2012년 8월 10일 - 9월 10일
시설장 및 관리자 심층사례조사	• 12개 대상으로 시설장 및 관리자 전수 • 심층면접 실시 / 2012년 8월 10일-31일
서울 등 주요지역 모범사례 방문조사	• 서울아동복지센터 등 모범사례 방문조사 • 2012년 8월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아동보호제도 및 현황

1. 아동보호제도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력, 보호내용, 기관 및 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규정 및 역할에 대한 명시로 구분하여 현 법제상의 아동보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력규정

「아동복지법」 제13조, 제54조에는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둘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필요 시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57조에 따라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아동복지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아동복지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2) 보호내용

(1)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조치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각각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②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것
- ③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 ④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⑤ 약물 및 알콜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⑥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2) 금지행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제17조(금지행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행위를 시행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이 정해져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②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③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④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 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⑥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⑦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⑧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⑨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⑩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⑪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친권상실 신고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장 등 법으로 규정하는 자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선고를 청구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여부를 결정한 뒤 서면으로 해당 내역을 알려야 한다.

3) 기관의 설치 및 업무규정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복지법」 제52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총 8가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시설은 목적에 따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아동양육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등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④ 공동생활가정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⑤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⑥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⑦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⑧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시설의 고유 목적사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업무규정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6조에는 각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업무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며,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비영리법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각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 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②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③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 ④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⑤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⑥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②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③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④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⑤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규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8조에 따르면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며,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비영리법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49조에 명시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①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 ②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③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④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⑤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⑥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에는

- ①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 ②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 ③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 ④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 ⑤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⑥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 ⑦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및 폐쇄 기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제시된 정의에 따르면 아동전용시설이란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설치된 아동전용시설에 대하여 제5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 ①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③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④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 ⑥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⑦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경우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호대상아동의 현황

1) 전국 현황

(1) 전국 보호대상아동 현황

전국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9,960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였고, 이 중 귀가 및 연고자에게 인도된 아동은 1,370명으로 약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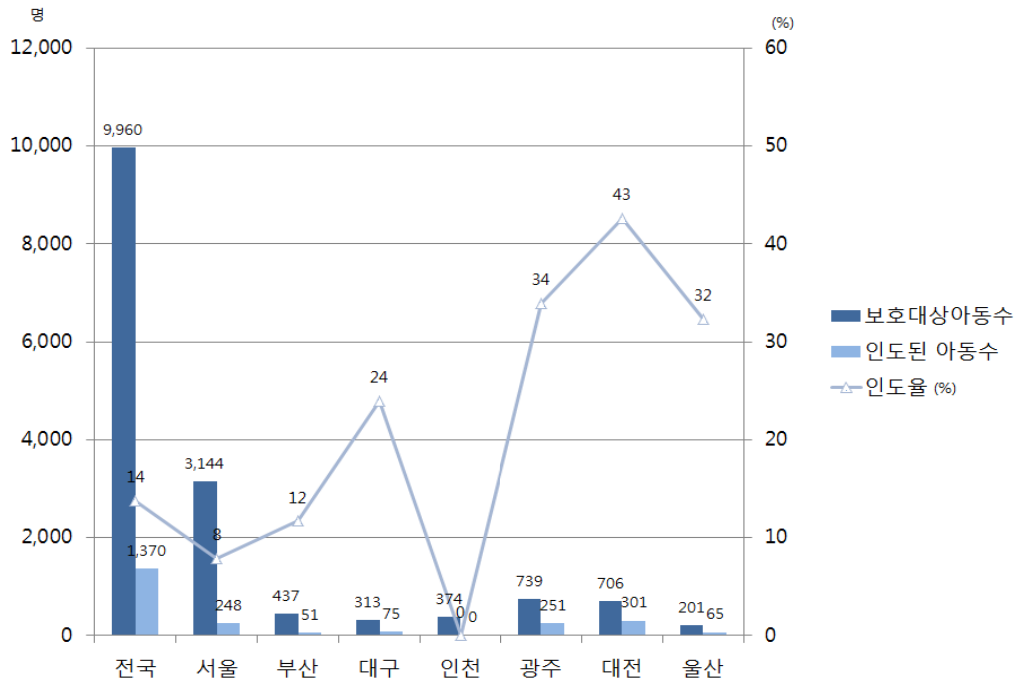
〈표 2-1-1〉 전국 보호대상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 아동 발생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성별			건강상태		
			계	기아	미혼모 (부)(혼외자 포함)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계	남	여	계	비장애	장애
전국	9,960	1,370	8,590	191	2,804	210	772	1,037	586	772	203	2,015	8,590	4,431	4,159	8,590	8,143	447
서울	3,144	248	2,896	43	1,691	175	256	175	84	138	7	327	2,896	1,491	1,405	2,896	2,657	239
부산	437	51	386	22	31	6	13	99	30	56	19	110	386	193	193	386	371	15
대구	313	75	238	22	16	3	8	50	49	23	15	52	238	130	108	238	225	13
인천	374	0	374	22	122	1	0	54	16	54	6	99	374	160	214	374	373	1
광주	739	251	488	3	295	1	0	60	39	8	10	72	488	248	240	488	397	91
대전	706	301	405	3	20	1	262	28	15	12	2	62	405	205	200	405	402	3
울산	201	65	136	3	35	0	1	8	12	34	5	38	136	73	63	136	134	2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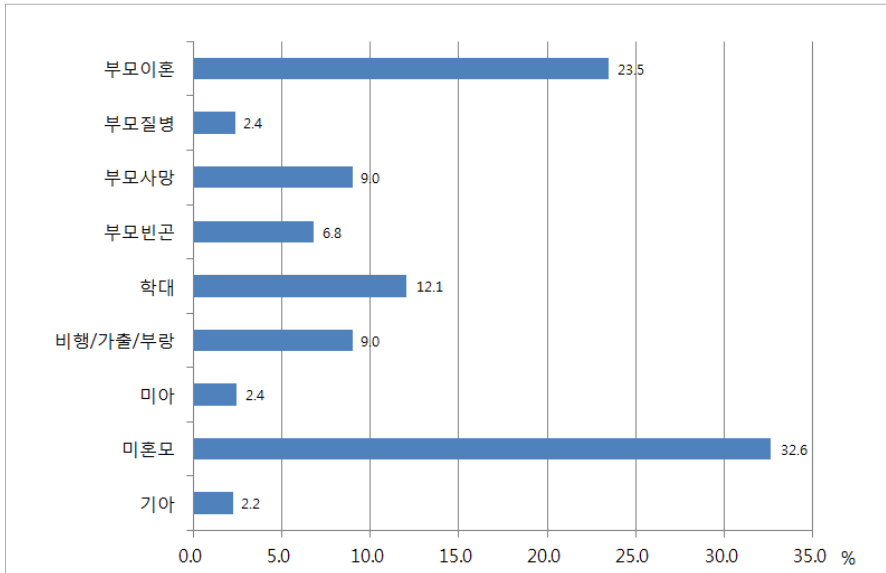
[그림 2-1-1] 전국 보호대상아동 및 인도된 아동 현황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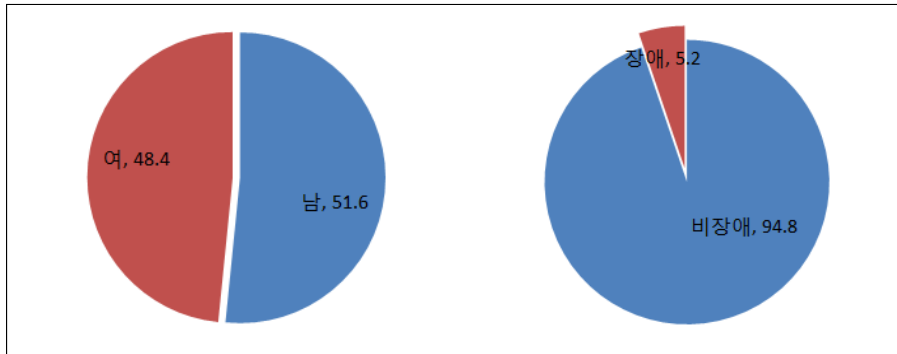
보호자에게 인도되지 못한 86.2%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으로는 미혼모인 이 유가 2,804명(32.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요즘 증가하고 있는 부모의 이혼 (23.5%)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대(12.1%), 비행·가출·부랑(9.0%), 부 모사망(9.0%)도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4,431명, 여자가 4,149명으로 남자가 근소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비장애인 경우가 약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그림 2-1-3] 성별, 건강상태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수와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1-2>와 같다. 전국 280개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아동은 2011년 기준 5,870명, 퇴소한 아동은 6,478명이며, 연말 현재 보호아동은 16,523명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14개의 아동

복지시설이 있으며, 입소자 377명, 퇴소자 424명, 연말 현재 보호아동은 총 618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하여 전국 주요도시의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시설 수는 그대로이거나 약간 증가하였으나 아동의 수는 모두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입소한 아동의 수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1-2〉 지역별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

(단위: 개소, 명)

비고	2010				2011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수용자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수용자
소계	280	6,188	6,655	17,119	280	5,870	6,478	16,523
서울	45	2,995	3,085	3,153	47	2,994	3,075	3,072
부산	22	325	394	1,963	22	332	365	1,930
대구	22	155	216	924	22	166	194	896
인천	11	193	209	707	11	216	230	693
광주	11	165	183	747	11	139	194	694
대전	13	351	360	653	14 ²⁾	377	424	618
울산	1	22	18	122	1	14	31	105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2011년 말 기준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은 280개소이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 16,549명이 각 해당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수가 감소되고 제반 환경이 변화추세에 있어 시설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시설의 기능을 아동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일시보호, 급식, 방과 후 교육,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기능도 추가하여 운영토록 해 시설이 지역사회의 종합 아동복지서비스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1b).

이를 위하여 시설형태는 소숙사(cottage) 형태로 개선하여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호형태를 변경하며 임상심리상담원 등 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2)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4개소로 집계되었으나, 이 중 ‘인애자립생활관’과 ‘효광원’은 퇴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보호치료시설에 속하여 일반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경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하고 총 12개의 시설만을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 2-1-3〉 연도별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양육	직업 훈련	보호 치료	자립 지원	일시 보호	종합 시설*	아동 복지관	아동 전용
2008	시설수	285	242	2	10	12	14	5	-	3
	보호인원	17,992	16,706	69	477	257	341	142	-	-
2009	시설수	280	239	2	11	12	13	3	-	3
	보호인원	17,586	16,239	65	514	262	368	138	-	-
2010	시설수	280	238	2	11	12	14	3	-	3
	보호인원	17,119	15,787	69	495	235	402	131	-	-
2011	시설수	280	240	1	12	12	12	3	-	3
	보호인원	16,549	15,293	32	497	253	361	113	-	-

주 : * 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1c).

(2) 전국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전국의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의 현황은 <표 2-1-4>와 같다. 2010년 말까지 전국 위탁 가정은 11,335세대로 총 15,138명의 아동이 해당되었으며, 2011년 신규 위탁가정은 1,041세대, 1,408명의 아동이 추가되었다. 총 746세대, 1,060명이 종결되어 2011년도 말 현재 위탁 가정은 11,630세대 15,486명의 아동이 해당된다. 이 중 대리양육가정은 7,463세대(10,205명), 친인척 위탁가정은 3,351세대(4,260명), 일반위탁가정은 816세대(1,021명)으로 대리양육가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0년 말 기존 위탁 가정은 232세대(321명), 신규 위탁가정은 22세대(27명)며, 이 중 15세대(22명)가 종결되어 2011년 말 현재 기준 위탁가정은 239세대(32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탁가정의 구성으로 는 대리양육가정이 133세대(18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인척 위탁가정 68세대(88명), 일반위탁가정 38세대(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4〉 전국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단위: 세대, 명)

		기존 위탁가정	신규 위탁가정	종결 위탁가정	기말 현재 위탁가정			
					계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위탁 가정
전국	세대수	11,335	1,041	746	11,630	7,463	3,351	816
	아동수	15,138	1,408	1,060	15,486	10,205	4,260	1,021
서울	세대수	1,012	99	44	1,067	656	352	59
	아동수	1,316	131	53	1,394	890	435	69
부산	세대수	656	50	39	667	373	242	52
	아동수	848	72	57	863	499	307	57
대구	세대수	221	34	28	227	105	78	44
	아동수	287	48	39	296	146	93	57
인천	세대수	602	65	55	612	348	218	46
	아동수	786	82	69	799	466	278	55
광주	세대수	290	33	28	295	146	119	30
	아동수	383	39	35	387	205	142	40
대전	세대수	232	22	15	239	133	68	38
	아동수	321	27	22	326	182	88	56
울산	세대수	192	14	10	196	111	65	20
	아동수	253	18	12	259	145	89	25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3) 전국 입양아동 현황

전국의 입양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국내 입양아동은 조금씩 늘어 2011년 기준으로 1,548명으로 나타났고, 국외 입양아동의 경우는 조금씩 줄어 2011년 기준으로 916명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국내·외 입양아동은 2,464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2-1-5〉 전국 입양아동 현황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국내	1,306	1,314	1,462	1,548
국외	1,250	1,125	1,013	916
계	2,556	2,439	2,475	2,464

출처: 통계청(2011).

(4) 소년소녀가정 현황

전국의 소년소녀가정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전국의 소년소녀가정 중 세대주는 699명, 세대원은 32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혼자 사는 1인 소년소녀가정이 전체 소년소녀가정의 과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세대주와 세대원을 합하여 남자는 565명, 여자는 455명으로 남자가 약 5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주요도시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더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5~17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8~20세가 318명, 12~14세가 183명을 차지했다. 0~5세 미만의 경우도 5명(세대주 1명, 세대원 4명)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총 17명의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대주는 11명이었으며, 세대원은 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2명, 여자가 5명으로 남자가 약 70.6%를 차지했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6~20세 사이의 소년소녀가정이 있으며, 이 중 15~17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성별/연령별 전국 소년소녀가정 현황

(단위: 명)

		계	성별		연령별					
			남	여	0~5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0세	21세~
전국	계	1,020	565	455	5	58	183	454	318	2
	세대주	699	401	296	1	19	79	311	285	2
	세대원	321	164	159	4	39	104	143	33	0
서울	계	94	41	53	1	7	14	43	29	0
	세대주	67	33	34	0	1	10	32	24	0
	세대원	27	8	19	1	6	4	11	5	0
부산	계	50	27	23	0	2	5	24	19	0
	세대주	36	16	18	0	1	0	15	18	0
	세대원	14	11	5	0	1	5	9	1	0
대구	계	33	17	16	0	1	4	14	14	0
	세대주	22	12	10	0	1	0	9	12	0
	세대원	11	5	6	0	0	4	5	2	0
인천	계	55	31	24	0	6	11	28	10	0
	세대주	35	20	15	0	2	5	18	10	0
	세대원	20	11	9	0	4	6	10	0	0
광주	계	27	15	12	0	4	6	12	5	0
	세대주	10	7	3	0	0	1	5	4	0
	세대원	17	8	9	0	4	5	7	1	0
대전	계	17	12	5	0	1	4	7	5	0
	세대주	11	8	3	0	0	0	6	5	0
	세대원	6	4	2	0	1	4	1	0	0
울산	계	16	11	5	0	1	0	8	7	0
	세대주	12	9	3	0	0	0	5	7	0
	세대원	4	2	2	0	1	0	3	0	0

출처: 통계청(2011).

(5) 전국 보호대상아동 조치내용

전국 보호대상아동 중 귀가 및 연고자에게 인도조치 되지 못한 8,590명의 조치내용은 전체의 56.4%가 시설에서 보호되었고 나머지 43.6%는 가정보호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입소의 약 절반은 양육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였고, 일시보호시설에 입소된 경우도 36.2%로 나타났다. 이 외 장애아동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시설에도 입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가정보호된 아동의 경우 56.7%가 가정위탁되었고, 37.3%는 입양되었으며, 나머지 6.2%는 소년소녀가정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정위탁 등의 형태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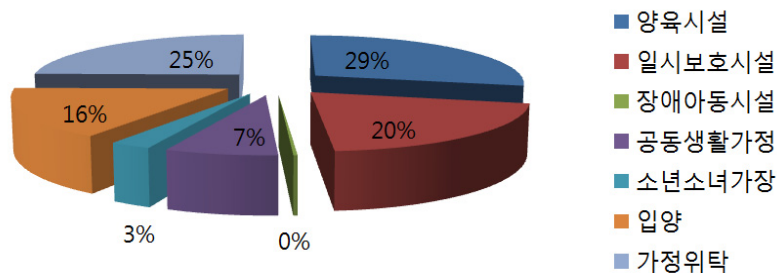
〈표 2-1-7〉 전국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내용

(단위: 명)

구분	총 아동 발생수	귀가및 연고자 인도	조치내용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전국	9,960	1,370	8,590	4,842	2,445	1,751	23	623	3,748	231	1,393	2,124
서울	3,144	248	2,896	1,774	456	1,230	10	78	1,122	42	802	278
부산	437	51	386	214	142	16	9	47	172	23	34	115
대구	313	75	238	204	138	45	0	21	34	2	0	32
인천	374	0	374	103	65	28	0	10	271	19	114	138
광주	739	251	488	285	181	84	0	20	203	9	123	71
대전	706	301	405	352	331	0	0	21	53	10	0	43
울산	201	65	136	30	16	0	0	14	106	4	23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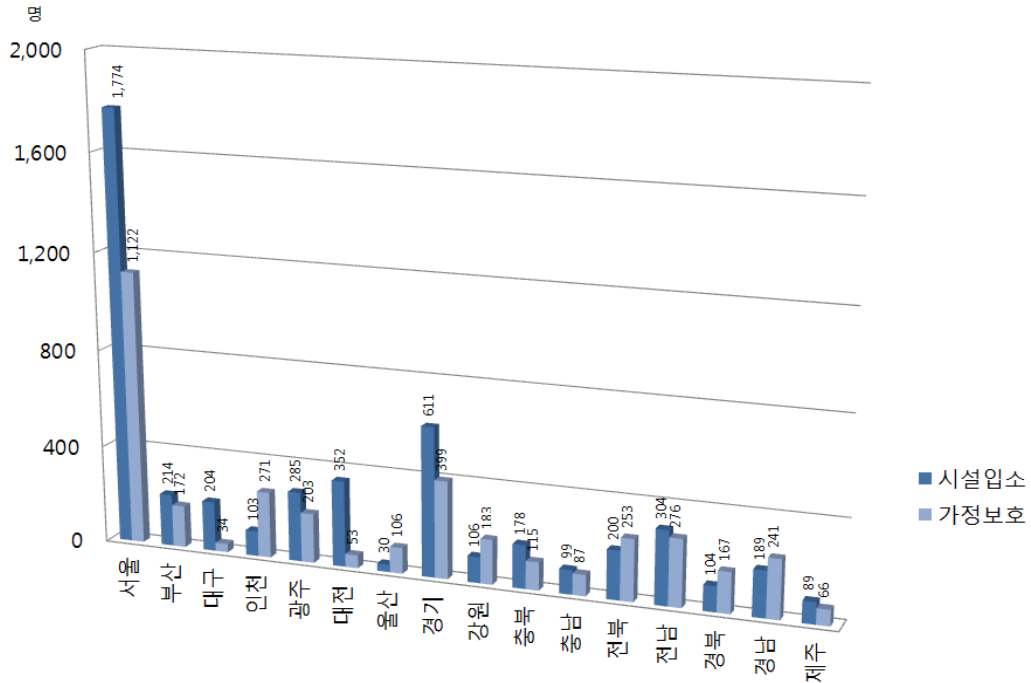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그림 2-1-4]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내용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그림 2-1-5]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내용에 대한 시도별 현황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2) 대전광역시 현황

(1) 대전광역시 아동 및 청소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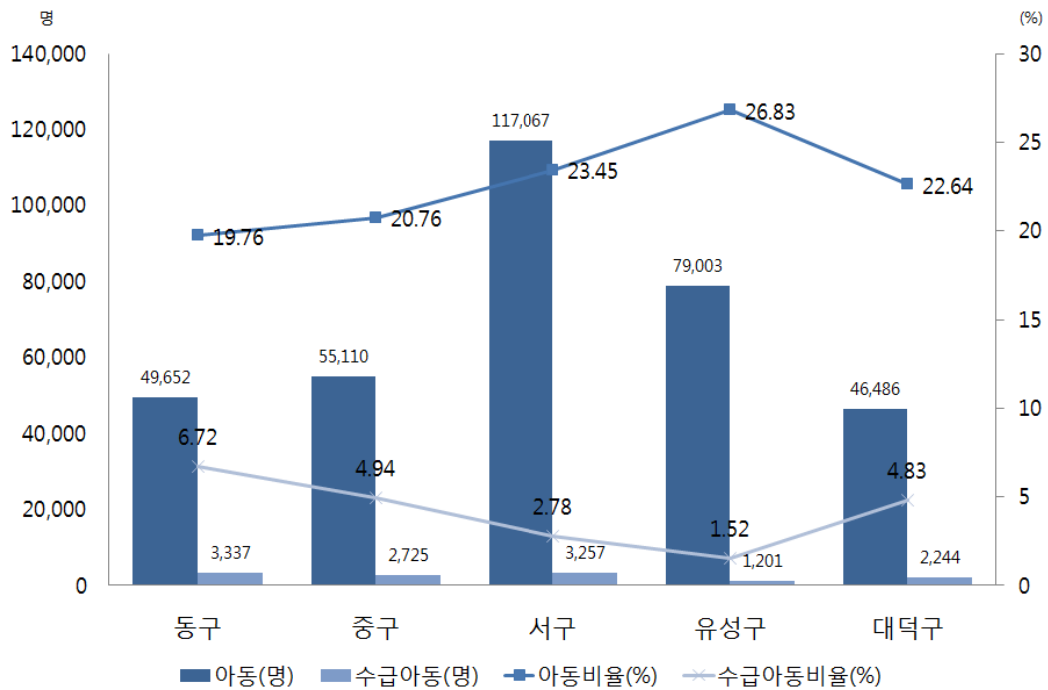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하 아동)은 총 347,318명이며, 이는 전체 대전광역시 인구의 약 23%에 해당한다. 구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유성구로 26.8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구, 대덕구, 중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동구(6.72%)로 확인되었으며, 중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동구와 중구에 가장 많은 빈곤 아동이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8〉 대전광역시 아동 및 청소년 현황

구분	아동	아동비율	수급아동	수급아동 비율	수급아동 (6세 이하)	수급아동 (7-12세)	수급아동 (13-18세)
동구	49,652	19.76	3,337	6.72	462	929	1,946
중구	55,110	20.76	2,725	4.94	315	768	1,642
서구	117,067	23.45	3,257	2.78	418	961	1,878
유성구	79,003	26.83	1,201	1.52	146	346	709
대덕구	46,486	22.64	2,244	4.83	287	668	1,289
대전광역시	347,318	22.92	12,764	3.68	1,628	3,672	7,464

자료 : 김정득 외(2012).

[그림 2-1-6] 대전광역시 아동 및 청소년 현황



(2) 대전광역시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비행, 가출, 부랑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지만 2009년 이래로 260여 명이 비행, 가출, 부랑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은 2008년에 300명을 능가하였으나 점점 감소해 2011년 기준으로 130명으로 나타났다. 기아는 2008년부터 점점 줄어들어 2011년 기준 1명으로 집계되었으나, 미혼모 아동이나 미아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1-9〉 대전광역시 보호대상아동 발생 내용(2008~2011)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보호대상아동 발생유형	소계	541	405	405	418
	기아	6	4	3	1
	미혼모아동	5	8	20	18
	미아	0	0	1	2
	비행, 가출, 부랑아	222	265	262	267
	빈곤, 실직, 학대 등	308	128	119	130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된 아동은 총 460명이다. 총 12개 기관으로 가장 인원이 적은 곳은 10명, 가장 많은 곳은 65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2세 아동이 37명, 3~6세 아동이 45명, 7세 이상 아동이 378명이다.

〈표 2-1-10〉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입소이동 현황

(단위: 명)

	총 입소이동 수	0~2세	3~6세	7세 이상
계	460	37	45	378
A	42	1	2	39
B	65	2	5	58
C	45	1	5	39
D	17	-	-	17
E	63	22	22	19
F	29	3	2	24
G	25	-	2	23
H	43	3	3	37
I	27	2	1	24
J	10	-	-	10
K	57	1	-	56
L	37	2	3	32

자료: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3) 대전광역시 보호대상아동 보호내용

대전광역시의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내용을 시설보호와 가정보호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시설보호가 가정보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시설보호되는 아동 중 공동생활가정아동은 2011년 기준으로 31명, 시설아동은 341명으로 전체 시설보호아동은 총 372명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아동의 경우 2008년에 215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46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입양되는 아동과 위탁보호되는 아동이 급감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011년 기준 위탁보호 아동은 40명, 소년소녀가정은 6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1-11〉 대전광역시 보호대상아동 보호 내용(2008~2011)

(단위: 명)

			2008	2009	2010	2011
보호대상아동 보호내용	시설 보호	소계	326	354	352	372
		아동	309	338	331	341
		장애아	0	0	0	0
		공동생활가정	17	16	21	31
	가정 보호	소계	215	51	53	46
		위탁보호	143	42	43	40
		입양	67	7	0	0
		소년소녀가정	5	2	10	6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3. 아동양육시설의 현황

1)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현황

대전광역시의 아동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양육시설과 양육시설 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전체 12개로 서구에 5개, 동구에 4개, 중구, 대덕구, 유성구에 각 1개씩 분포되어 있다. 배치정원은 대전광역시 전체 총 801명이며, 구별 배치정원은 시설수가 많은 서구가 32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동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의 순으로 나타난다. 1개 시설 당 배치정원 평균은 대전광역시 전체적으로 66.75명이며, 서구와 중구 내 시설들은 전체평균치와 거의 유사하고 대덕구와 유성구는 평균치를 상회, 동구는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12 참고).

양육시설 외 기관은 총 16개로 사업종류별 치료중심기관, 자립중심기관, 그룹홈이 있으며, 이 중 그룹홈이 14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양육시설 외 기관의 배치정원은 275명이며 동구의 시설에 가장 많은 배치정원이 배정되어 있다. 시설 당 배치정원은 대전광역시 평균 14.92명으로 나타났는데, 동구의 경우 평균 42명으로 서구, 중구, 대덕구의 평균 7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표 2-1-12〉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현황(구별)

(단위: 개소, 명)

구분	양육시설			양육시설 외					
	시설 수	배치정원	시설당 배치정원 평균	사업종류별 시설수				배치정원	시설당 배치정원 평균
				치료	자립	그룹홈	계		
동구	4	232	58	1	-	3	4	168	42
중구	1	66	66	-	-	5	5	35	7
서구	5	323	64.6	-	-	1	1	7	7
유성구	1	100	100	-	1	4	5	58	11.6
대덕구	1	80	80	-	-	1	1	7	7
대전광역시	12	801	66.75	1	1	14	16	275	14.92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현황을 양육시설, 치료시설, 자립시설, 그룹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2-1-13〉과 같다. 양육시설 12곳, 치료시설 1곳, 자립시설 1곳, 그룹홈 14곳이 있다. 1947년도에 처음 자혜원이 허가를 받은 이래 점차 늘어났으며, 일반적으로 그룹홈의 경우 90년대 말부터 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도에 대부분의 그룹홈이 허가를 받았으며, 정원은 7명 내외로 시설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표 2-1-13〉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현황(시설별)

사업 종류	시설명	허가년월일	소재지	정원
양 육	늘사랑아동센터	65. 06. 19	중구 학교개로 34번길 (옥계동)	66
양 육	대전자혜원	47. 10. 01	동구 미래길 16 (소제동)	60
양 육	평화의마을 아동복지센터	61. 08. 02	동구 가양로 85 (가양동)	76
양 육	성심 보육원	52. 04. 09	동구 산내로 386번지 8-26 (하소동)	76
양 육	대전나자렛집	05. 12. 29	동구 학교개로 94-13 (이사동)	20
양 육	구세군대전혜생원	57. 09. 10	서구 오량4길 61 (복수동)	50
양 육	시온보육원	57. 11. 09	서구 도솔길 267번길 8 (내동)	69
양 육	후생학원	57. 10. 23	서구 정림서동 138번길 65-5 (정림동)	75

사업 종류	시설명	허가년월일	소재지	정원
양 육	정림원	01. 04. 27	서구 정림동로 30번길 15 (정림동)	100
양 육	천양원	52. 03. 01	유성구 월드컵대로 51번길 1 (장대동)	100
양 육	성우 보육원	56. 09. 22	대덕구 신탄진로 101 (연축동)	80
양 육	돈보스코의집	05. 07. 22	서구 구봉로 458-1 (정림동)	29
치 료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84. 05. 02	동구 신내로 1305번길 48 (낭월동)	150
자 립	인애자립생활관	91. 02. 02	유성구 신성남로 97 (신성동)	30
그룹홈	평화의마을	99. 01. 01	동구 성동로 74 (자양동)	6
그룹홈	소망의 집	09. 05. 19	동구 우암로 195번길 114 (가양동)	7
그룹홈	신흥마을의집	10. 05. 19	동구 옥천로 38 (신흥로)	5
그룹홈	대전 좋은이웃쉼터	05. 01. 19	중구 어덕마을로 156 (중촌동)	7
그룹홈	밝은내일의 집	05. 05. 06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64-5 (오정동)	7
그룹홈	대전해피홈	05. 08. 16	중구 대종로 593번길 38-6 (선화동)	7
그룹홈	열린공동체아침햇살	06. 04. 25	중구 문화로 22번길 22 (산성동)	7
그룹홈	푸마네	09. 06. 12	중구 대둔산로 350번길 6 (사정동)	7
그룹홈	충만한 아이들의 집	06. 11. 28	중구 대종로 601번길 45 (선화동)	7
그룹홈	루아의 집	10. 11. 04	서구 정림동로 20번길 15-1(정림동)	7
그룹홈	이삭의 집	07. 10. 24	유성구 원내로 52 (원내동)	7
그룹홈	열매의 집	10. 04. 19	유성구 노은동로 219 (지족동)	7
그룹홈	햇살가득한 집	08. 02 .18	유성구 가정로 89번길 5 (신성동)	7
그룹홈	애뜰	10. 02 .02	유성구 진잠로 149번길 30 (교촌동)	7

2)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현황

(1)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아동복지법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고유 업무에 필요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직종, 수, 배치기준은 <표 2-1-14>와 같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아동이 10명 미만일 경우 시설장 1명과 보육사, 30명 이상일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무원,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각 1명(이상)과 보육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2-1-14>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단위: 명)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무원	영양사	생활 복지사	임상심리 상담원	조리원	위생원	자립지원 전담요원
30명 이상	1	1	1	1	1	1	1*	1	1*	1	1**
10명~ 29명	1				1				1		1
10명 미만	1										

주: (1) 아동양육시설 수용아동 수에 관계없이 0~2세 아동 2명당, 3~6세 아동 5명당, 7세 이상 아동 1명당 각 보육사 1명을 배치
 (2) 직업훈련교사와 상담지도원은 필요 인원만큼 둘 수 있다.
 * : 30명 초과시 1명 추가
 ** :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2)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현황

대전광역시 12개 아동양육시설에 배치된 종사자 현원을 살펴보면 <표 2-1-15>와 같다. 배치아동의 수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은 5개로 시설 내 종사자 인원 중 최소는 4명, 최대는 10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사가 가장 많았으며, 시설장, 자립전담요원, 보육사는 모두 배치되어 있었고, 사무국장이 있는 시설이 1개, 조리원이 있는 시설이 3개 있었다.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무원과 조리원이 각 한 명씩 배치되어야 하나, 실제 5개 시설 전부 사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무국장이 배치된 한 곳을 제외하면, 4개 시설에서 보육사나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이 사무원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조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시설도 2개 있었다.

배치아동의 수가 30명 이상인 시설을 살펴보았을 때, 아동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65명이며,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법적 기준에 따르면 시설장, 사무국장, 의사, 간호사, 사무원, 영양사, 생활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조리원, 위생사, 자립전담요원이 각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간호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위생원이 배치되지 않은 시설이 존재하며, 생활복지사나 조리원, 자립전담요원은 각 연령대 별 아동의 수에 따라 추가로 배치되어야 하나, 시설별로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표 2-1-15〉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현황

(단위: 명)

	아동 수	총 직원 수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	영양사	보육사	생활 복지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지원 전담요원
A	42	15	1	1		1	9		1	1	1
B	65	18	1	1	1	1	10	1	1	1	1
C	45	16	1	1		1	10		1	1	1
D	17	5	1				3				1
E	63	28	1	1	1	1	21		1	1	1
F	29	10	1	1			6		1		1
G	25	8	1				5		1		1
H	43	14	1	1			10		1		1
I	27	9	1				6		1		1
J	10	4	1				2				1
K	57	21	1	1	1	1	13	1	1	1	1
L	37	17	1	1			11	1	1	1	1

주 : 2012. 12월말 기준.

자료: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3) 대전광역시 아동복지기관 유형

대전광역시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아동복지기관들을 살펴보면 크게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대전지원단,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입양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법인	사단법인 한국수양부모협회(2003. 5. 21. 개소)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48조
명 칭	대전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흥동 대림빌딩)
직 원	5명(소장 1, 팀장 1, 상담원 3)
주요기능	위탁가정 선정, 위탁사업 홍보, 교육, 상담 등

(2) 지역아동센터

목 적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기본개념	① 빈곤 · 위기아동의 지역내 보호개념 실현 ② 교육적 기능수행 ③ 정서적 지원 ④ 문화서비스 제공 ⑤ 지역사회연계
센터 수	대전광역시 146개 운영 중

(3) 지역아동센터 대전지원단

목 적	신규 및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컨설팅, 평가지원 및 민간 재원 발굴 · 연계 등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운영법인	사단법인 부스르기사랑나눔회 (2000. 3. 11. 개소)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86 (오류동) 사학연금회관 1505호
주요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컨설팅 및 평가지원으로 운영격차 해소 -노후시설 개선, 개별 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 연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교육 운영 및 지원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아동복지교사 DB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등
직 원	4명(센터장 1, 사업운영팀장 1, 교육담당 1, 정책연구 및 행정업무 1)

(4)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운영 법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설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운영 주체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31(둔산동) 1262 대신빌딩 702호
주요 기능	불우이웃결연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미아·실종아동예방사업, 장애아동보호사업, 아동폭력예방사업, 북한아동지원사업, 해외아동지원사업
직원현황	9명(본부장 1명, 팀장 3명, 나눔플래너 3명, 서비스 코디네이터 1명, 운영지원담당 1명)

(5) 입양전문기관

설치 근거	입양특례법 제20조
기관명칭 및 소재지	홀트아동복지회 충청사무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문화동) 동방사회복지회 대전아동상담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갈마동)
주요사업	국내외 입양알선, 입양개정 지원사업 등

(6)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2000. 11. 16. 개소)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45조
명 칭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일로 156(중촌동)
직 원	11명(관장 1, 팀장 3, 상담원 5, 생활지도원 2명)
센터 수	전국 16개 시·도내 45개 센터 개소
설치운영	각 아동보호전문기관별 긴급전화 4회선(1577-1391) 24시간 운영
주요기능	아동학대 신고처리, 예방홍보, 신고의무자 교육 등

제2절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1.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외 배치(out of home placement)관련 쟁점

1) 보호대상아동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복지서비스를 요하는 아동에 대한 용어는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해왔다.

이전 아동복지법에서 이러한 아동을 ‘요보호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지칭하였으나, 201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바뀌었다. 한 가지 더 달라진 점은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별도의 지원대상아동으로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요하는 주요 아동복지 서비스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표 2-2-1〉 아동복지법상의 용어변화

아동복지법상의 용어변화	설명
요보호아동(1997)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을 말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2000)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2011)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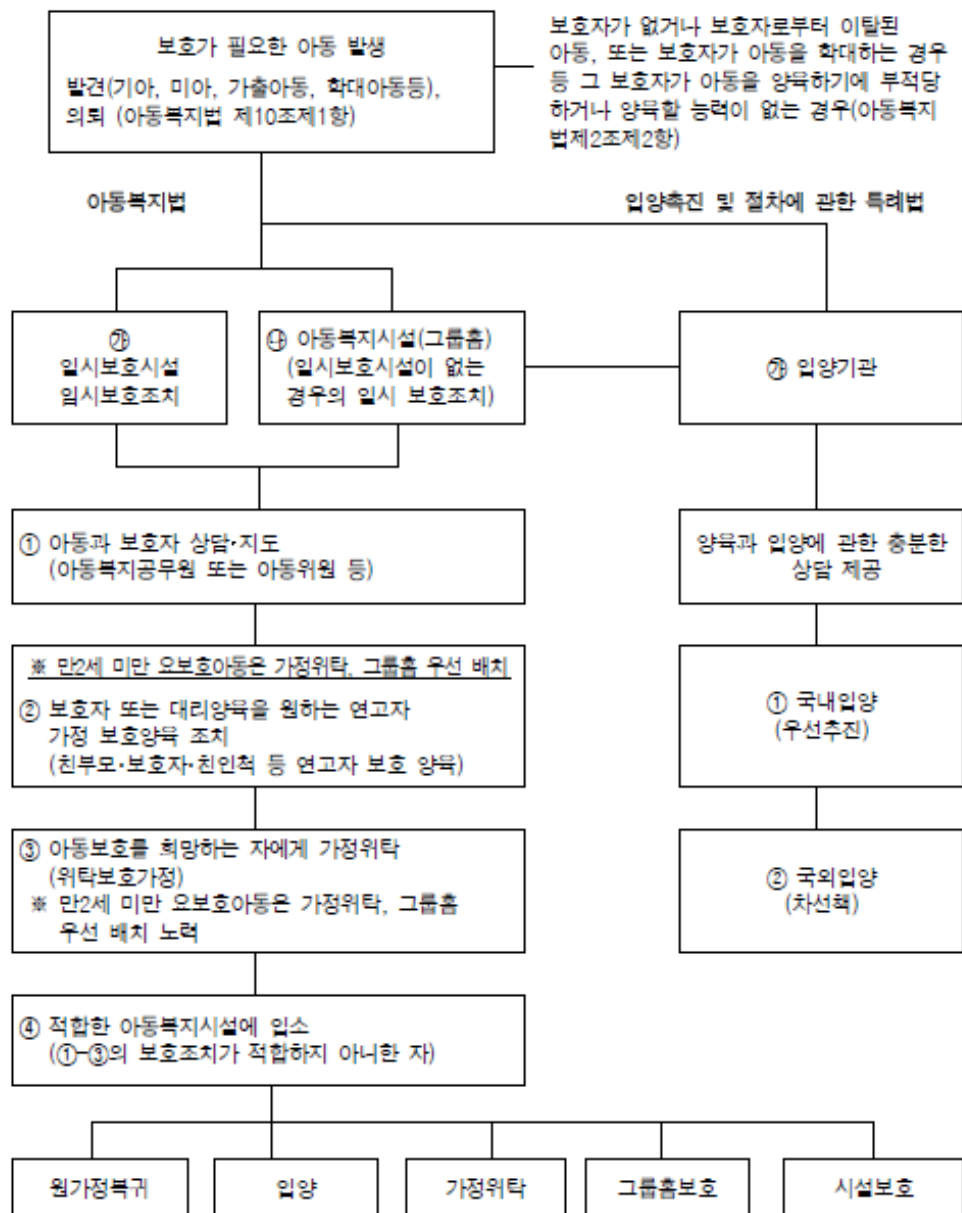
첫째, 가정에서 이탈된 아동들이다. 기아, 미아, 부랑아, 가출아, 비행아동, 미혼모아동 등이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둘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들이다. 부모나 대리양육자로부터 심리적, 육체적, 성적 학대 혹은 방임, 유기된 아동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다. 부모의 사망, 빈곤가정, 가정폭력, 양육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부모,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부모 등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보호대상아동은 부모가 없는 경우만이 아니며,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가족해체, 부모의 정신적·정서적 문제로 인한 아동학대와 방임, 부모의 약물남용이나 중독, 가정폭력, 가족노숙이나 보호자의 투옥, 만성적 빈곤문제 등 그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덧붙여 핵가족화와 맞벌이가정 급증으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데 이처럼 사회적 서비스를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도 보호 및 지원대상아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2-1] 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2) 가정 외 배치

아동은 가능한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했던 원가정에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아동을 원가족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유해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에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배치결정에서 유념해야 할 모든 상황적 맥락들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동의 가정 외 배치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동에게 최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배치 결정은 아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사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에 반드시 덧붙여야 하는 것은 아동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대부분 아동의 실제적 배치에 있어서 정책 편향과 자원 유용성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보호대상아동들은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채 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외 배치의 일차적인 목적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위탁보호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시설보호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 다양한 위탁보호제도가 부적절한 양육환경의 부모와 집으로부터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되었지만, 많은 아동들이 오랜 기간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장기간 위탁보호를 받게 되거나 여러 위탁보호가정(혹은 기관)을 옮겨다니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듯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나타나면서 한편으로 아동보호에 있어서 영구배치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외 배치문제는 아동의 일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사건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대아동을 위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외 배치를 담당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직이 설치된 곳은 전국에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두 개 지역뿐이다.

3) 외국의 아동보호체계(미국의 경우)

외국의 아동보호체계 발달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특별히 오랜 기간 아동보호시스템구축을 위해 여러 차례 전환기와 시행착오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를 통해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아동복지 보호시스템은 1909년 백악관 회의부터 시작되어 1960년대 아동위탁보호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아동보호의 목표는 부모의 학대나 부적절한 양육환경 때문에 가정에서 살 수 없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동이 위탁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아동보호의 강조점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의 원가족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가족 재통합을 지향하려는 동기가 다소 위축되어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위탁보호는 자신의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일시적 보호체계로 구상되었지만 많은 아동들은 여전히 장기간 위탁보호체계에 머물러 있거나 때로는 여러 위탁가정을 옮겨 다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Maas & Eagler, 1959). Bowlby(1969)등의 학자들은 아동의 분리경험이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주며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아동은 양육적인 부모 혹은 보호제공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1970년대 아동의 영구배치방안이 마련되었고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입양’이 바람직한 가정 외 배치의 목표가 되었다. 이 시기에 아동복지정책에 있어서 친권관련 내용에 대한 법개정과 다양한 시범사업프로그램과 확산노력을 통해 아동이 입양되는데 있어서 법적, 절차상의 장애를 없애는데 주력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원가정 외 배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80년대 이러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실천전략과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동에 대한 영구배치노력과 가족보존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1984년 위탁보호아동의 수는 급감하게 되었다.

1991년까지 영구배치와 가족보존서비스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증가해왔다. 부모의 약물중독, HIV감염, 그리고 경제적 요인 등이 가족해체요인으로 제기되었

다. 위탁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특별한 욕구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된 위탁가정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인해 배치문제의 위기를 낳게 되었다(U.S General Accounting Office, 1989; Downs et al., 2004 재인용).

<표 2-2-2>는 이상에서 살펴본 20세기 미국 아동복지변천사를 정리 요약한 것이다.

<표 2-2-2> 20세기 미국 아동복지변천사

단계	시기	개혁	적용	실천현장지침
1단계	1909-1970 백악관회의	가정위탁 보호	위탁가정	아동은 시설보다는 가정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	1970년대	영구배치	입양가정	아동은 가정에 영구적으로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단계	1980년대 입양촉진 및 아동복지법	가족보존	원가정	아동은 그들의 원가정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을 보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4단계	1990년대	가족연속성	확대가정	아동은 항상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족네트워크에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 Mcfadden & Downs(1995).

1997년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의 통과로 아동복지정책의 초점은 아동의 안전, 웰빙, 그리고 연속성의 문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위탁보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시설이나 위탁가정을 옮겨 다니는(multiple placements)경향이 증가한다는 점은 배치문제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위탁보호에 배치된 아동들은 이미 심각한 학대, 빈곤, 폭력, 약물남용, 학교적응문제 등 심리적 위험 요소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아동들에 대한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위탁보호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이해는 아동에 대한 최적의 개별적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표 2-2-3〉 위탁보호배치 유형

구분		설명
친척 위탁보호		친족 또는 친인척 보호는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대부분의 아동을 위해 우선시되는 보호 형태이다.
위탁가정	쉼터	보호대상아동의 초기 사정과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거처이다.
	장기위탁가정	부모에게 되돌아갈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아동에게 필요하다. 특히 입양이 어렵게 되었으나 영구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전에 여러 번 배치경험이 있어서 특별히 안정적 환경과 지속적 관계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 위탁보호	전문위탁가정보호	정서적 문제나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가족생활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아동을 위한 기관들에 의해 제공된다.
	치료위탁보호	거주형 치료시설과 위탁가정보호 환경을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위탁가정이나 청소년시설 모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공될 수 있는 대안이다.
공유가정보호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거처를 제공한다. 주로 부모가 십대인 경우, 부모가 발달 지체인 경우, 회복 중에 있는 물질 남용 부모인 경우, 부모가 노숙자인 경우, 부모가 불안정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거주시설 집단보호		거주 보호는 넓은 의미에서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시설과 주정부 기관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모든 공동 케어 시설을 의미한다. 이 시설들은 다양한 조건과 형태를 가진 아동들에게 카운슬링, 교육, 건강 케어, 정신 건강 서비스, 일상생활 기술 훈련, 옹호 서비스 등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룹홈		주로 지역공동체 거주지역 내에 위치한다. 일부 기관 그룹 홈에는 결혼한 부부(그룹 홈 부모)와 아동 보호 스텝이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어른 역할모델로 아동 보호 스텝과 유대관계를 맺는 기회와 함께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는 유익을 준다.
독립생활		위탁보호 청소년들이 독립된 삶 또는 상호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곳이다. 상호의존적 삶이란 독립된 청소년이 가족과 지역공동체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4)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우리나라의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해보면 크게 위탁보호(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탁보호라는 개념은 종종 가정위탁보호를 지칭하는 등 그 개념이 모호하게 정의되어왔다. 그러나 위탁보호는 모든 아동보호체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본래 위탁보호(foster care)는 아동의 가정 외 보호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서 위탁가정(친척, 대리, 생면부지), 치료위탁가정, 그룹홈, 양육보호시설, 독립주

거시설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아동보호시설은 양육시설과 위탁가정, 그룹홈이 대표적이며 입양을 통해 아동의 영구배치가 이루어고 있다.

따라서 위탁보호(foster care)는 부모에게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모든 ‘가정 외 배치’의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더불어 위탁보호는 일반 위탁, 친인척 위탁, 대리위탁을 포함하는 가정위탁보호와 쉼터, 치료보호시설, 양육시설, 소집단홈 등의 시설보호 등 공공민영 아동복지보호시스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위탁보호는 단기간, 장기간 혹은 영구적일 수 있다. 단기보호는 아동이 그 원가정에 돌아가기 전 단순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하루 혹은 일주일간의 숙식이나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안전함이 확보될 때까지 기간이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보호는 친척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게 되는 것인데 종종 영구배치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호대상아동들이 원가족과의 재결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양을 선택할 수 있다(Ellis et al., 200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외 배치에 대한 결정에 앞서 배치가 요구되는 아동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위탁가정의 유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아동’과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대상아동’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5) 아동의 가정 외 배치 결정을 위한 중요한 전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최적의 조치와 아동들에게 가장 최선의 가정 외 배치를 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1980)에서는 아동들을 그들의 가정에서 분리되는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합리적 노력’의 증거를 제시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The 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1997)는 ‘합리적 노력’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상황, 즉 아동의 가정 외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Downs et al.,

2004).

첫째,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유기, 고문, 만성학대, 성학대 등)'에 노출되기 쉽게 만든 부모
둘째, 다른 자녀에 대한 살인죄(혹은 살인 공모) 혹은 우발적 과실치사로 고소당한 부모
셋째, 자녀들 혹은 부모에게 심각한 상해를 초래하여 폭행죄로 고소당한 부모
넷째, 과거 다른 자녀에 대해 친권이 박탈된 경험이 있는 경우

가정 외 배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배치결정이 내려지는 가정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Dagleish and Drew(1989)는 아동학대의 심각성, 부모양육의 질, 가족의 사회체계망 특성 등을 중요 요소로 꼽았고, Zuravin and DePanfilis(1997)는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들, 학대, 엄마의 문제 상황들(약물중독, 정신건강과 발달상의 장애, 가정폭력 등)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학대와 관련해서 학대의 심각성을 예측변수로 지정한 연구자들(e.g., Fialkov & Cohen, 1990; Tjaden & Thoennes, 1992)이 있는 반면, 학대의 심각성만으로는 예측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학자들(e.g., Wald & Woolverton, 1990)과 만성적인 학대패턴을 관련 요인으로 지정한 많은 연구들(e.g., Bretner, 1998; Fialkov & Cohen, 1990; Lewit, 1993), 그리고 수많은 빈곤아동들, 욕구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모, 폭력위험, 가족의 지지부족, 범죄전력 등 역시 높은 가정 외 배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반면 Rossi et al. (1999)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변화의지를 보이는 가정의 경우 가정 외 배치경향이 덜 하다고 주장하였다(Britner & Mossler, 2002).

이처럼 아동의 배치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배치를 결정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볼 때, 보호대상아동들의 가정 외 배치에 있어서 일반위탁 가정보호(traditional foster care)는 감소하고 친족 위탁가정보호(kinship care)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보고하고 있다(Petit & Crtis, 1997; Harden et al., 2004). 그러나 Harden et al. (2004)은 친족 위탁가정과 일반위탁가정 간의 보호자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친족 위탁 가정 보호자는 아동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³⁾를 더 많이 갖는 것과 관련되며, 이러한 양육태도들은 그들의 사회 및 경제적 자원수준, 즉 친족 위탁보호자의 연령과 배우자 유무 등과

3) Parental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Questionnaire(PACR-II; Easterbrooks & Goldberg, 1984)를 사용하여 양육태도의 3영역, 즉 warmth/respect; parent-child conflict and anger; strictness/overprotectiveness

같은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일반적 양육관련 문헌에서 그동안 주장되어 왔던 양육능력에 대한 개인특성요인의 관련성을 강조한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ornstein, 2002).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연구에서 허남순(2004)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위탁부모 369명을 유의표집하여 친인척 위탁가정과 대리양육가정, 그리고 일반위탁가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한 결과, 대리양육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교할 때, 연령, 학력, 수입, 주택 등의 면에서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은 더 미흡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위탁된 아동들의 행동특성은 일반위탁가정의 아동들이 친인척이나 대리 양육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공격, 불안에서 모두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의 배치유형에 관한 연구(Rowe et al., 1989)는 6개 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배치된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더 다루기 어려운 아동을 가정에 배치할수록 위탁파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Clyman and Harden(2002)은 최근 아동의 가정 외 배치문제에 있어서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경험에 근거한 관련 연구문헌들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우선 출생하자마자 가정 외 배치를 경험하는 영아의 비율은 대략 신생아의 4%로 적지 않아 위탁보호체계에 진입하는 영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Wulczyn et al., 2003). 또한 Jones Harden(2002)의 연구에서 영유아기의 아동들에게는 대단위 양육시설에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가능한 한 가정과 유사한 셋팅의 작은 규모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Leslie 등(2002)은 규모가 큰 양육시설에 배치된 영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에게서 발달적 지체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Frame(2002) 역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규모 위탁보호시설에서 보호받아온 영아에 대한 장기간의 행정기록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역시 이러한 내용과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다. Dozier and colleagues(2001)는 영아의 위탁 보호 시 애착과 초기관계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이해가 특히 더 요구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영아의 가정 외 배치문제에 대해 각별하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대상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의 다양성에 따라 각각에게 이상적인 가정 외 배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하다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배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의 가정 외 배치에서 아동의 연령, 성, 문화적 배경, 개인적 특성 등은 고려되어야 할 중요 요소들이다.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혹은 담당공무원들은 아동의 배치문제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혹 잘못된 정보나 개인적 편향, 행정편의에 따를 경우 아동의 삶에 매우 중대한 과오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 동향

1)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 시도들

다기능화와 관련된 정책동향으로 보건복지부가 2010년과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사업을 시행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특성화 및 다기능화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특성화 및 다기능화를 통한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법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공공과 민간사회복지시설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며, 셋째, 특성화 및 다기능화 사업의 전국 확대를 대비하여 행정적·재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관과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다기능화를 포함하는 정부의 다기능화 시범사업 중 아동양육시설의 시범사업은 2011년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에덴원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운영주체 차원의 자발적인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의한 다기능화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울특별시는 동방아동복지센터 등 주요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근 마을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를 위한 인력과 재정지원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2004년부터 저소득층 보호아동중점대책으로 지역사회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유휴 공간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급식 지원, 아동상담,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지역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의 현황과 다기능화 시도들

대전광역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12개소의 정원은 801명이며 2012년 12월 현재 현원 460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어 정원대비 시설이용비율은 57.4%이다.

아동양육시설의 지역별 분포는 서구 5개소, 동구 4개소, 중구 1개소, 유성구 1개소, 대덕구 1개소로 서구, 동구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동구지역 시설의 정원대비 이용률은 59.2~95.5%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서구지역 시설의 이용률은 27~58%로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률이 낮은 하위 5개소의 시설이 대부분 서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역 간 시설배치와 이용률의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 기능 확대는 아동보육시설-어린이집-(늘사랑아동센터, 천양원)과 방과후교실(자혜원) 운영, 주민주차장(대전혜생원, 시온보육원) 활용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의 여유 공간을 상담치료센터(성심보육원, 후생학원), 주차장, 놀이터, 문화체육공간(천양원, 대전혜생원, 시온보육원, 정림원)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이나 놀이터 활용 등과 같은 계획은 대부분 지역사회주민에게 여유 공간을 개방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책이며, 아동양육시설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으로써 의미 있는 기능다각화나 기능전환의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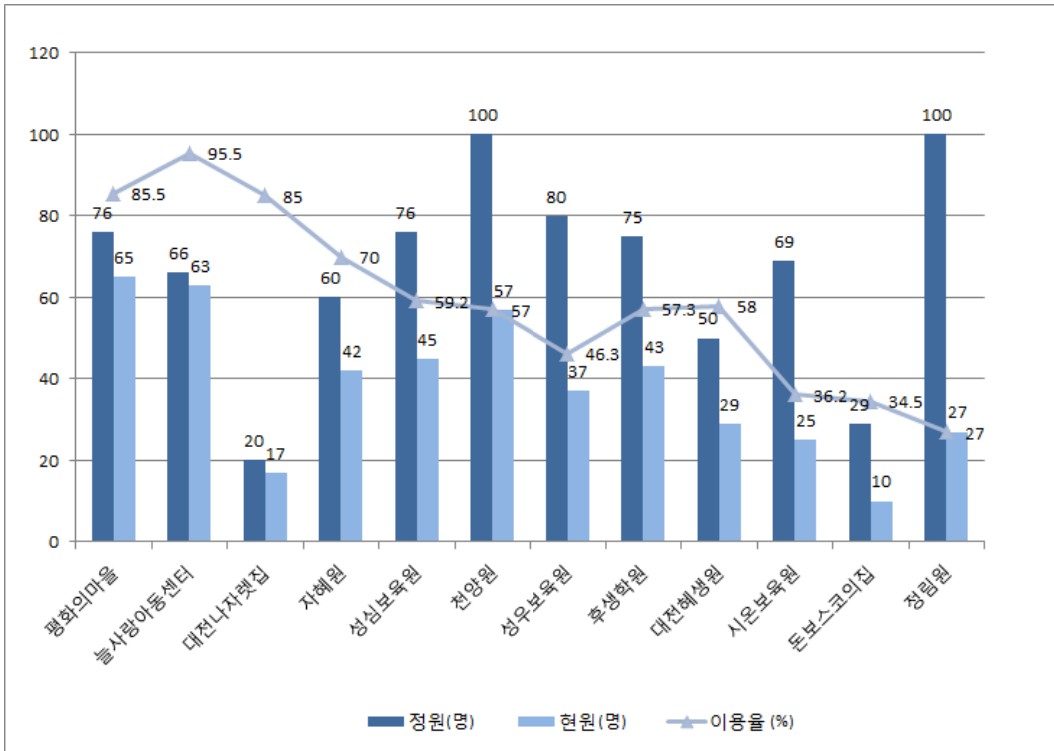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시설보호 대상아동과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 및 기능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을 비추어 볼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기능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의 전문 인력배치와 재정 지원 등 대전광역시의 행정적 조치와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표 2-2-4〉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현황

시설명	정원	현원	이용률 (%)	타용도 활용공간 (m ²)	기능 확대	계획	소재지
평화마을	76	65	85.5	100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동구 가양동
늘사랑아동센터	66	63	95.5	660	아동보육시설		중구 옥계동
대전나자렛집	20	17	85.0				동구 이사동
지혜원	60	42	70.0		방과후 교실		동구 소재동
성심보육원	76	45	59.2	100		청소년 상담센터	동구 하소동
천양원	100	57	57.0		아동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유성구 장대동
성우보육원	80	37	46.3		푸드뱅크		대덕구 연축동
후생학원	75	43	57.3	800		지역아동센터/ 상담치료시설	서구 정림동
대전혜생원	50	29	58.0		주민 주차장	운동장 주민활용	서구 복수동
시온보육원	69	25	36.2	100	주민 주차장	공부방, 놀이터 주민이용	서구 내동
돈보스코의집	29	10	34.5	80	공동생활가정		서구 정림동
정림원	100	27	27.0	100		문화체육공간 주민이용	서구 정림동
계	801	460	57.4				

주 : 2012. 12월말 기준.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그림 2-2-2]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현황(시설별)



3. 타 지역 다기능화 사례 및 정책함의

1) 서울특별시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 사례

(1) 동명아동복지센터

동명아동복지센터는 본래 1950년 전쟁고아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약 60년 동안 고아와 기아 및 결손가정 아동들을 양육·보호함으로써 1,100여명의 아동을 사회시민의 일원으로 배출시켜온 아동복지시설이다. 양육·보호를 위한 고아원이라는 단일기능의 기존 아동복지생활 시설에서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전하였고, 지역별 특화사업을 위해 동명아동복지센터와 더불어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

고 있다.

연월일	내용
1950. 5. 5	미감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서대문 평창동 산1번지에 설립(운영법인 동명원)
1953. 3. 25	서울 수복 후 동작구 흑석동 산 60번지로 이전
1961. 5. 18	사회복지법인 동명원 법인설립 인가
1965. 7. 6	아동복지 시설허가
1968. 3. 25	현 거주지 관악구 봉천1동 647-10 이주
1988. 8. 15	남숙사 2층 220편 증축
1992. 9. 10	식당 100평 개축
1993. 2. 1	일본아동복지생활시설 '성령애아원' 과의 시설교류 진행
1995. 9. 20	여숙사 3층 150명 신축
1998. 6. 1	관악구 소재 새들어린이집 개원
2000. 7. 13	'동명아동복지센터' 로 시설명칭 개원
2000. 11.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퇴소자립아동을 위한 그룹홈 선정
2001. 1. 1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의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전문적 아동 보호 프로그램 아름다운 아이들의 방 운영(아름방)' 기획사업선정 및 진행
2002. 1. 1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설아동과 지역사회 아동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기획사업 선정 및 진행(2003년 연속)
2002. 5. 1	노인전문 요양시설 '동명노인복지센터' 개원
2003. 1. 1	서울 공동모금회 '시설아동과 지역사회 아동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만들기' 기획사업 연속선정 및 진행
2004. 2. 25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 개원
2005. 10. 20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놀토(재량휴업일) 지원 프로그램' 선정
2006. 1. 15	삼성복지재단 '시설아동의 부모와 시설의 교류를 통한 가족복귀프로그램' 선정
2006. 11. 1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퇴소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선정
2008. 1. 1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 3년(2008~2010)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선정
2011. 9. 1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놀이치료지원사업 선정

A. 조직 및 아동 기본 현황

동명아동복지센터는 원장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총 5개의 과 단위부서와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사업이 수행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와 복지개발과 등을 두어 단 순보호·양육기능을 넘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리적 시설은 대지 총 3,300㎡, 건물 1,550㎡으로 사무국(3층), 포희관(지하1층 지상3층), 예벤에셀(지하1층 지상2층)로 배치되어 있다.

직원은 총 28명으로 원장, 사무국장, 각 과장 및 팀장, 퇴소자립전담요원, 사무원, 임상심리

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명아동복지센터의 아동현원은 총 74명으로, 아동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아동들의 실제적인 치료와 자활을 위해 필요한 임상심리상담원과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의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명씩 배치되어 있으나, 임상심리상담원은 전무하다.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임상심리상담원 등의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요망된다.

[그림 2-2-3] 동명아동복지센터 조직도



자료 : 동명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표 2-2-5> 동명아동복지센터 직원현황

직위	프로그램 역할수행	인원	직위	프로그램 역할수행	인원
원장	기획연구 및 총괄	1	보육팀장	아동양육	10
사무국장	사무국, 보육과 총괄	1	생활팀장	영양급식	2
복지지원과장	푸드뱅크, 안전관리	1	보건팀장	건강관리	1
보육과장	아동양육	2	퇴소자립전담요원	퇴소아동 자립 지원	1
복지개발과장	사업 기획 및 운영	1	사무원	사무, 회계	1
영양과장	영양급식	1	임상심리상담원	상담 및 치료	1
복지사업팀장	사업 기획 및 운영	1	관악지역	방과후아동	4
총인원 28명 (2012.1.1. 기준)					

자료 : 동명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표 2-2-6〉 동명아동복지센터 아동현황

	영아	유아부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연장	합계
남	4	5	2	2	4	3	2	3	5	0	3	3	4	6	4	48
여	1	4	2	2	0	2	1	2	1	3	4	1	3	0	0	26
합계	5	9	4	4	4	5	3	5	6	3	7	4	7	6	4	74

주 : 2012. 1. 1. 기준

자료 : 동명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B. 기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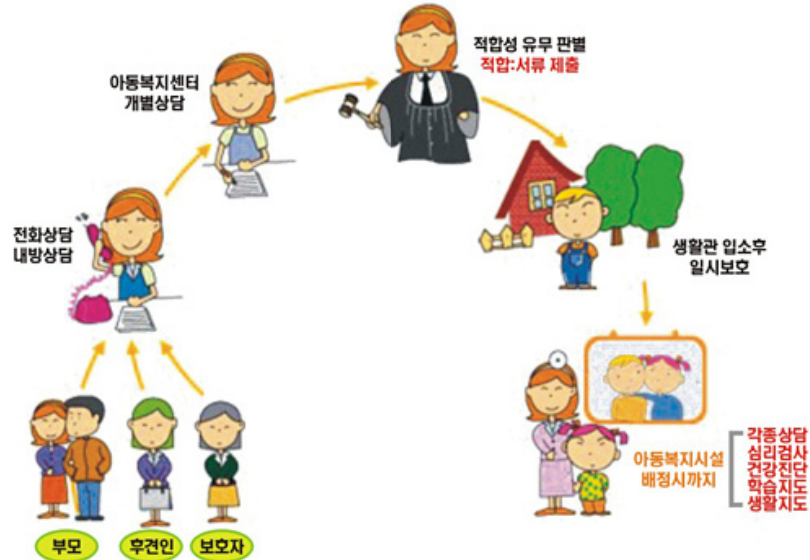
기관사업은 ‘입소’,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상담’, ‘퇴소자립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a) 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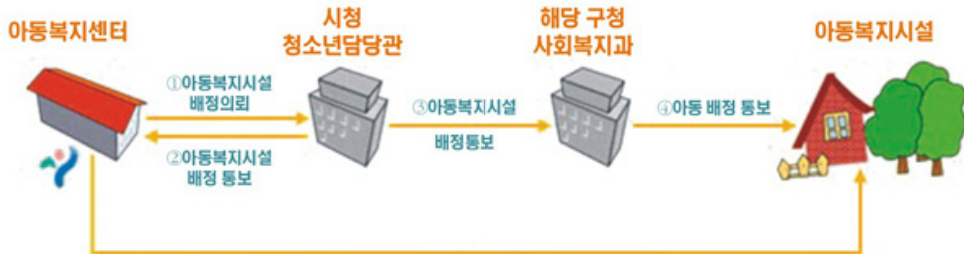
입소대상은 아래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되며, 전화상담이나 내방상담을 통해 입소절차가 시작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입소과정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입소의뢰가 들어온 모든 아동을 생활관에서 일시보호하며 입소의 적합성 유무 판정, 서류제출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시킨다. 더불어 개별아동복지시설로 배정될 때까지, 각종검사, 심리검사, 건강진단,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을 통해 보호아동대상의 총체적인 돌봄에 개입하게 된다(그림 2-2-4 참조).

입소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 ○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보호조치 의뢰된 아동(장애 또는 문제 행동이 심각한 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설 입소를 의뢰하면 반드시 입소되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 ○ 시장 또는 구청장이 특별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가출아동에 대해서는 적극적 보호조치)
------	--

[그림 2-2-4] 입소절차



■ 상담후 적합 판정 결과



자료 : 동명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b)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은 여섯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신앙부, 봉사부, 교육부로 구성된 자치활동 프로그램, 센터 내에서 아동들이 자유롭게 악기를 다루고 공연을 준비하는 밴드부 프로그램, 아동들의 욕구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아기행집 프로젝트, 원가족지원 프로그램, 후견인지원 프로그램, 기타 동아리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자차활동 프로그램	◆ 신앙부 동명아동복지센터의 설립이념인 기독교를 바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 봉사부 아동들이 지원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봉사한다. 센터내의 전반적인 위생지도와 환경미화를 담당한다. ◆ 교육부 아동들의 학습지도를 책임지고 관리하며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아동들에게 지·정·의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밴드부	창단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사닥다리 밴드. 센터내에 있는 밴드부실에서 아동들이 자유롭게 밴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연 2회 공연과 사랑의 콘서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
아·기·행·집 프로젝트	《아동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집안 만들기》는 동명아동복지센터의 아이들이 행복한 집안을 만들어 욕구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원가족 지원 프로그램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원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부모교육, 캠프, 상담을 통하여 가정복귀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도모한다.
후견인 지원 프로그램	기존 후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1회 교육과 캠프를 시행함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후원자들끼리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지속적인 후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목적이 있다.
동아리활동	기타 동아리 활동

c) 아동청소년상담

입소 아동의 정서적 안정, 대인 관계 개선, 인격의 성숙, 대근육과 소근육의 발달, 지각의 발달, 집중력, 놀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 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평가	아동의 지능, 심리문제, 성격, 진로 적성 등에 대하여 내외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상담치료방법 지원
모래놀이치료	모래와 놀이감을 이용하여 자기 내면화 상징, 자아성장과 통합을 도모
미술치료	미술매체를 활용한 창작과정을 통해 자아성장과 정서적인 안정 도모
놀이치료	놀이과정을 통한 분노감 표출, 정서적 안정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청소년상담	개인심리 분석, 심리적인 어려움 해결
집단상담	또래 상담, 감수성 훈련, 대인관계 향상, 스트레스 관리, 자아존중감 향상 등 상호 작용 중심의 집단 상담
상담기관 연계사업 (와래상담)	• 자아존중감 향상 등 상호 작용 중심의 집단 상담 • 지역사회와 소아정신과 및 상담센터,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아동들의 심리평가, 심리치료(미술, 음악, 놀이, 언어, 학습, 사회성 치료) • 약물치료 사업 진행

d) 퇴소자립사업

퇴소자립사업은 시설퇴소준비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입소 아동의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한 무한(한)도전’이라는 모토로 진행되고 있다. 시설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정부의 보호를 떠나 청소년기에서 성인초기로 전환된다. 즉, 의존에서 점차적인 자립으로의 변화과정에 있으므로 실제로 심리적, 사회적 전환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적응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설 퇴소준비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실생활 적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 강화와 심리 정서적 지원의 기회 제공,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능력 등을 강화시켜 퇴소 이후의 생활에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의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으며,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상시 진행된다.

분 류	프로그램명	세부프로그램
공통 프로그램	일상생활기술강화	오리엔테이션 요리 교실 "나는 요리사" 자기관리 P/G "혼자서도 잘 해요"
	자기보호 기술	성교육 "소중한 나의 몸" 약물중독 교육 자기보호 P/G
	지역자원연계	지역자원조사 "우리 동네"
	돈관리 기술	경제교육 "애들아! 부자되자" 용돈관리 "현명하게 사용하자"
	사회적 기술	MBTI 집단활동 "지피지기백전백승" 인간관계훈련
	직업찾기	진로 및 적성검사 진로탐색 프로그램 대학 및 기업체 탐방
	직장병화	사회인 되기 첫걸음
	다시 집 떠나기	내집만들기
특성화 프로그램	생활지도사의 자립지도 능력 양성 및 강화	아동과 담당 생활지도원의 멘토링 "이것이 진정 멘토링" 생활지도사의 자립지도 양성
	원가족과 친밀감 형성 및 부모 교육	예비부모교육 원가족간담회 및 외식지원 퇴소 후 사후 관리
	심리정서적지원의기회제공	심리평가 사례회의 심리치료
	학습능력향상	학습 능력향상 외국어 능력향상 프로그램

(2)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 : 동명아동복지센터의 다기능화 사업

현대사회에 들어 맞벌이 및 자영업 등으로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들은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방과후 저학년 아동들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며 저녁식사 및 학습지도 등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학교부적응 등의 아동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부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과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동복지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동명아동복지센터의 다기능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A.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 사업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사업은 크게, 아동복지사업, 부모역할 강화사업,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으로 수행되고 있다.

a) 아동복지사업

(a) 방과후 전문프로그램 운영

방과후 학습지도 교실	부모의 귀가시간까지(오후1시~오후10시) 보호하면서 아동의 학습지도와 특별활동을 지원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개별상담 프로그램	아동의 개별척도검사, 심리진단을 통한 아동심성검사, 성향척도검사 지원
집단활동 프로그램	개별상담을 통한 집단 프로그램 교실 운영을 조직하여,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 및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사회성, 대인관계, 자아효능감, 협동심 등 배양)
심성강화 프로그램	미술치료, 치료레크레이션, 놀이치료 등 개별적 치료프로그램 지원과 정서함양교실 운영
급식지원사업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1일 영양 권장량에 맞게 급식제공 · 학기중: 간식·석식 제공 / 방학중: 중식·간식·석식 제공

(b) 시설개방사업

아동여가문화 공간제공	· 어린이 도서관 운영 · 휴면실(남·여) 운영 · 멀티미디어실(영상음악 감상실) 운영 · 체육활동공간(풋살경기장, 실내놀이터, 스카이팡팡) 운영
--------------------	--

(c) 재량휴업일(놀토)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현장학습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놀토)에 현장학습진행 (유리공예, 농촌체험, 도자기공예, 갯벌체험 등)
생일파티	매월 둘째주 토요일(놀토)에 생일을 맞은 아동을 대상으로 생일파티 진행

b) 부모역할 강화사업

부모교육	효과적인 자녀양육 방법을 위한 정보제공 및 부모교실 실시
부모·아동 관계성 강화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집단 프로그램 실시
상담사업	부모상담, 가족상담, 전화 및 사이버상담 실시

c)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희망봉사 내용별, 능력별로 나누어 관악 지역사회 봉사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 실시

(3) 지역아동복지센터 사업(서울특별시 고유사업)의 개요

A. 사업개요

서울특별시는 지역사회 내 기존 아동양육시설(옛 고아원)의 유휴 공간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급식지원, 아동상담,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지역아동복지센터』를 설치,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역아동복지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지역아동센터)에 근거하여 「저소득 보호아동 중점대책」(시장방침 434호(2004. 7. 12))을 토대로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2004년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사례 (Best Practice)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지원대상	• 19개소 • 강동, 서울SOS, 관악, 강서, 청운, 해명, 영락, 혜심, 구세군, 성모자애, 돈보스코, 상록, 삼동, 영등포, 상록, 동서울, 서대문, 성동, 은평
지원금액 (시비 100%)	• 인건비: 생활복지사 3명(임상심리상담원 포함) / 개소당(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지원기준과 동일) ※ 「Now Start」 사업추진에 따른 꿈나무 서포터 1인 추가지원 • 운영비: 1,030천원/개소, 월 • 프로그램비: 2,000천원/개소, 월 ※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각 5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 집행 가능
운영관리	• 이용아동 50인 이상 시설의 영양사는 해당생활시설의 영양사가 겸직가능 • 프로그램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상담료, 교재비, 재료비 등)를 이용자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음. (단 수급자 및 저소득아동의 경우는 실비부담 제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비 등은 용도에 맞게, 연중 고루 집행하도록 행정지도

B. 운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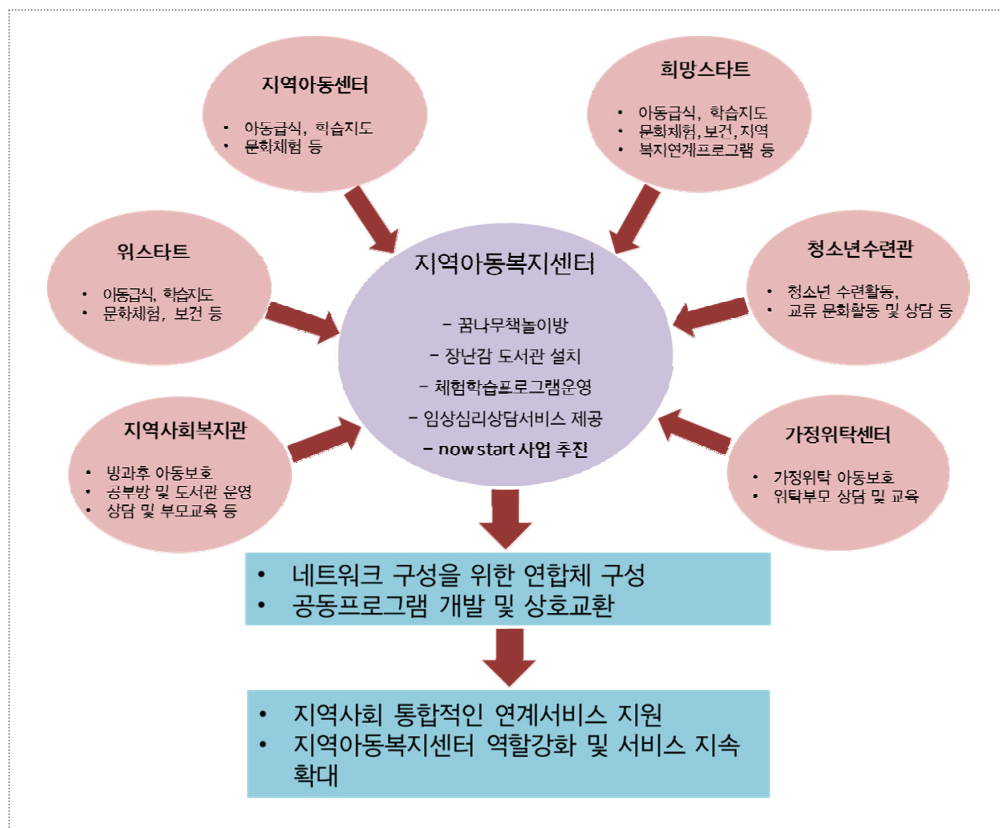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는 방과후공부방, 컴퓨터교실, 체험학습, 급식지원 등 기본적인 아동 지원 및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도서관, 독서실, 영화감상실 등 특화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피학대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뢰된 방임된 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보호 시 아동의 건전육성 위한 프로그램(급식지원,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 상담, 심리치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학습 지원 서비스인 『Now Start』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아동은 시설보호,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이며, 꿈나무 서포터(센터별 1명)에 의한 지속적 스크리닝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 지역아동복지센터 내에 『서울 꿈나무 책 놀이방』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꿈나무 책 놀이방』은 기존 지역아동복지센터 및 아동양육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이 책과 놀이를 함께 하여 만남과 어울림의 소통공간으로 부담 없이 찾고 지역마을문화를 이루어내는 자유로운 어린이 전용공간이다. '08년에 6개소(강서·구세군·관악·영락 지역아동복지센터, 광진·보라매청소년수련관), '09년 2개소(서울SOS지역아동복지센터, 노원청소년수련관), '10년 8개소(서울특별시꿈나무마을, 상록보육원, 은평천사원, 이든아이빌, 마자렐로센터, 선덕원, 경생원, 오류마을)가 개소하여 2012년 현재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 체형에 맞게 도서실을 개보수하여 책 읽는 방 및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였으며,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기존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생활복지사 등이 급식제공, 방과후 학습지도, 건전한 놀이·오락프로그램과 병행하며 운영하고 있다.

C.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지원체계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모임 및 연계망 구축, 지역복지 인프라 확대로 통합적 연계 서비스 지원, 거점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및 서비스 지속 확대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구청으로 하여금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지역아동센터, 위스타트, 희망스타트와 연계하여 지역아동복지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행정 체계를 만들었다. 구청장은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센터의 운영상황,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며, 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는 매분기말까지 사업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은 이에 근거하여 예산 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1963년 3월에 설립된 이래 상담과 보호, 치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체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아동들을 돌보고 있으며,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학대 예방 및 조치와 관련된 상담을 24시간 하고 있다.

연월일	내용
1963. 3	대한 양연회 서울특별시 지부 설립(중부 을지로 3가 65-21)
1965. 1	서울특별시 아동상담소로 개칭(조례 제37조 보사국장 소장 겸임)
1966. 5	청사이전(중구 북창동 20-2)
1972. 1	청사이전(중구 도동 1가 3-106)
1972. 5	조례개정(아동과장 소장 겸임)
1973. 8	청사이전(서대문구 응암동 산7번지)
1973. 9	청사이전(강남구 양재동 14-5)
1974. 5	조례개정(별정5급 소장)
1974. 11	아동일시보호 생활관 개설
1976. 3	청사이전(영등포구 신길동 465-1)
1985. 11	청사이전(동작구 대방동 345-1)
1998. 11	청사신축이전(강남구 수서동 산4-1)
2000. 10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2001. 6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로 명칭 및 소관사무변경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866호)
2004. 6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5개소)에 따른 운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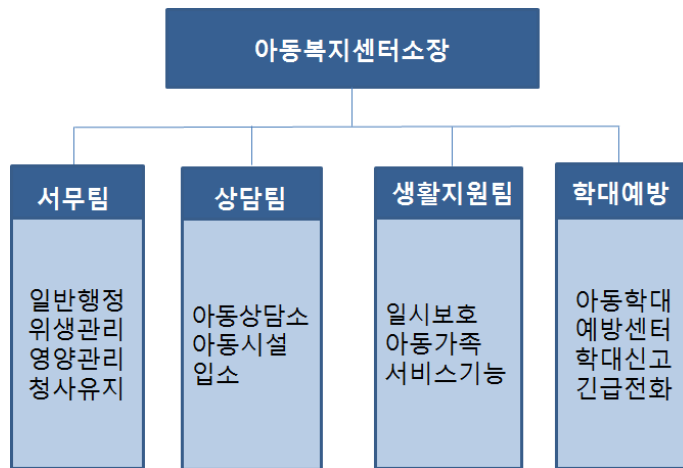
A. 조직 및 아동 기본 현황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청사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25,828m²와 건평 2,307m²로 각종 놀이시설과 자연학습장을 갖추고 정서적 아동이 가장 필요한 아이들이 자

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하부터 2층까지 있으며, 지하에는 체력 단련실, 목욕실 등이 있고, 1층과 2층에는 학습실, 치료실, 심리검사실, 의무실, 숙소, 세미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야외에는 수영장과 자연학습장, 놀이시설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조직은 팀제로 이루어져있다. 아동복지센터소장 아래 4개의 팀이 있으며, 각 서무팀, 상담팀, 생활지원팀, 학대예방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무팀에서는 일반행정, 위생 및 영양관리, 청사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팀장 1명과 10명의 팀원이 있다. 상담팀에서는 아동상담소 기능을 수행하면서 아동의 시설입소를 돕는 기능을 하며 1명의 팀장과 5명의 팀원이 있다. 생활지원팀에서는 아동의 일시보호기능과 아동가족서비스기능을 담당하며 1명의 팀장과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대예방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기능과 학대신고 긴급전화 운영에 대한 기능을 하며 1명의 팀장, 5명의 팀원이 일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조직도는 [그림 2-2-5]와 같다.

[그림 2-2-5]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조직도



자료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에 접수된 아동의 현황으로, 2012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긴급전화에 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고접수는 1,490명이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가 1,171명, 일반상담사례가 934명이었다. 학대의심사례의 초기개입결과 총 956명의 초기개입이 있었는데, 학

대사례가 524명, 잠재사례 56명, 일반사례 204명, 판정지연사례가 172명이었다. 학대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4명의 학대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중복이 1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151명, 유기가 62명, 신체학대 54명, 정서학대 40명, 성학대 22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 결과, 원가정보호된 사례가 3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보호된 사례가 138명이었으며 사망한 사례도 1명 나타났다.

〈표 2-2-7〉 긴급전화 접수현황

구분	신고접수					학대위험사례 초기개입결과				
	계	학대위험사례			일반 상담	계	학대 사례	잠재 사례	일반 사례	판정 지연
		소계	응급	단순						
계	1,490	1,171	237	934	319	956	524	56	204	172
본 센터	388	229	55	174	159	227	126	8	56	37
아동보호 전문기관	1,102	942	182	760	160	716	398	48	148	122

자료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표 2-2-8〉 학대사례 유형별 현황

구분	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	중복
계	524	54	40	22	62	151	195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126	20	7	4	62	12	21
거점 및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	398	34	33	18	0	139	174

자료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표 2-2-9〉 피학대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

	계	원가정 보호	친인척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타기관 의뢰	사망	기타
계	524	322	20	2	138	32	2	1	7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126	38	5	0	71	10	0	0	2
거점 및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	398	284	15	2	67	22	2	1	5

자료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B. 기관 사업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62조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며(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아동일시보호시설 기능, 아동상담소), 아동복지법에 기반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아동의 권익 최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복지전문상담기능과 아동학대 예방적 기능, 아동 보호 및 치료기능, 아동복지 정보제공기능을 통하여 아동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은 학대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 보호, 치료, 교육하며,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조사와 상담, 교육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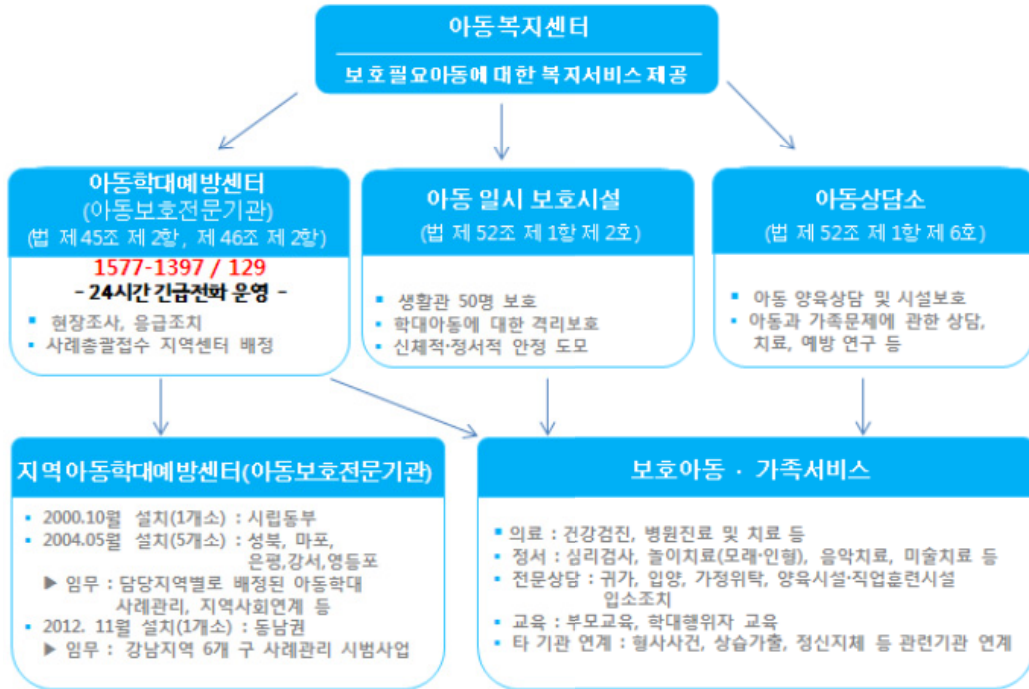
b) 아동일시보호시설 기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시설입소와 국내입양, 위탁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의 일시보호와 양육대책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아동의 신상을 관리한다.

c) 아동상담소 기능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기능을 시행하고, 기타 아동 정보제공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그림 2-2-6] 추진체계



자료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2) 대구광역시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 사례 : 에덴원

에덴원의 운영법인인 우봉재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이념을 실천하여 소외 받는 사람이 없고 모든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양육시설(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월일	내용
1951. 7. 1	에덴원 설립
1951. 7. 25	초대 원장 이선원 취임
1957. 11. 30	재단법인 에덴원 설립 인가
1959. 7. 27	에덴원 시설 인가
1975. 8. 30	평화보육원 인수 합병
1977. 1. 28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칭 변경
1989. 10. 20	에덴원 신축 원사 기공식
1990. 6. 7	신축 원사 완공
1990. 10. 13	이전 준공식
1990. 10. 21	대구직할시 남구 봉덕동 1322번지 외 5필지로 원사 이전
1999. 12. 1	사회복지법인 에덴원 후원회 조직
2000. 1. 25	에덴원 소식지 제1호 발행
2000. 5. 21	전라남도 광주시 남구소재 신애원과 자매결연
2002. 3. 29	경북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와 산학협력체계 구축
2004. 8. 9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영.호남 청소년 도보 캠프)
2004. 12. 6	에덴원 증축 완공
2005. 1. 17	담장허물기 및 조경공사
2006. 8. 16	미8군 25수송대대와 자매결연
2006. 10. 14	대구아동복지연합회 '제24회 아동복지시설 한마음 사랑 큰잔치' 최우수상
2006. 10. 25	현대건설과 자매결연
2006. 11. 18	한국아동복지연합회 '2006 꿈나무 예술한마당 축제' 대구 대표로 참가
2007. 2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능보강(도어교체로 달라진 우리집)
2008. 7	산은사랑나눔재단 지원 세탁장 신축 공사 착공
2008. 10. 31	2009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프로그램 선정 (시설아동의 직업 이해도를 높여 올바른 진로 선택 능력을 배양하는 진로인식 프로그램 '미래를 향한 내게이션')
2008. 11. 7	미8군 154th Medical-Detachment와 자매결연

A. 조직 및 아동 기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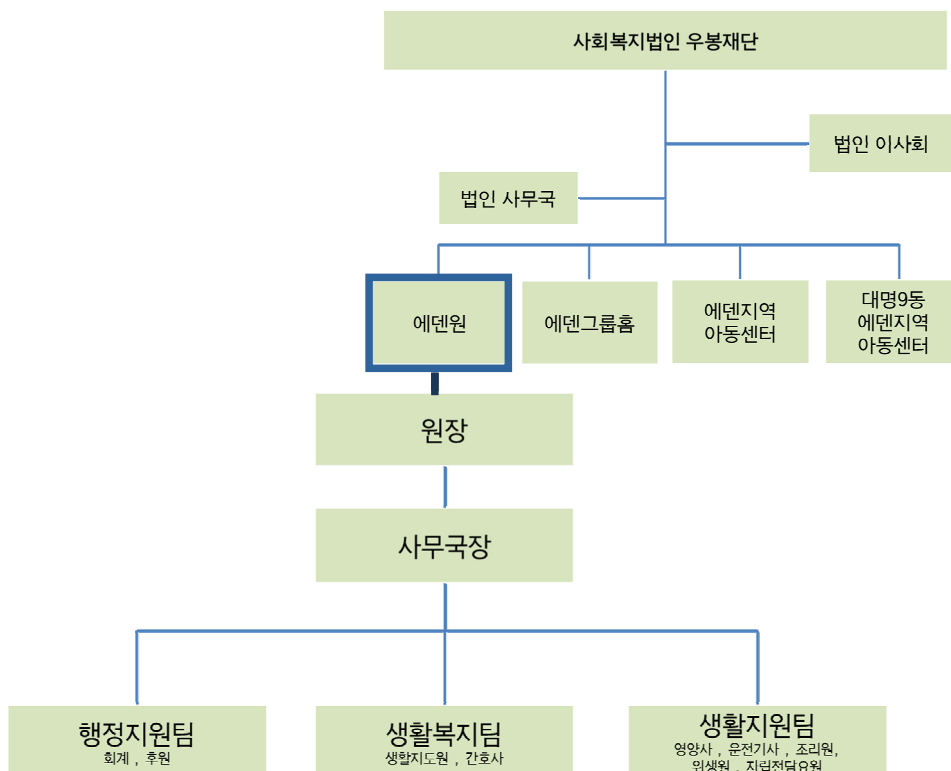
에덴원은 원장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3개의 팀 단위 부서를 통한 사업수행 구조를 갖고 있다. 행정지원팀에서 회계와 후원, 생활복지팀과 생활지원팀이 아동들을 보호·양육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건물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숙소동(숙소 6개소, 도서실, 탁구장, 프로그램실

등)과 지상 2층의 증축동(식당, 강당, 컴퓨터실, 사무실, 상담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원은 총 15명, 원장,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총무,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전담요원, 운전기사가 각각 1명씩이고 생활지도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덴원의 아동현원은 총 51명으로 남아 31명, 여아 20명이 거주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에덴원이 소속되어 있는 우봉재단은 에덴원 외에 에덴그룹홈, 에덴지역아동센터, 대명9동에 텐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방임, 기아, 미혼모자녀 등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은 에덴원이나 에덴그룹홈으로, 지역의 저소득가구, 맞벌이가구, 한부모가구 등 보호자들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이하 보호대상아동은 지역아동센터로 배치되고 있다.

[그림 2-2-7] 에덴원 조직체계



〈표 2-2-10〉 에덴원 직원현황

구분	원장	사무국장	총무	생활 지도원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전담 요원	운전기사	계
인원	1	1	1	6	1	1	1	1	1	1	15

자료 : 에덴원 홈페이지.

〈표 2-2-11〉 에덴원 아동현황

	미취학	유치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합계
남	5	2	8	9	7	0	31
여	0	1	6	7	4	2	20
합계	5	3	14	16	11	2	51

입소대상아동

· 에덴원 · 에덴그룹홈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방임, 기아, 미혼모자녀 등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20세)의 보호대상아동
· 에덴지역아동센터 · 대명9동에덴지역아동센터	지역의 저소득 가구,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보호자들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 보호대상아동

주 : 2012. 1. 1. 기준

자료 : 에덴원 홈페이지.

B. 기본 사업

기관의 기본 프로그램으로는 아동대상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대상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인지·정서·인성·사회성·정체감 발달을 위해 각종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성폭력이 증가하는 현황에 맞춰 자기보호능력개발을 위해 폭력예방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가정복지와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 교류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원활용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구 분		프로그램
아동대상 프로그램	건강발달	건강관리, 약물오남용교육, 약물교실, 금연교실
	인지발달	학습지도, 특별활동
	정서발달	신뢰감 형성, 정서발달, 분노조절, 불안감소
	인성발달	예절교실, 봉사활동
	사회성발달	사회성개발, 자치활동, 또래관계형성, 자기주장훈련, 갈등해결기술향상, 학교생활적응, 의사소통능력향상
	정체감 발달	자아성장, 자아존중감 향상 미술치료
	자기보호능력개발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안전계획 수립
	퇴소준비	일상 및 사회생활 기술훈련, 진로탐색, 퇴소준비, 퇴소관리,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정복귀	가족관계 유지, 가정생활체험학습
	가족기능 강화	부모의 양육기술훈련, 좋은부모되기훈련, 복합가족관계개선, 가족의 의사소통기술훈련
지역사회 교류프로그램	지역사회자원활용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도우미활용 프로그램
	지역사회기여	자원봉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아동보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가족결속력 강화

C. 다기능화 사업

우봉재단은 에덴원의 다기능화 사업으로 에덴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 에덴그룹홈

에덴그룹홈⁴⁾은 만 18세 미만의 결손가정(고아, 미아, 기아, 가정해체)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현재 입소정원은 6명으로, 프로그램의 큰 틀은 에덴원과 유사하나 아동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4) 그룹홈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로,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가정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아동으로서 낙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선진국형 아동복지시설이다.

구 분		교육프로그램
아동 프로그램	정서발달	생일잔치, 문화공연관람, 취미적성활동
	사회성발달	가족회의, 캠프, 체육대회, 체험학습
	인지발달	학습지도(과외), 학습지, 방과후수업
	건강 자기보호	성교육, 소방교육, 약물오남용교육, 건강관리, 폭력예방교육
	자립 퇴소	진로탐색, 퇴소준비, 퇴소관리
	가정복귀	가족관계유지(원가정 방문), 가정생활체험학습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기능강화	가족의사소통훈련, 가족관계개선훈련
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사회활용	학습봉사, 프로그램봉사, 이미용봉사, 멘토형성
	지역사회기여	지역사회봉사활동
직원교육 프로그램	직원 교육 프로그램	

b)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유치부, 초등학생들을 보호자가 귀가하는 시간(오후 10시)까지 보호하며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에덴지역아동센터와 대명9동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현재 2개소가 각각 29명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한 신체발달과 함께 성장에 필요한 간식과 석식, 건강검진, 학습지도, 특기활동, 정서, 사회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들과의 연계와 자원봉사자(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어르신)등의 사회자원 개발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력하고 있다.

	구 분	교육프로그램
에덴지역아동센터	보호프로그램	간·석식지원, 건강검진, 야간보호, 귀가지원
	학습지도	숙제, 수학, 영어, 한자, NIE, 시험대비
	예능활동	음악, 미술, 영화, 전시, 관람
	체험활동	테마캠프, 만들기, 행사, 자연체험
	정서지원	개별상담, 부모상담, 집단상담, 생일잔치
대명9동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	간·석식지원, 건강검진, 위생지도, 안전지도, 귀가지도
	교육지원	학습지도, 숙제지도, 특기적성교육(바둑, 영어, 한자, NIE, POP 등)
	정서개발	미술(POP), NIE, 문화관람, 미술특강, 바둑교실, 생일파티
	문화지원	전시회/영화/인형극 외 각종 공연 관람
	사회성개발	테마캠프, 만들기, 동아리(요리)활동, 자연체험
	복지지원	개별상담, 부모상담, 집단상담
	지역사회연계	장학금 지원, 후원 모집 관리

요일		에덴지역아동센터 주간일정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13:30~15:30	등원, 숙제 및 개별 학습지도					
15:30~16:00	간식 및 P/G 준비					
16:00~16:50	한자수업	NIE, 논술	음악수업	NIE, 논술	책읽기, 독후감쓰기	
17:00~17:50			한자수업			
18:00~19:00	자녀식사 및 정리, 청소					
19:00~20:50	책읽기, 독후감쓰기	영어수업	수학수업	영어수업	수학수업	

요일		대명9동지역아동센터 주간일정표				
시간	월	화	수	목	금	
13:00~15:30	등원, 숙제 및 개별 상담, 컴퓨터이용, 휴식					
15:30~16:00	간식					
16:00~18:00	POP수업	마술특강	NIE수업	독서지도	평가 / 수학	
18:00~19:00	자녀 식사 및 휴식					
19:00~20:30	평가 / 수학	한문교실	기초영어	바둑	한문교실	
20:30~21:00	청소, 귀가지도					

c) 다기능화사업의 기능 확대

다기능화 사업으로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기능확대를 위해, 복지강화, 가족지원사업, 재가아동주간보호, 네트워크사업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간에 논의 및 지원·교육을 지원하고, 대구 남구지역 재가아동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현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전학년생을 대상으로 재가아동주간보호, 에덴원과 협력기관이 함께 사례회의 및 피드백, 전체사업평가 등을 추진하며 네트워크사업을 실시하였다.

	내용		대상
복지강화	논의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의 협력관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및 에덴원 종사자
	지원	행정지원, 운영 슈퍼비전, 외부자원 연계	
	교육	영양, 위생보건, 국가정보시스템, 부모아동권리, 사설건축, 종사자워크샵	
가족지원사업	사례관리	개별상담 및 교육, 가정방문, 지원, 지역연계	남구지역 재가아동
	반찬배달	주1회 밀반찬배달	
	현물지원	생필품지원, 협력기관 서비스제공	
재가아동 주간보호	보호	주간 아동보호 및 귀가지도	초등 전학년생
	프로그램	교육, 문화, 정서지원, 자립, 지역사회교류	
네트워크사업	소개	목적과 취지, 운영, 동기부여	에덴원, 협력기관
	회의	사업진행 및 실무회의, 사례회의, 피드백	
	평가	성과 및 과정보고, 전체사업 평가	

d) 다기능화 관련 시범사업운영 경험

다기능화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의 운영 경험도 축적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공동모금회배분 사업을 통해 진로·자립프로그램,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소외아동을 위한 애니메이션 학습지원 등이 운영되었다.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기간
2011	멘토링 사업	-에덴원 아동의 인생 설계 및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 위한 1:1 멘토 형성 프로그램	7,120	1~12월
	아간보호사업 이용시설 사업	-저소득층 방임아동의 보호·학습·정서지원 -아간(밤 10시) 보호	14,380	10.4. ~ 11.3.
2010	아간보호사업 이용시설 사업	-저소득층 방임아동의 보호·학습·정서지원 -아간(밤 10시) 보호	14,380	10.4 ~ 11.3.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 소외 아동을 위한 애니메이션 학습지원 -아동의 창의력 개발	3,400	5~10월
	모금회 배분사업	-나도 요리왕 -공동모금회 제언기획사업 중심 기관 역할 수행	2,319	1~12월
2009	아간보호사업 이용시설 사업	-저소득층 방임아동의 보호·학습·정서지원 -아간(밤 10시) 보호	56,784	08.3. ~ 10.3.
	문화예술 지원사업	-문화 소외 아동을 위한 애니메이션 학습지원 -아동의 창의력 개발	2,800	5~10월
	모금회 배분사업	-진로·자립프로그램 '미래를 향한 내비게이션' 진행(최우수 프로그램 선정)	4,195	1~12월

(a) 다기능화 시범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운영방법	제공횟수/시간	대상자
복지 전문성 강화	전문성 강화 교육	-영양교육, 위생교육, 보건교육, 국가정보시스템 교육, 부모교육, 아동권리교육	총 2회/각3시간 (부모교육10회, 아동권리교육1회)	지역아동센터 및 에덴원 종사자
	슈퍼비전	-지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계획한 개선계획서에 따라 지원	기관별 진행	협력기관 중 8개 지역아동센터
	시설 견학	-선진 시설 방문 -타 기관 주요 사업 파악	각 1회	지역아동센터 및 에덴원 종사자
	종사자 워크숍	-아동 케어 우수사례 및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및 정보교환 등		
아동가족 지원 사업	사례관리	-개별 상담 및 교육 -서비스 연계 지원	주 1회, 수시 / 2시간	
	서비스지원 및 협력기관 지원사업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학교, 상담소, 종교단체 등 지원연계서비스 -협력기관 원조를 통한 서비스 제공	수시	
	밀반찬 배달	-밀반찬 배달 서비스	주 1회	15명
방학 중 재가아동 주간 보호	보호	-방임 아동 보호 및 귀가 지도 -일상 생활 교육 및 신체 건강 관리 등	방학중 10:00~ 17:00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4명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숙제 및 기초 학습 지도 등 -5대 의무교육(성폭력예방교육, 약물오남용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문화프로그램		

(b) 다기능화 시범사업 결과 및 평가

사업명	세부사업명	만족도	평가
복지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	90%	-수업내용, 진행방법, 교육환경, 수업참여 등에 대해 조사 -전체적으로 만족하다는 의견이 나타났으나 수업참여부분에서 오전에 교육을 받고 다 시 근무를 해야한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남
	슈퍼비전	85점	-슈퍼비전을 받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 -대부분 85점을 전후로 점수가 나타났으며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 평가시에는 슈퍼 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사례관리에 대해 많은 영향 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타남
아동가족 지원사업	밀반찬배달	89점	-10점을 만점으로 15명 대상의 아동 및 가족 또는 담당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 로 조사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서비스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는 질문과 '지역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다' 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남
	사례관리	8점	-10case 1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지로 작성하였으며,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 역아동센터 담당자로부터 아동의 변화정도를 평가 -10점 만점 중 평균적으로 8점 전후로 평가가 되었으며, 아동의 개별 성장과 발달, 가족의 참여정도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방학중 재가아동 주간보호	주간보호	만족	-14명의 주간보호 대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참여만족, 보호 등의 항목에 대해 아동 과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대부분 '매우 만족한다' 부터 '보통이다' 를 선택했으며 '매우 만족한다' 는 응답 이 절반이상을 차지함 -지속여부에 대한 문항에 아동과 부모에게서 '매우 그렇다' 부터 '보통이다' 라는 응답까지 100%의 응답률이 나타남

e) 다기능화 시범사업 이후의 변화

(a) 네트워킹으로 인한 변화

사례관리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투입함으로써 사례관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각 기관을 운영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여러 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
을 내놓음으로써 기관 운영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의 연합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양한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해 사업이 보다 더 전문성을 띄게 되었다.

(b) 다기능화 사업으로 인한 기관 내 변화

생활지도원의 역할이 변화되었는데, 아동 보육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원 중 1명을 다기능화 사

업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아동 양육 외에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졌다. 아동보육 외에 지역아동센터 슈퍼비전을 담당함으로써 본인의 역량강화는 기본이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실력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모든 종사자가 복지시설 운영 전반을 익힘).

(c) 프로그램의 전문성 변화

아동양육시설은 보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중심인데 다기능화 사업을 통해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사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기초 사정에서부터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연계 등의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

(d) 자원동원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자원동원의 범위도 확대되었는데, 후원업체 및 후원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수동적 자원 동원) 뛰어 넘어 사례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 자원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동원의 성향을 띄게 되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향되었다.

(e) 중복 및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아동서비스가 거의 없는 남구지역 아동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복지대상자 중 사각지대를 발굴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중복자의 경우 밀반찬제공에서만 1명이 발견되었다.

제3절 소결

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 인구는 전체의 23%로 인구의 4명 가운데 1명을 차지한다. 매년 대전광역시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보호아동대상자의 수는 약 700여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400여명 이상은 원가정이 아닌 위탁보호체계로 배치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대표적인 위탁보호는 시설보호(아동양육시설, 혹은 소집단홈), 혹은 가정보호(위탁가정, 대리가정)라 할 수 있는데, 2011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새롭게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400여명 가운데 시설에 배치된 경우가 372명, 가정배치가 46명이었다. 그리고 매년 아동복지시설에 배치된 아동들은 거의 비슷한 숫자가 새롭게 입소하고 퇴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1-2 참조).

이처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들이 해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원가정에서 지내지 못하고 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서 지내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0년 대전광역시의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은 미혼모에 의한 출생과 부모이혼, 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는데,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른 개입전략과 서비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들의 가정 외 배치 문제는 개인마다 개별적으로 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며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마련이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보호아동대상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각각 아동 및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따라 즉각적인 개입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학대문제와 관련한 응급보호체계는 가동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보호아동대상의 가정 외 배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

한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법적 배치기준과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현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대전광역시의 아동양육시설 중 법적 기준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 의사), 임상심리상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곳은 총 7개 시설이나, 이들이 배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경우 일반아동보다 정서지능이 떨어져 정서를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석주영·안옥희·박인전, 2006), 일반가정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긍정적 정

서성 수준에 비해 더 낮음(성미영, 2006)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대상아동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임상심리상담원 배치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보육사는 아동의 연령대별로 0~2세 아동은 2명당 1명, 3~6세 아동은 5명당 1명, 7세 이상 아동은 7명당 1명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권고조치를 하거나 지원을 늘려야 한다. 예로, 아동의 입소인원이 가장 많은 B기관의 경우 0~2세 아동 2명, 3~6세 아동 5명, 7세 이상 아동 58명으로 총 12명의 보육사가 배치되어야 하나, 실제 배치된 보육사 인원은 10명으로 파악되었다. 종사자 배치 기준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수에 상관없이 소수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양육시설의 경우에도 사무국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나 사무원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배치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보육사가 사무 업무까지 떠안게 되는 실정이다. 이는 아동 보육이라는 본연의 업무효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법적 기준에 따르면 10명 미만의 경우 배치기준은 시설장 한 명인데, 아이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의 합목적성을 고려한다면 위 기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장 대상자별 조사결과

제1절 아동복지전문가 및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조사결과

본 연구에 관해 아동복지전문가(학계)와 조사대상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맥락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의 방향을 확인하였다.

1.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관한 아동복지전문가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1, 2, 3순위로 표시하여 응답한 내용에 대하여 ‘1순위*3 + 2순위*2 + 3순위*1’의 가중치를 두어 총점을 계산한 결과, 아동복지전문가는 ‘위기아동의 증가(85점, 1순위)’, ‘가정위탁과 입양 등 대안의 양육 필요성(71점, 2순위)’, ‘아동양육시설수요의 감소(69점, 3순위)’ 순으로 중요한 사회변화를 생각하고 있었다.

〈표 3-1-1〉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대한 아동복지전문가(학계)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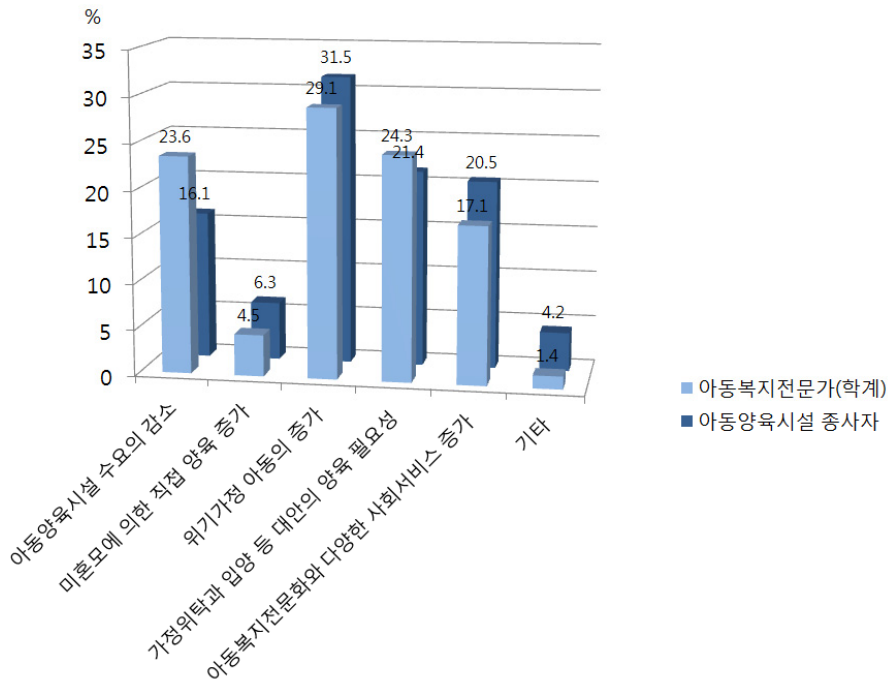
내용	1차 중요도빈도(%)	2차 중요도빈도(%)	3차 중요도빈도(%)	총점 (순위)
아동양육시설 수요의 감소	16(32.7)	6(12.2)	9(19.1)	69(3)
미혼모에 의한 직접 양육 증가	1(2.0)	2(4.1)	6(12.8)	13(5)
위기가정아동의 증가	17(34.7)	15(30.6)	4(8.5)	85(1)
가정위탁과 입양 등 대안의 양육 필요성	11(22.4)	13(26.5)	12(25.5)	71(2)
아동복지전문화와 다양한 사회서비스증가	3(6.1)	13(26.5)	153(1.9)	50(4)
기타	1(2.0)	0(0.0)	1(2.1)	4(6)
합계	49(100)	49(100)	47(100)	

한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중요한 사회복지 환경변화를 ‘위기가정아동의 증가(106점, 1순위)’, ‘가정위탁과 입양 등 대안의 양육 필요성(72점, 2순위)’, ‘아동복지전문화와 다양한 사회서비스 증가(69점, 3순위)’ 순으로 꼽았다.

〈표 3-1-2〉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내용	1차 중요도빈도(%)	2차 중요도 빈도(%)	3차 중요도 빈도(%)	총점 (순위)
아동양육시설 수요의 감소	6	7	22	54(4)
미혼모에 의한 직접 양육 증가	0	8	5	21(5)
위기가정아동의 증가	28	7	8	106(1)
가정위탁과 입양 등 대안의 양육 필요성	12	13	10	72(2)
아동복지전문화와 다양한 사회서비스증가	7	19	10	69(3)
기타	3	2	1	14(6)
합계	56	56	56	

[그림 3-1-1]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대한 아동복지전문가(학계)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2.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에 관한 아동복지전문가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1, 2, 3 순위로 표시하여 응답한 내용에 대하여 총점을 확인한 결과, 아동복지전문가는 ‘시설운영의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85점, 1순위)’, ‘비개방적 집단생활(70점, 2순위)’, ‘비합리적인 재정지원방식(57점, 3순위)’ 순으로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3-1-3〉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가(학계)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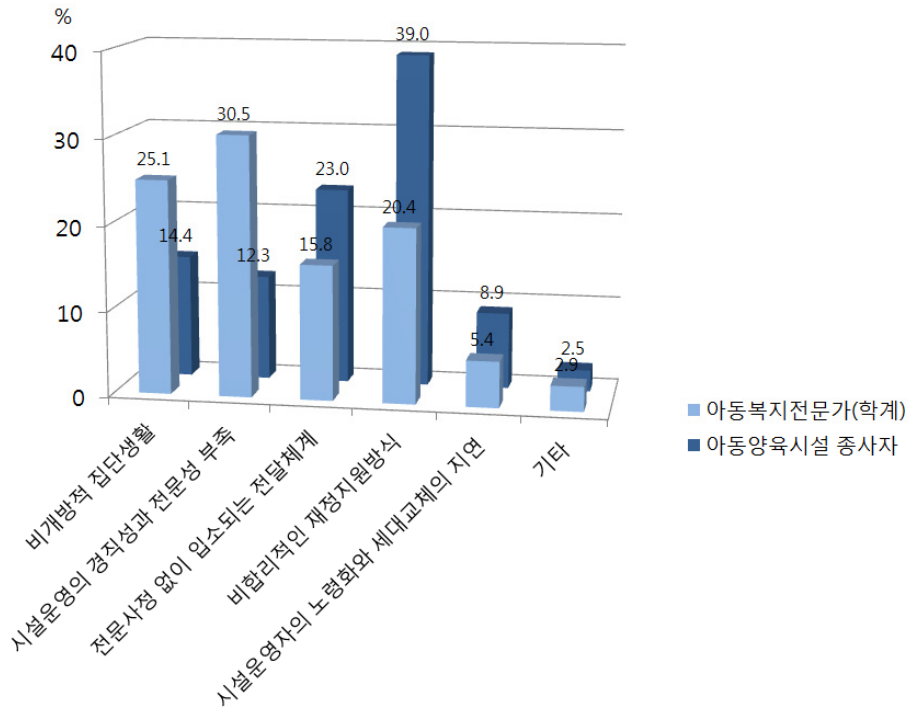
내용	1차 중요도 빈도(%)	2차 중요도 빈도(%)	3차 중요도 빈도(%)	총점 (순위)
비개방적 집단생활	13(26.5)	10(20.8)	11(23.4)	70(2)
시설운영의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	11(22.4)	21(43.8)	10(21.3)	85(1)
전문사정 없이 입소되는 전달체계	11(22.4)	6(12.5)	10(21.3)	44(4)
비합리적인 재정지원방식	11(22.4)	8(16.7)	8(17.0)	57(3)
시설운영자의 노령화와 세대교체의 지연	1(2.0)	2(4.2)	8(17.0)	15(5)
기타	2(4.1)	1(2.1)	0(0.0)	8(6)
합계	49(100)	48(100)	47(100)	

한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비합리적인 재정지원방식(127점, 1순위)’, ‘전문사정 없이 입소되는 전달체계(75점, 2순위)’, ‘시설운영의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50점, 3순위)’ 순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중요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었다.

〈표 3-1-4〉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내용	1차 중요도 빈도(%)	2차 중요도 빈도(%)	3차 중요도 빈도(%)	총점 (순위)
비개방적 집단생활	5	9	14	47(4)
시설운영의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	5	8	19	50(3)
전문사정 없이 입소되는 전달체계	13	15	6	75(2)
비합리적인 재정지원방식	31	13	8	127(1)
시설운영자의 노령화와 세대교체의 지연	2	10	3	29(5)
기타	0	1	6	8(6)
합계	56	56	56	

[그림 3-1-2]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가(학계)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3.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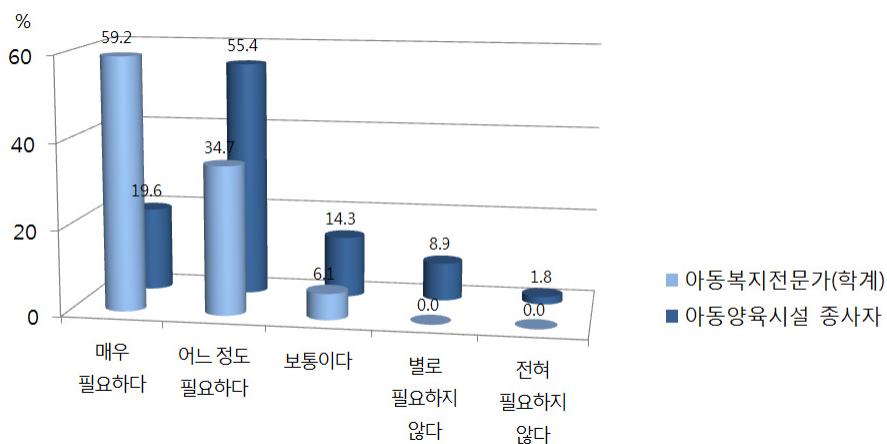
1)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의 필요성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의 필요성에 관하여 아동복지전문가는 ‘매우 필요하다’ 59.2%, ‘어느 정도 필요하다’ 34.7%로 응답자 중 93.9%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매우 필요하다’ 19.6%, ‘어느 정도 필요하다’ 55.4%로 응답자 중 75.0%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표 3-1-5〉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아동복지전문가(학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29	59.2	11	19.6
어느 정도 필요하다	17	34.7	31	55.4
보통이다	3	6.1	8	14.3
별로 필요하지 않다	0	0	5	8.9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	1	1.8
합계	49	100.0	56	100.0

〔그림 3-1-3〕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2) 아동복지영역 내 다기능화의 방향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의 방향을 아동복지영역 내에 한정하여 순위에 대해 질의하였을 때, 아동복지전문가는 ‘아동전문상담사업(1순위)’, ‘아동주간보호사업(2순위)’, ‘공동생활가정사업(3순위)’, ‘아동가정지원사업(4순위)’, ‘학대아동보호사업(5순위)’, ‘방과후아동지도사업(6순위)’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1-6〉 아동복지영역 내 다기능화의 방향에 대한 아동복지전문가(학계)의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순위)
아동가정지원사업	8	7	7	45(4)
아동주간보호사업	13	5	13	62(2)
아동전문상담사업	10	13	8	64(1)
학대아동보호사업	6	5	7	35(5)
공동생활가정사업	8	9	9	51(3)
방과후아동지도사업	3	10	4	33(6)
기타 영역	1	0	1	4(7)
합계	49	49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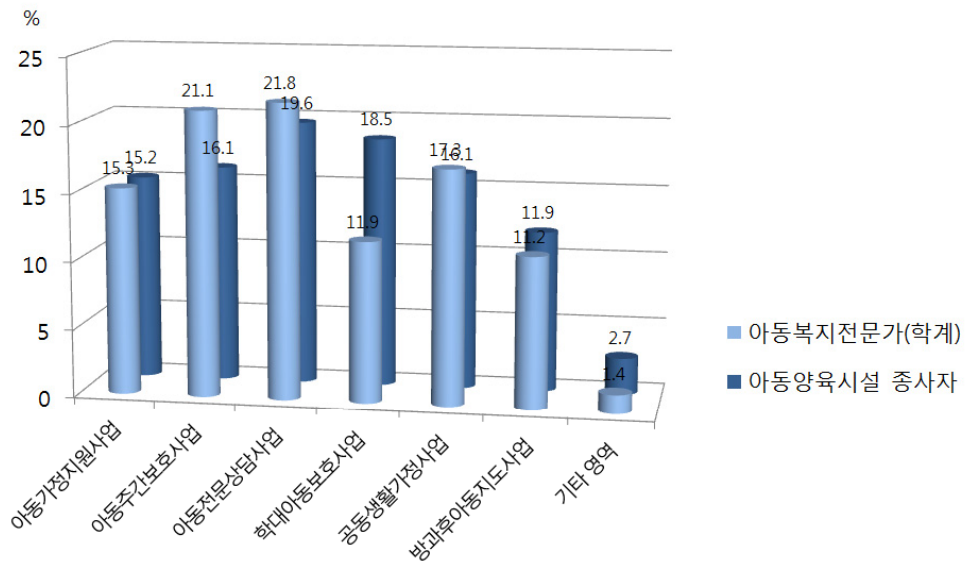
한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아동전문상담사업(1순위)’, ‘학대아동보호사업(2순위)’, ‘아동주간보호사업(3순위)’, ‘공동생활가정사업(3순위)’, ‘아동가정지원사업(5순위)’, ‘방과후아동지도사업(6순위)’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1-7〉 아동복지지역 내 다기능화의 방향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순위)
아동가정지원사업	9	6	12	51(5)
아동주간보호사업	12	7	4	54(3)
아동전문상담사업	12	12	6	66(1)
학대아동보호사업	9	14	7	62(2)
공동생활가정사업	10	6	12	54(3)
방과후아동지도사업	3	9	13	40(6)
기타 영역	1	2	2	9(7)
합계	56	56	56	

이와 같이 아동복지지역 내 다기능화의 방향은 아동복지전문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가 공통적으로 ‘아동전문상담사업’을 가장 우선하여 생각하고 있으며, ‘아동주간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등을 차순위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4] 아동복지지역 내 다기능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가(학계)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3) 다기능화에 대한 전문가 서술형 의견

□ 기능전환영역

장애아동이나 다문화아동 등 특수아동에 대한 단기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음.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증장애아동 단기보호시설 수가 태부족인 상황임.(학계전문가 a6)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제1순위로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봄.(학계전문가 b4)

양육시설의 강점은 먹고, 잘 수 있는 공간 인프라, 보호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 전문성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여 양육 외 가정위탁사업, 방과 후 사업, 전문 상담사업 외 학교 부적응으로 등교하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의 기능이 있으면 좋겠음. 학교나 교육청과 협약, 협의해서 중도 탈락된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를 다시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능 다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임. 또 자립지원센터 등 행정기관에서 하는 드림 스타트 사업도 드림 스타트를 지역별로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드림 스타트)을 양육(아동복지) 시설에 일부 위임하면,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자와 수혜자가 늘어나 드림 스타트 기관수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많은 아동, 청소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임.(현장전문가 a4)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갈 수 있는 아동전용 장애인 시설도 확충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음. 또한 시설 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마련된다면 청소년의 탈선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봄.(현장전문가 b0)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가해학생을 전문적으로 교화시킬 수 있는 아동 치료시설을 사도별 1개소씩 현재의 아동양육시설을 기능 다각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좋겠음.(공공전문가 a4)

폭력피해 아동 보호전문치료 기관 등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음.(공공전문가 a6)

□ 필요한 인력보강

기능다각화를 위해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전문 인력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예: 상담 및 치료)에 배치하지 않고 단순 사례관리 업무에 치중함으로써 스스로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음.(학계전문가 c0)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향상과 전문직 요건 강화가 따라야 할 것임. 기능 전환 시설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 슈퍼비전 등의 체계지원도 필요함. (학계전문가 a8)

기능 다각화를 위해서는 담당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담당자 1인이 아닌, 팀으로 구성되어야 함. 슈퍼비전 등을 위해서, 양육사업 사무국장이 다각화 업무까지 슈퍼비전 주기 힘들. (현장전문가 a3)

□ 보호대상아동의 최선의 배치를 위한 시스템 마련되어야

지역별 거점 아동·가족 서비스센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다루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현재 상태에서 시설의 물리적 규모가 큰 생활시설들이 그러한 센터가 될 수 있다고 봄. (학계전문가 c5)

□ 지역사회아동 이용기관으로의 전환

아동보호를 위한 가족보호,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안, 즉 아동양육시설은 아동 보호가 목적이며 실제 주거(입소) 목적 + 치료(기능) + 가정기능지원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듯 함. (학계전문가 a5)

아동의 일시보호나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양육지원 필요. (학계전문가 c1)

보호대상아동이 줄어들고, 새로운 대상이 증가(가출청소년 등)하며, 일반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아동양육시설의 서비스 기능다각화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봄. (학계전문가 c2)

아동양육시설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바 일시보호시설기능 필요 → 친가정 분리 후 친가정의 사정 상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보호 시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쉼터의 기능 필요. (현장전문가 b2)

□ 재정적 지원필요

복지가 보편화 경향을 띄면서 오히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듦.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제3세계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증가하는 반면 우리 사회의 빈곤아동, 소외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은 소홀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음. 사실상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수준을 보면 아직 미국이나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확대가 요청됨. (학계전문가 a2)

기능전환, 다각화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재정지원이나 시범사업 지원 등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개별시설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학계전문가 a8)

기능다각화의 확대는 지역사회화가 아닐까 생각되며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명시되어야 할 것임.(현장전문가 a2)

□ 아동자립을 위한 지원필요

최소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만 18세 청소년이 성인(지도자)의 지도·감독 없이 독거(혼자살기)하면서, 취업전선에 나가는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독거의무제한 폐지 필요.(학계전문가 b4)

□ 아동심리상담을 위한 전문시설 필요

문제 있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 같음.(현장전문가 b0)

보호대상아동 심리치료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필요. 예를 들면 학교폭력·성폭력에 노출되어 가해자, 피해자도 될 수 있는 보호대상아동들이 일반 신경정신과(소아정신과) 병원의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심신의 건강을 위해 전문치료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심리치료 기능이 필요.(현장전문가 b2)

지역아동의 보호, 상담, 치료의 기능으로 보강.(공공전문가 c5)

□ 시설아동들에게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아동의 단순보호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는 감소하는 아동, 시설의 운영난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동시설이 나아갈 방향과도 일치함. 즉 단순보호 외에 아동의 교육, 진로상담, 가정문제의 개입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공공전문가 b4)

아동을 단지 양육·보호하는 시설이었다면 앞으로는 아동의 비전제시, 교육, 상담, 마인드 교육 등 다양한 종합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공공전문가 b5)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기능전환

아동복지시설 지리적 위치 및 시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별 기능다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공공전문가 d3)

아동복지시설에서 다른 기능(영역)을 선택할 때, 입소아동의 생활여건과 지역사회 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기능다각화로 입소하고 있는 아동의 생활을 규제하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공공전문가 d4)

□ 다기능화의 걸림돌

기능전환, 기능다각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시설차원에서 시설장의 노령화와 직원들의 전문성 등의 문제와 시설 전환에 따른 비용 지원임. 행정적 차원에서는 지자체의 의지 부족 역시 장애물. 지자체 입장에서 시설전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감독자 입장에서 기존의 시설을 운영·감독하는 것은 인건비 지원, 아동수당지원 등 단순한 회계감독이었지만, 기능다각화에 따른 시설 규모의 축소, 전문적 시설 운영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임.(학계전문가 a8)

4) 다기능화에 대한 종사자 서술형 의견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보다는 기능의 다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됨.(종사자 a4)

다기능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 필요.(종사자 f1)

다기능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기능화에 적합한 담당 지원자 배치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종사자 f2)

4.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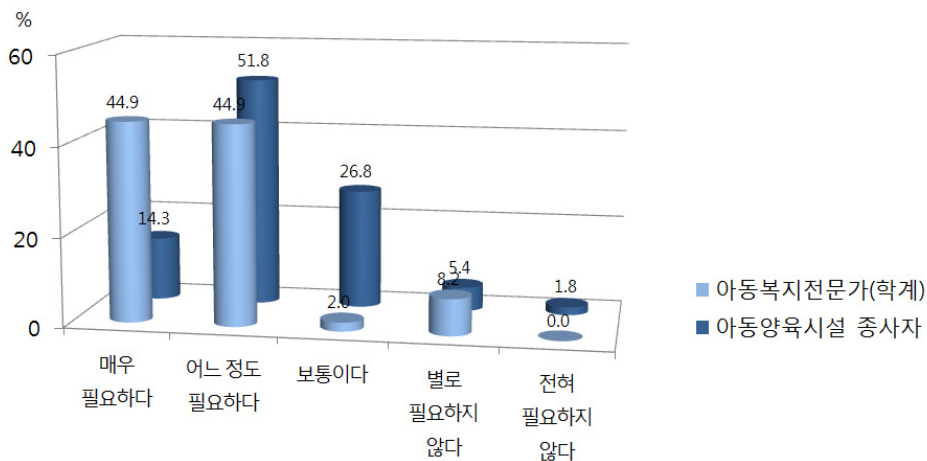
1)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의 필요성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의 필요성에 관하여 아동복지전문가는 ‘매우 필요하다’ 44.9%, ‘어느 정도 필요하다’ 44.9%로 응답자 중 89.8%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아동양육시설종사자는 ‘매우 필요하다’ 14.3%, ‘어느 정도 필요하다’ 51.8%로 응답자 중 66.1%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표 3-1-8〉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가(학계)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아동복지전문가(학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22	44.9	8	14.3
어느 정도 필요하다	22	44.9	29	51.8
보통이다	1	2.0	15	26.8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8.2	3	5.4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0	1	1.8
합계	49	100.0	56	100.0

〔그림 3-1-5〕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가(학계)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2)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의 방향

아동복지영역과 타 영역을 포함하여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의 방향에 관해 아동복지전문가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아동복지전문가는 ‘아동복지영역 내 다른 사업’을 기능전환의 압도적인 우선순위로 생각하였으며,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복지’ 등을 차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노인복지’, ‘여성복지’는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표 3-1-9〉 기능전환의 방향에 대한 아동복지전문가(학계)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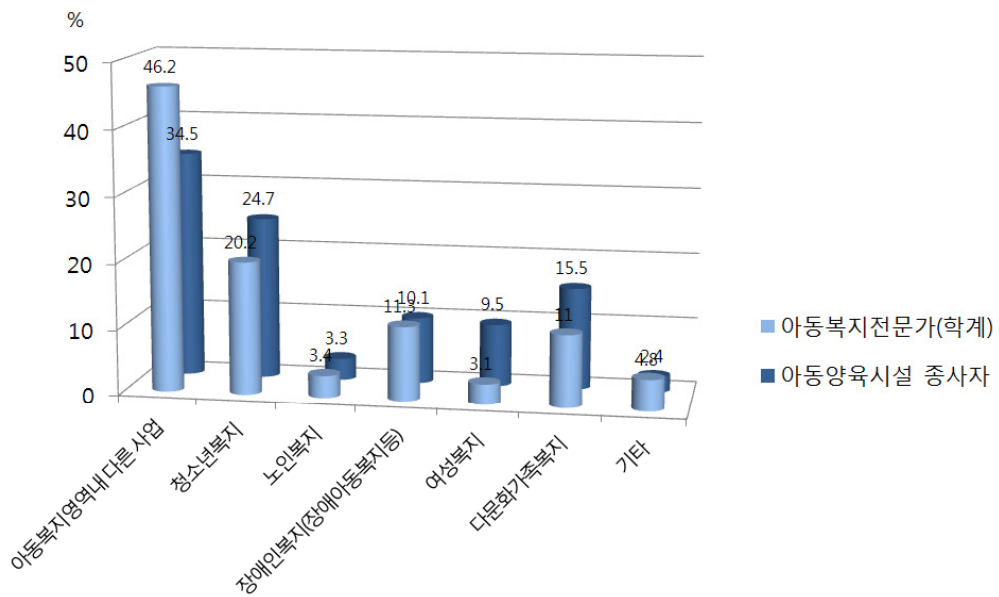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아동복지영역 내 다른 사업	40	6	3	135(1)
청소년복지	1	25	6	59(2)
노인복지	1	2	3	10(6)
장애인복지(장애아동복지 등)	3	9	6	33(3)
여성복지	0	2	5	9(7)
다문화가족복지	2	3	20	32(4)
기타	2	2	4	14(5)
합계	49	49	47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도 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아동복지영역 내 다른 사업’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였으며 ‘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차순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복지’, ‘여성복지’는 아동복지전문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순위로 확인되었다.

〈표 3-1-10〉 기능전환의 방향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아동복지영역 내 다른 사업	33	7	3	116(1)
청소년복지	10	22	9	83(2)
노인복지	1	2	4	11(6)
장애인복지(장애아동복지 등)	3	7	11	34(4)
여성복지	1	12	5	32(5)
다문화가족복지	7	5	21	52(3)
기타	1	1	3	8(7)
합계	56	56	56	

[그림 3-1-6] 기능전환의 방향에 대한 사회복지전문가(학계)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의견



3) 기능전환에 대한 전문가 서술형 의견

□ 기능전환은 불가피한 현실

1990년대 후반부터 부모가 없는 아동보다 위기가정의 아동 수가 증가하고, 저출산으로 아동의 수가 감소하며, 미혼모의 아동양육의 욕구와 권리주장이 증가하는 등 아동양육시설의 존립을 위협하는 많은 지표들이 있음.(학계전문가 a8)

아동 감소에 따른 기관의 기능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임.(현장전문가 a2)

사회 여건상 시설 보호대상아동 수의 감소는 필연적임. 오는 10여년 내에 상당수 시설에 많은 유휴공간이 생길 것임. 최소한의 필요한 공간 외에는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는 다른 종류의 사업에 투입할 수(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현장전문가 a9)

□ 기능전환영역

아동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기에 다른 인구대상 영역으로의 기능전환보다는 아동복지 영역 내에서의 기능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학계전문가 a1)

기존의 보호·양육뿐만 아니라 자립사업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 입양, 일시보호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현장전문가 b2)

아동양육시설에서 장기보호도 중요하지만, 일시·단기보호 기능을 통해 일정기간 보호하여 가정과 재결합을 돕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현장전문가 b2)

□ 필요한 인력보강

기능 전환 시 우수인력의 확보가 중요하기에 이들의 처우조건에 대한 지원강화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학계전문가 a1)

기능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 후 차근차근히 진행해야 할 것임.(학계전문가 b6)

□ 지역사회아동 이용기관으로의 전환

단순히 아동들을 시설 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동들, 특히 소외계층아동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학대아동, 장애아동, 심리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고 봄.(학계전문가 02)

지역사회 아동보호(방과 후 돌봄 등 포함)의 거점기관.(학계전문가 b5)

□ 법적 근거마련 필요

아동양육시설의 일부분을 치료시설 혹은 자립전담시설 등 지역성과 운영법인의 특성에 따라 기능전환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배려하고, 이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지원(근거마련)이 필요함.(학계전문가 a5)

□ 재정적 지원필요

기능전환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임.(학계전문가 b6)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됨.(현장전문가 a2)

소규모 문제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전문상담소, 아동가정지원사업 등은 예산이 문제지 우리가 효과적으로(복지인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분임들임.(현장전문가 a9)

□ 아동심리상담을 위한 전문시설 필요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전문화, 아동가정지원센터로 전환, 문제행동아동·청소년 치료시설 등의 전문화가 필요함.(학계전문가 a8)

시설아동은 입소를 경험하면서 가정해체, 부모와의 분리, 원치 않는 단체 생활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음. 따라서 정서적 치료와 상담을 병행한 운영이 필요함. 치료 시설의 기능이 전문적으로 세팅되어야 함.(현장전문가 a3)

□ 시설아동들의 경험에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이런 기능전환이 현재 시설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염려들이 먼저 됨. 또 다시 가정을 잃는다는 슬픔을 가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현장전문가 d8)

이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어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아동의 잠재력 계발에 힘써야 함. 아동 개별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현장전문가 b0)

새로운 방향으로 기능전환도 좋은 일이나 (시설아동들을 위한) 기존 사업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봄.(현장전문가 b8)

무조건적인 기능전환 보다는 아동양육시설 환경을 입소 아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입소아동의 생활여건과 지역사회 시선을 고려하여 기능전환 영역을 설정해야 할 것임.(공공전문가 d3)

□ 보호대상아동의 부모와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재는 보호대상아동이 거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부모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가정에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함.(현장전문가 b0)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기능전환

지역사회의 여타 생활환경과 조화롭고 통합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함.(학계전문가 c7)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용시설로서의 전환. 모든 양육시설을 한 방향으로 전환하기보다는 지역사회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능전환을 해야 함.(현장전문가 b7)

아동도서관, 놀이 공간 등을 지역아동에게 제공, 아동복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육성 필요. 지역인의 참여유지 : 지역아동보호, 상담 등의 기능.(공공전문가 c5)

5. 아동양육시설 운영 및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의견

1) 아동양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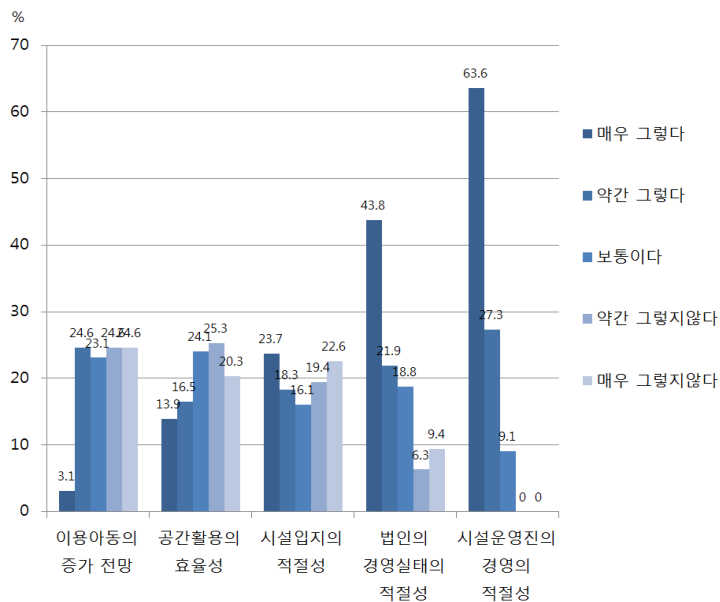
아동양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평가에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법인경영실태의 적절성’, ‘시설운영의 경영 적절성’, ‘시설입지의 적절성’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공간활용의 효율성’과 ‘이용아동의 증가 전망’에 대하여는 ‘보통’ 이하의 평가를 하였다.

〈표 3-1-11〉 시설운영현황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평가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용아동의 증가 전망	2(3.1)	16(24.6)	15(23.1)	16(24.6)	16(24.6)
공간활용의 효율성	11(13.9)	13(16.5)	19(24.1)	20(25.3)	16(20.3)
시설입지의 적절성	22(23.7)	17(18.3)	15(16.1)	18(19.4)	21(22.6)
법인의 경영실태의 적절성	14(43.8)	7(21.9)	6(18.8)	2(6.3)	3(9.4)
시설운영진의 경영의 적절성	7(63.6)	3(27.3)	1(9.1)	0(0.0)	0(0.0)

〔그림 3-1-7〕 시설운영현황에 대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평가



2) 아동복지전반에 대한 전문가 서술형 의견

□ 보호대상아동의 최선의 배치를 위한 시스템 마련되어야

아동의 배치, 입소과정부터 전문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확립(전문성 강화).(학계전문가 c6)

가정위탁보호의 장·단점 분석 없이 무조건적인 시설보호 탈피를 위해 가정위탁보호 우선 정책은 훗날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것임.(현장전문가 a7)

아동의 배치과정에서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전문사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보호·양육될 수 있도록 공공아동복지센터의 설립이 필요함.(현장전문가 b2)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공공전문가 a4)

□ 새로운 기능의 아동시설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21세기 복지패러다임에 부합되는 새로운 신기능 아동시설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1990년대 복지관 설립기에 준하는 아동시설 확충이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학계전문가 a1)

기능다각화를 원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아동인원수에 따른 재정지원 조정 필요함.(학계전문가 c8)

□ 보편적 아동복지서비스

보호대상아동에 국한된 아동시설정책에서 탈피하여 전체아동 또는 위험군 아동에 대한 이용시설/지역거점/전문적 서비스 제공 시설의 확충 필요.(학계전문가 a1)

전달체계 개편. 일반아동은 보편적 서비스 확대, 아동복지와 가족복지의 연결.(학계전문가 c1)

□ 아동복지발전계획 수립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011년 권고사항에 적합한 아동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아동복지를 실시하여야 함.(학계전문가 a3)

□ 종사자배치 기준 더 완화시키고 전문가 고용방안 마련되어야

현재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을 배치하는 것을 폐지시키고, 적정수의 전문가 고용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심리·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은 보호아동들은 그만큼 자신감 및 자기가치감이 높을 것이므로, 능력 있는 개인 및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으므로, 저출산의 대한민국에서 한 아동에게 반드시 넉넉하게 국가적 재원을 투자하여도 아깝지 않을 것임.(학계전문가 a4)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 근로시간 축소 및 3교대제 도입.(학계전문가 c9)

아동 개별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사회복지사 필요.(현장전문가 a3)

□ 아동자립을 위한 지원필요

아동자립을 위해서 노동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나 법적 지원이 필요함.(학계전문가 a5)

빈곤아동이 18세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 개발 및 자립지원금(장학금) 확보 필요.(현장전문가 b2)

자립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 필요. 아동보호의 목적은 결국 아동의 건전한 성장으로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인데, 의식주 공급에 초점, 정신 허약 등으로 퇴소 후 다시 사회복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공공전문가 a5)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아동복지의 중요성이 재해석되어야

지금까지 1)홀대해온 아동복지영역 2)지금까지 전시행정식으로 접근해 온 아동복지영역 3)지금까지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아동의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시행해 온 아동복지영역을 새롭게 구성하고 실천할 전문적인 정책, 전문적인 행정 그리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 할 수 있도록 「긴급대책위」를 통해서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됨.(학계전문가 b3)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시스템 마련되어야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구배치계획(permanency planning)’ 의무화.(학계전문가 b5)

□ 아동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지자체의 경우 양육시설보호를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선호하는 경우가 있으나 아동 중심의 정책 전환이 요구됨.(학계전문가 c3)

양육시설 아동의 안정적인 생활권 유지 필요(무조건적인 위탁가정화는 반대)하고 시설보호 아동의 욕구 조사 필요.(현장전문가 a8)

□ 시설보호아동 욕구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사정이 필요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 대책과 연계한 계획, 귀가조치, 입양, 가정위탁 등의 체계적인 사정 필요.(학계전문가 c8)

□ 예산지원체계 바뀌어야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 지원을 현실에 맞게.(현장전문가 a3)

주부식비 피복비등 직접경비는 아동 숫자기준으로 지원되어야하지만 시설운영비 같은 간접경비는 시설보호 아동과 시설 밖 방임되는 가정의 아동보호체계를 위해서도 시설 규모에 맞게 지원하는, 즉 이원화를 해야 시설보호아동 외 가정 내 방임아동들의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음.(현장전문가 a04)

정부 예산 지원 방식의 변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및 책임성 등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함.(학계전문가 c0)

3) 아동복지전반에 대한 종사자 서술형 의견

□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

(아동양육시설의)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의 인권개선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로 생각됨.(종사자 a1)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상담, 보호를 지원해 해주시고 종사자원들에 대한 처우, 복지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람. 특히 보수지급이 적절히(현 시

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함.(종사자 e1)

종사자 수가 증가했으면 좋겠음. 경제적인 지원이 더 필요함.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싶음.(종사자 c1)

□ 입소아동에 대한 전문적 심리상담 매우 필요해

아동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심리적 부분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담이 필요함 (특히, 학대아동).(종사자 a5)

아동양육시설에 심리치료 전문 인력 배치 필요(임상심리사).(종사자 b1)

□ 시설보호에 대해 지나치게 편협하지 않았으면

아동양육시설은 60년이 넘도록 한국에서 주요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중요한 것은 시설 내에서 어떻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지,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관한 것임. 시설 입소가 결정된 아이들은 이미 마음정서가 아플 대로 아픈 다음에 오게 되며, 이런 아이들을 받아주는 곳이 시설임. 시설의 기능과 필요성이 수축되는 것 같은 요즘이 안타까움. 서비스의 질과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함.(종사자 h2)

□ 시설입소아동의 자격(수급자)문제 완화시켜야

수급자가 아닌 아동 중 입소가 필요한 아동이 많으므로 일반 아동도 입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종사자 b1)

아동시설의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보다 시급한 것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보호를 받는 것임.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아동시설 입소가 가능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많이 있음. 이에 따른 정책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됨.(종사자 b3)

□ 시설입소에 대한 신중한 결정 내려져야

아동의 시설입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아동의 현 상황이나 예전 상황과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그런 내용들이 시설에도 잘 전달되어졌으면 함.(종사자 a3)

□ 시설아동 생활비 지원 확대되어야

아동의 생활비 지원에 있어 탄력적인 운영지원이 필요할 것 같음. 그리고 아동의 욕구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비가 지원되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직원(생활지도원)의 급여 지원이 2012년 현재 2009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음.(종사자 g5)

우선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함. 와·삭·주 해결만 하면 된다는 예전의 생각으로 아동을 양육한다는 것은 아동의 학교생활 및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함. 요즘 추세를 반영하여 아동의 욕구를 해소하여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이 증가되었으면 함.(종사자 h1)

6. 아동복지전문가 및 종사자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합의

아동양육시설의 수요전망은 아동인구의 감소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수요 감소로 장기적으로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와 기능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의 방향은 아동복지 영역 내 다른 사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른 영역으로의 기능전환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복지, 다문화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차순위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다기능화의 방향은 아동복지전문가, 아동양육시설종사자가 공통적으로 아동전문상담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동주간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등을 차순위로 유념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이는 아동양육시설의 입소아동들이 경험하는 빈곤, 위기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족갈등과 가족해체 등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

는 정서와 행동문제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이 단순 수용보호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동문제와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에 있어서 아동전문상담사업을 다기능화사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아동주간보호사업, 그룹홈 등의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2절 지역주민 사회복지 욕구조사

대전광역시 내 아동양육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주민들, 특히 오피니언 리더층으로 여길 수 있는 통·반장, 동 자원봉사 수행주민, 상가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만족도, 지역복지의 필요성, 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도 등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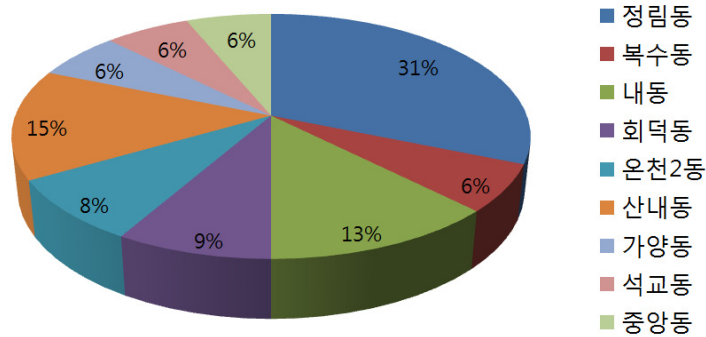
1. 일반적 특성

조사지역(행정동)에 따른 조사대상의 인원수는 정림동 150명, 복수동 30명, 내동 60명, 회덕동 40명, 온천2동 40명, 산내동 70명, 가양동 30명, 석교동 30명, 중앙동 30명 이었고, 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수, 동 인구 수, 해당지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할당표집 하였다.

〈표 3-2-1〉 주민욕구조사 지역별 조사대상인원수

조사지역(행정동)	조사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조사대상인원(명)	비율(%)
정림동	정림원, 돈보스교의집, 후생학원	150	31.3
복수동	대전혜생원	30	6.3
내동	시온보육원	60	12.5
회덕동	성우보육원	40	8.3
온천2동	천양원	40	8.3
산내동	성심보육원, 대전나자렛집	70	14.6
가양동	평화의마을	30	6.3
석교동	늘사랑아동센터	30	6.3
중앙동	대전자혜원	30	6.3
합계		480	100.0

[그림 3-2-1] 주민육구조사 지역별 조사대상인원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134명(27.9%), ‘여성’ 346명(72.1%), 연령은 ‘20대’가 4.0%, ‘30대’ 18.5%, ‘40대’ 31.9%, ‘50대’ 28.8%, ‘60대 이상’ 16.9%로 40~50대가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기타’를 제외하고, ‘서비스종사자’가 1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판매종사자(12.9%)’, ‘사무종사자(10.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7.7%)’, ‘단순노무종사자(6.5%)’, ‘관리자(4.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을 살펴본 결과, 가족 수 측면에서는 ‘1인 가족’ 5.6%, ‘2인 가족’ 17.5%, ‘3인 가족’ 23.0%, ‘4인 가족’ 37.8%, ‘5인 이상 가족’ 16.1%로 3~4인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청소년과 아동을 동반한 가족이 32.5%, 29.2%로 가장 많았고, 노인 동반가족이 22.3%, 장애인 동반가족이 6.5%, 동반가족이 없는 기타 가구도 47.5%로 나타났다.

〈표 3-2-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80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34	27.9	
	여성	346	72.1	
연령대	20대	19	4.0	
	30대	89	18.5	
	40대	153	31.9	
	50대	138	28.8	
	60대 이상	81	16.9	
직업	관리자	20	4.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7	7.7	
	사무종사자	49	10.2	
	서비스종사자	66	13.8	
	판매종사자	62	12.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6	1.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5	1.0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6	1.3	
	단순노무종사자	31	6.5	
	기타	198	41.3	
가족 구성원	가족 수	1인	27	5.6
		2인	84	17.5
		3인	110	23.0
		4인	181	37.8
		5인이상	77	16.1
	동반가족 (복수응답)	아동	140	29.2
		청소년	156	32.5
		장애인	31	6.5
		노인	107	22.3
		기타	228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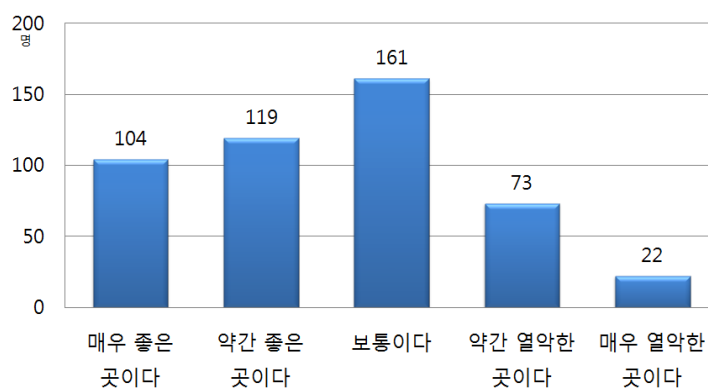
2. 지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지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의 살기 좋은 정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매우 좋은 곳이다’ 21.7%, ‘약간 살기 좋은 곳이다’ 24.8%, ‘보통이다’ 33.5%, ‘약간 열악한 곳이다’ 15.2%, ‘매우 열악한 곳이다’ 4.6%로, 보통수준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응답자가 80%에 이르는 다수로 나타났다.

〈표 3-2-3〉 지역의 살기 좋은 정도

	빈도	비율(%)
매우 좋은 곳이다	104	21.7
약간 좋은 곳이다	119	24.8
보통이다	161	33.5
약간 열악한 곳이다	73	15.2
매우 열악한 곳이다	22	4.6
합계	480	100.0

〔그림 3-2-2〕 지역의 살기 좋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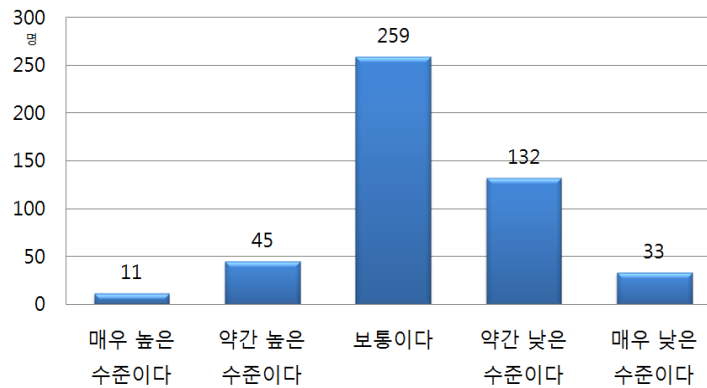
지역의 복지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매우 낮은 수준이다’ 6.9%, ‘약간 낮은 수준이다’ 27.5%, ‘보통이다’ 54.0%, ‘약간 높은 수준이다’ 9.4%, ‘매우 높은

수준이다’ 2.3%로서 보통수준에서 약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표 3-2-4〉 지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빈도	비율(%)
매우 낮은 수준이다	33	6.9
약간 낮은 수준이다	132	27.5
보통이다	259	54.0
약간 높은 수준이다	45	9.4
매우 높은 수준이다	11	2.3
합계	480	100.0

[그림 3-2-3] 지역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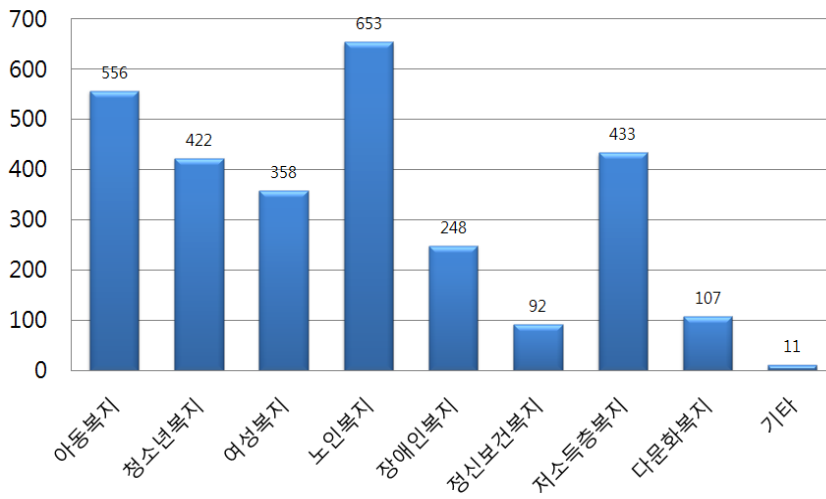


지역복지를 위한 우선순위에 관해 8가지 항목으로 살펴보니, 1순위는 ‘노인복지’, 2순위 ‘아동복지’, 3순위 ‘저소득층복지’로 나타났다. 그 외에 4순위 ‘청소년복지’, 5순위 ‘여성복지’, 6순위 ‘장애인복지’, 7순위 ‘다문화복지’, 8순위 ‘정신보건복지’ 순서로 정렬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5〉 지역의 복지 우선순위

복지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총점
아동복지	124	56	72	556(2)
청소년복지	64	81	68	422(4)
여성복지	48	78	58	358(5)
노인복지	126	106	63	653(1)
장애인복지	30	55	48	248(6)
정신보건복지	14	15	20	92(8)
저소득층복지	63	68	108	433(3)
다문화복지	10	19	39	107(7)
기타	1	2	4	11(9)
합계	480	480	480	

[그림 3-2-4] 지역의 복지 우선순위



지역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관한 5가지 항목에 대하여 대부분 보통수준에서 대체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복지시설의 부족문제는 ‘보통수준’ 52.9%, ‘대체로 심각’ 27.5%이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미비한 교육환경 역시 ‘보통수준’ 48.5%,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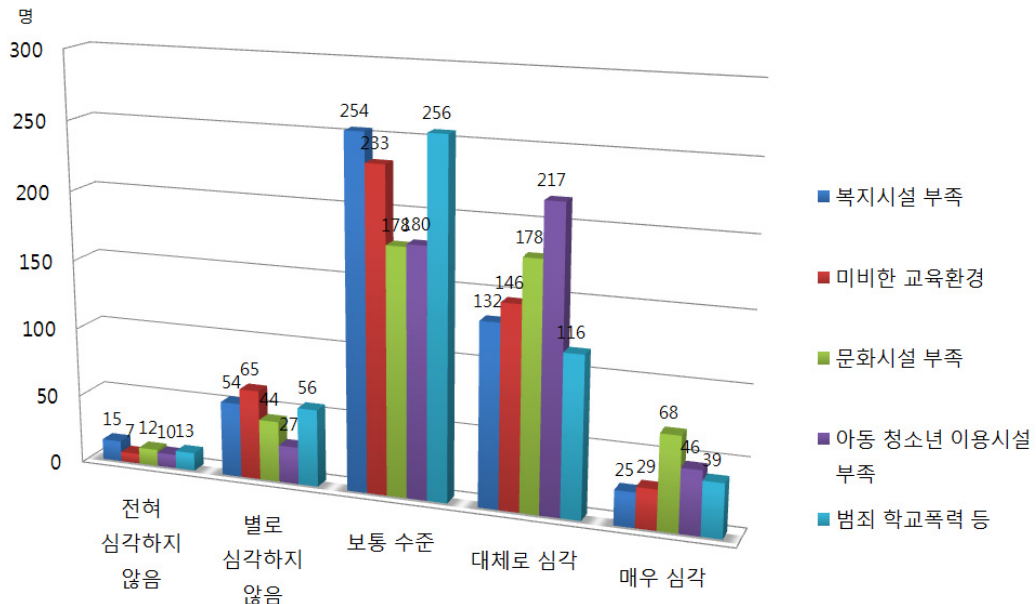
체로 심각' 30.4%로 복지시설의 부족문제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문화시설 부족은 '보통 수준'이 37.1%, '대체로 심각' 37.1%, 아동청소년이용시설 부족은 '대체로 심각' 45.2%, '보통수준' 37.5%, 범죄 및 학교폭력문제는 '보통수준' 53.3%, '대체로 심각' 24.2%로 응답하였다.

〈표 3-2-6〉 지역문제의 심각성 정도

단위 : 명(%)

	전혀 심각하지않음	별로 심각하지않음	보통 수준	대체로 심각	매우 심각	합계
복지시설 부족	15(3.1)	54(11.3)	254(52.9)	132(27.5)	25(5.2)	480(100.0)
미비한 교육환경	7(1.5)	65(13.5)	233(48.5)	146(30.4)	29(6.0)	480(100.0)
문화시설 부족	12(2.3)	44(9.2)	178(37.1)	178(37.1)	68(14.2)	480(100.0)
아동청소년이용시설 부족	10(2.1)	27(5.6)	180(37.5)	217(45.2)	46(9.6)	480(100.0)
범죄, 학교폭력 등	13(2.7)	56(11.7)	256(53.3)	116(24.2)	39(8.1)	480(100.0)

[그림 3-2-5] 지역문제의 심각성 정도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지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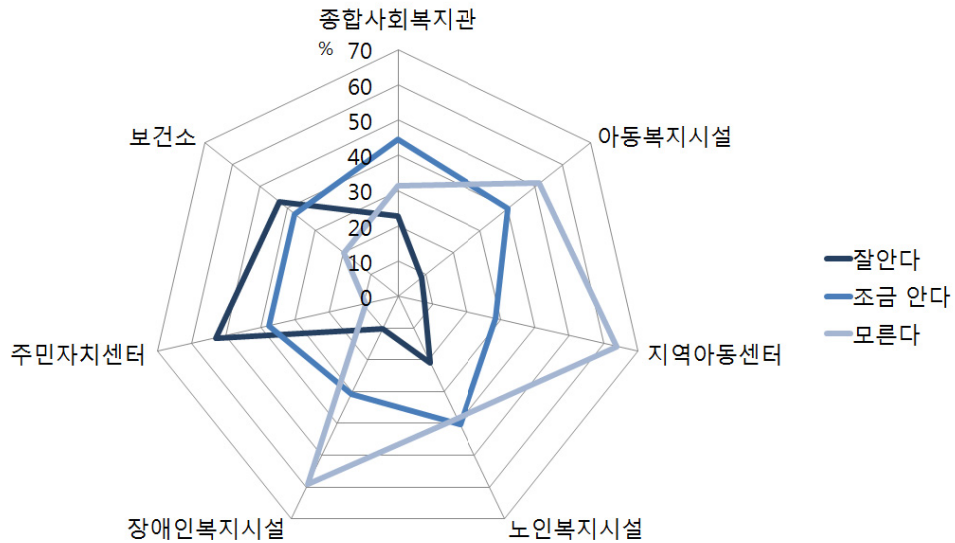
거주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에 대해 ‘잘 안다’가 각각 53.1%, 42.9%로 나타나며 가장 인지도 높은 시설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조금 안다’가 각각 44.4%, 40.4%의 응답률을 보이며 두 번째 인지도 높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모른다’가 각각 51.5%, 63.8%, 59.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보다 낮은 인지도가 확인되었다.

〈표 3-2-7〉 사회복지시설의 인지도

단위 : 명(%)

	잘 안다	조금 안다	모른다	합계
종합사회복지관	114(22.8)	213(44.4)	151(31.5)	478(100)
아동복지시설	41(8.5)	192(40.0)	247(51.5)	480(100)
지역아동센터	37(7.7)	137(28.5)	306(63.8)	480(100)
노인복지시설	101(21.0)	194(40.4)	185(38.5)	480(100)
장애인복지시설	49(10.2)	148(30.8)	283(59.0)	480(100)
주민자치센터	255(53.1)	180(37.5)	45(9.4)	480(100)
보건소	206(42.9)	180(37.5)	94(19.6)	480(100)

[그림 3-2-6] 사회복지시설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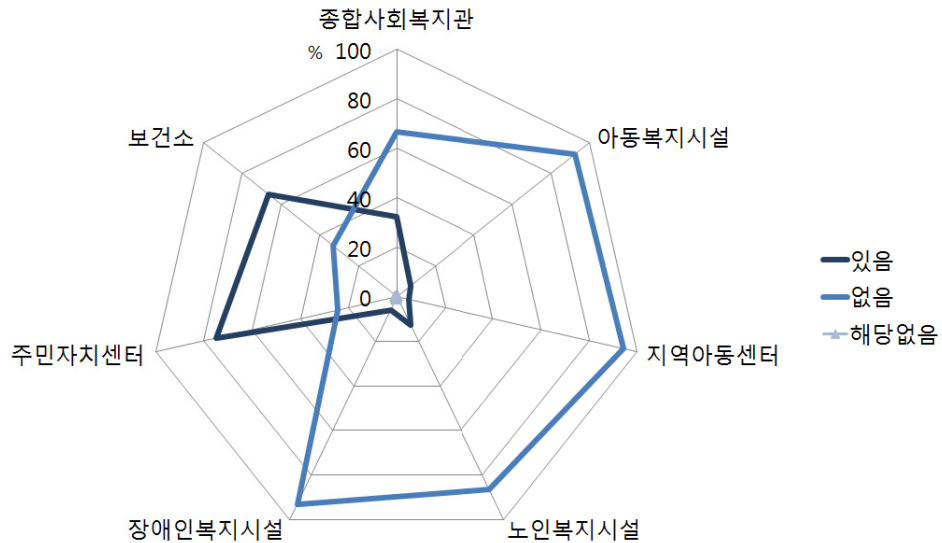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동양육시설’은 92.3%, ‘지역아동센터’는 94.4%, ‘노인복지시설’은 86.3%, ‘장애인복지시설’은 93.1%가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32.3%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자치센터’는 75.0%, ‘보건소’는 66.3%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소의 이용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8〉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경험

단위 : 명(%)

	있다	없다	해당없음	합계
종합사회복지관	155(32.3)	320(66.7)	5(1.0)	480(100.0)
아동복지시설	33(6.9)	443(92.3)	4(0.8)	480(100.0)
지역아동센터	24(5.0)	453(94.4)	3(0.6)	480(100.0)
노인복지시설	61(12.7)	414(86.3)	5(1.0)	480(100.0)
장애인복지시설	28(5.8)	447(93.1)	5(1.0)	480(100.0)
주민자치센터	360(75.0)	117(24.4)	3(0.6)	480(100.0)
보건소	318(66.3)	158(32.9)	4(0.8)	480(100.0)

[그림 3-2-7]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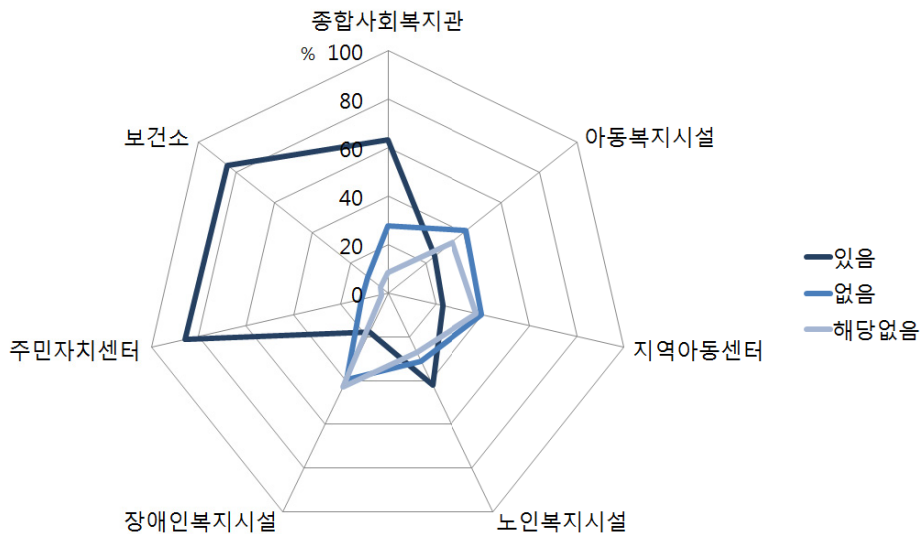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동양육시설’은 41.5%, ‘지역아동센터’는 39.8%, ‘장애인복지시설’은 39.4%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주민자치센터’는 85.6%, ‘보건소’ 84.8%, ‘종합사회복지관’ 63.5%, ‘노인복지시설’ 41.9% 정도가 이용의향이 ‘있음’으로 응답하였다.

〈표 3-2-9〉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의향

	있다	없다	해당없음	합계
종합복지관	305(63.5)	134(27.9)	41(8.5)	480(100.0)
아동복지시설	118(24.6)	199(41.5)	163(33.9)	480(100.0)
지역아동센터	110(22.9)	191(39.8)	179(37.3)	480(100.0)
노인복지시설	201(41.9)	149(31.0)	130(27.0)	480(100.0)
장애인복지시설	85(17.7)	189(39.4)	206(42.9)	480(100.0)
주민자치센터	411(85.6)	55(11.5)	14(2.9)	480(100.0)
보건소	407(84.8)	52(10.8)	21(4.3)	480(100.0)

[그림 3-2-8]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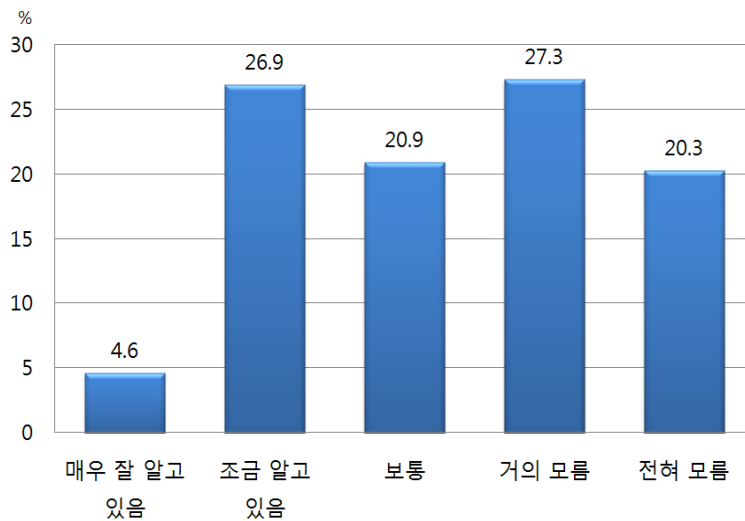


연구대상기관인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는 ‘매우 잘 알고 있음’ 4.6%, ‘조금 알고 있음’ 26.9%, ‘보통’ 20.9%, ‘거의 모름’ 27.3%, ‘전혀 모름’ 20.3%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3-2-10〉 지역주민의 아동양육시설 인지도

	빈도	비율(%)
매우 잘 알고 있음	22	4.6
조금 알고 있음	129	26.9
보통	100	20.9
거의 모름	131	27.3
전혀 모름	97	20.3
합계	479	100.0

〔그림 3-2-9〕 지역주민의 아동양육시설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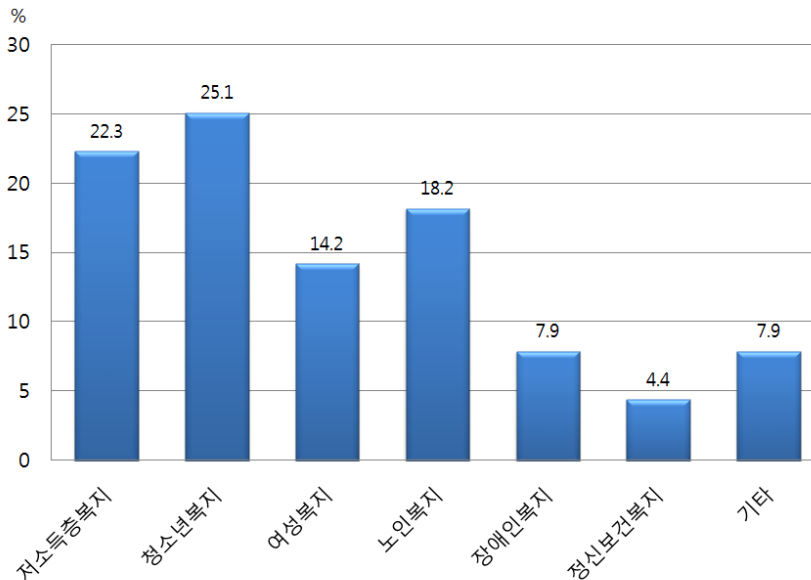
거주지역의 아동양육시설이 다른 사업을 할 경우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청소년 복지’ 25.0%, ‘저소득층복지’ 22.3%, ‘노인복지’ 18.1%, ‘여성복지’ 14.2% 등의 순서로 응답하여 관심을 나타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이러한 조사결과는 아동복지전문가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가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의 방향으로 아동복지영역 내 사업, 청소년복지를 우선순위로 보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3-2-11〉 아동양육시설의 대안사업

	빈도	비율(%)
저소득층복지	107	22.3
청소년복지	120	25.1
여성복지	68	14.2
노인복지	87	18.2
장애인복지	38	7.9
정신보건복지	21	4.4
기타	39	7.9
합계	480	100

[그림 3-2-10] 아동양육시설의 대안사업



4. 지역주민 사회복지욕구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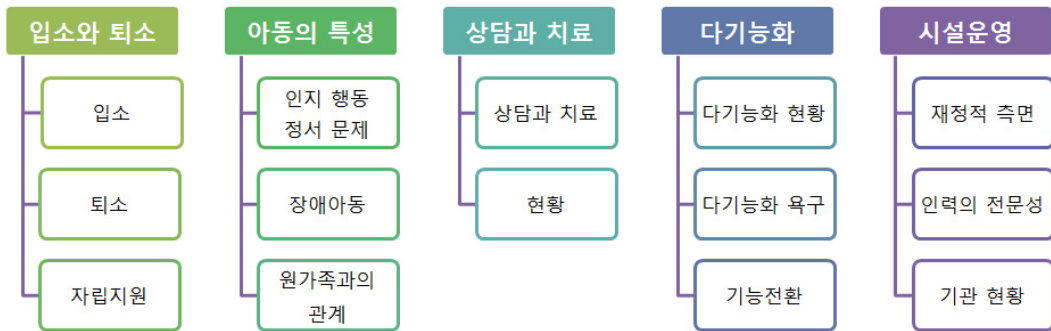
지역주민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동복지전문가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가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의 방향으로 아동복지영역 내 사업, 청소년복지, 저소득층복지를 우선순위로 보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다른 복지시설들과 비교해도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동양육시설이 지역사회와 통합되어지지 않고 격리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는 지역사회주민과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개방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지역사회에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교육, 보건,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제3절 대전광역시 내 아동양육시설 시설장 및 관리자 심층면접 조사결과

대전광역시 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현황파악을 위해 2012년 8월 동안 12개 시설장(또는 관리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아동복지일반에서 시설운영현황 및 사업, 다기능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각 조사영역별 질의맥락에 따라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그림 3-3-1] 아동양육시설장 및 관리자 심층면접 구조화 내용



1. 입소와 퇴소

1) 입소

A 기관

- 시설의 이용률은 최근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 영아보호를 하지 않았으나 영아보호 추가계획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아에게 보호를 제공할 계획이 있다. (대전광역시 관내 영아보호담당시설은 늘사랑아동센터였으나, 영아입소의 증가와 영육아시설의 통합으로 일부 타 시설에서도 영아가 입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B 기관

- 시설에 의뢰되는 아동이 급격히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시설에 비교하여,

여전히 배치되는 아동이 많아 다기능화로의 변화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덜 급박하다고 볼 수 있다.

D 기관

- 40~45명 정도의 인원이 가족적인 분위기 형성과 결속을 위해 가장 적절한 인원으로 보여진다.

F 기관

- 숙사동은 입소아동의 감소로 현재 50% 정도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아동을 위하는 ‘아동배치의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G 기관

- 40~50명이 되어야 시설운영이 원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는 아동 30명 이하로 사무국장 인력 배치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I 기관

- 현재 장애아동이 입소하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아동의 경우는 국내입양이 안되어 시설에 입소되었다.
-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구청에서 의뢰를 하나, 간혹 구청에서 타 지역의 타 시설로 배치하기도 한다. 현재는 인원 정체중이다. 추가의 아동을 보호할 의사와 여력이 있으나, 구청에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구청의 재정이 부족하다고 본다.

J 기관

- 구청에서 위탁 시 가정해체 아동도 입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청 위탁 아동의 수가 적은 편이고, 타 지역 아동도 입소하고 하고 있다. 퇴소아동의 수도 적은 상황이다.
- 대전광역시에 위치하지만, 입소아동은 전국에서 의뢰받은 아동들이 입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고위험군 보호대상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관의 특성이고 비전이다.

K 기관

- 시설아동이 감소되는 이유는 보호대상아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위탁과 재가복지로 아동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L 기관

- 입소아동은 법인과 관련기관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고위험보호대상청소년들이 전국에서 의뢰되어 입소하고 있다.
- 최근에 입소아동이 급감소한 이유는 현재 구청과 시설인허가 문제로 행정지원과 마찰이 있고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2) 퇴소**H 기관**

- 종합아동복지센터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다. 공공이 우선이고 차선으로 민간 차원이라고 본다. 종합아동복지센터의 기능은 사정, 배치, 퇴소 상담 등이 될 것 같다.

3) 자립지원**B 기관**

- 생활 아동 중 경증 장애아동들에 대한 직업교육의 방법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다. 이들이 진로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의지가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이다.

D 기관

- 아동자립지원사업 수행의 의지가 있다. 자립지원은 지역 협회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아동자립지원사업은 현재 충북 오송에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설아동 자립지원은 지역의 아동시설협회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 기관

- 지역사회통합 적응 관련 자립전담요원 ‘자립관’과 2명 아동 ‘LH주택전세대출지원’ 받았

다.

J 기관

- 자립관은 지원이 없다.
-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누만들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판매하기도 한다.
- 지적능력이 부족한 지적경계선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절실하다. 현재의 제도로는 경계선 아동이 갈 곳이 없다. 4명의 입소아동이 있는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설과 자립 프로그램, 자립공간이 필요하다.

L기관

- 주말 프로그램으로 캠핑을 하는데, 이는 자립능력 배양과 기본경제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후원에만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경제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정된 예산으로 장을 봐서 요리하는 등의 연습을 한다.
-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경제교육이 중요하다. 용돈관리와 경제교육을 일상화해서, 월요일 밤에 용돈을 주고, 본인이 필요한 물품 구입 시 보태도록 한다. 현재 자신의 자전거 등을 사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2. 아동의 특성

1) 인지 · 행동 · 정서 문제

C 기관

- 최근 문제행동과 정서 등의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입소가 증가하고 있다. 입소아동의 95%는 연고자가 있는 아동인데, 가족 역기능 문제로 입소하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입소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 시설아동들은 문제를 보자기로 덮어놓는 것과 같다. 아동의 행동 정서적 문제와 아동이 성장함에 따른 각종 양육 상의 욕구와 필요들이 주요 문제가 될 것이다.

2) 장애아동

A 기관

- 지능지수가 경계선인 아동의 자립생활시설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러한 아동이 갈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B 기관

-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생활과 그룹홈 시범사업에 대한 시도를 하였다. 자립을 위한 마을기업으로의 준비 등 다기능화의 추진 역량과 에너지가 높다.
- 장애인아동자립시설, 그룹홈, 사업장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 장애아동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추후에 기관 정문 옆에 1평 규모의 카페를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숙사생활에서 장애아동 통합생활을 하고 있다.
- 현재 장애아동이 13명이며, 주로 3급 정도의 경증(지체장애 또는 경계선 아동)이다. 영아도 있다.

I 기관

- 장애아동이 2명이며 미혼모가 친권을 포기하여 입소하였다. 복합장애 1명, 다운증후군 1명인데, 장애아동에 대한 비용에 대해 장애수당만 있다. 그러나 양육하기에는 의료비 발생 등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해서, 현재 후원을 모금하고 있다.
- 현재 장애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른 1)장애인 시설 또는 장애인 영유아 시설, 2)통합시설(다양한 아동이 입소 가능하도록) 등으로의 변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재는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으므로, 장애아동, 장애영유아 시설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
- 장애아동시설 추가 시 건물에 대한 증개축과 시설변경이 필요하다.
- 영유아 때는 장애아동 통합보육이 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전국 10~12개 장애영유아 시설이 있다.

J 기관

- 지적능력이 부족한 지적경계선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이 절실하다. 현재의 제도로는 경계선 아동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원가족과의 관계

A 기관

-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차상위계층 보호자의 아동은 보호자가 데려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우리 기관의 경우 8명의 입소아동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바로 이러한 정책으로 아동양육시설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다.

B 기관

- 가정적응훈련으로 후원자 가정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적응훈련 + 아동결연의 형태이다. 가족행사와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방학 때에는 가족캠ป์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가족결연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후원자 단체와는 연계활동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후원업체를 개발하고 있다.

C 기관

- 대부분의 아동들이 연고가 있다. 그래서 부모가 잠시 데려가려 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또는 가족 역기능으로 상처받은 아동들이 함께 가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 야간에 술에 취한 부모가 찾아와서 소동을 피우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 아동들과 여성보육사들만 있어 위협감을 느꼈다.

D 기관

- 부모교육 의무화와 제도와 필요하다고 본다. 시설에 아동을 맡길 때 부모교육 의무조항 필요하다.
- 수용아동의 가정복귀를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H 기관

- 시설아동이 기초수급권자 위주이므로 전문상담과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3. 상담과 치료**B 기관**

- 심리치료와 상담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 시점이며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 아동양육시설이 ‘양육 + 상담 + 자립’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C 기관

- 다기능사업으로는 아동상담사업이 필요하며, 전문적 아동심리치료사 1인씩 배치되어야 한다.
- 직원 역량강화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 기존의 직원에 대한 재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심리치료전문가의 추가배치가 필요하다.

D 기관

- 시설 아동에 대해 기존의 건강검진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 건강 스크리닝을 하는 필수 의료기관 선정’이 필요하다.
- 현재 아동자립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아동에 대한 상담은 학교와 연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아동상담센터의 기능 수행에 대한 의지가 있다. 입소 아동은 대체로 부모의 이혼, 방임, 유기, 학대 등의 이유로 입소하고 있다. 현재 27%의 아동은 무연고이고 그 외는 연고가 있는 아동이다. 이 아동들은 결손가정의 아동들로 부모와 만나기도 하고, 가정복귀 하는 아동도 있다. 아동입소와 복귀를 위한 전문적 사정과 도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 기관

- 현재 상담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심리치료시설로 발전·운영하고자 하는 적극적

인 의향이 있다.

F 기관

-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 가능성에 대해 찬성한다. 또한 아동상담센터 등의 가능성에 관심이 많다.
- 시설아동 중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사회에서의 보호,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 대전지역에 아동전문병원이 없다. 아동전문병원 설립이 필요하다.

H 기관

- 아동상담은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동양육시설은 가정과 학교의 부적응 아동이 입소하기에, 아동이 가진 정서적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 전문치료시설을 위하여 전문적 수준의 치료전문가의 배치 및 영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여 + 시설아동 + 부모교육 등)

I 기관

- 양육 기능과 아울러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 내부의 심리치료 전담직원을 1명 배치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치료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사춘기 아동의 다툼과 폭행 등 양육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아동을 위한 상담과 치료 및 심리 정서 상담이 필요하다.
- 치료의 꾸준한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 치료의 효과가 없다.

J 기관

- 24시간 보호기관 보호시설이 장점이다. 입소 아동 중 일부가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데, 미술치료 1명, 언어치료 4명, 성모병원 아동상담클리닉 1명이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 외부전문가와 연계 활동하고 있다.
-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서치료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어 생활환경의 생활지도사와 시설의 마인도도 중요하다.

L 기관

- 입소아동들은 치유와 상담,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다. 따라서 기관에 상담원과 임상심리사 배정이 절실하다.
- 보호치료센터는 양육시설에서 나아가 거리의 청소년들이 다음 단계로 가는 기관인 셈이다. 예방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심리상담사와 치료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현재 입소 아동·청소년 치료가 3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후원과 자원봉사의 형태이다. 2명이 상담치료를 받고 있고, 중증은 언어치료도 받고 있다.
- 아동들의 진로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
- 문제청소년은 오래 어울리던 집단과 떨어져서 생활환경이 바뀌어야만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특성이 있다.

4. 다기능화의 요구

1) 다기능화 현황

00 기관

- 목적사업 외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로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지역아동센터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서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 때문에 별도 출입구 공사를 시행하였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인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년 정도의 자부담 규정 때문에 현재는 공부방으로 운영 중이다.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의지는 있으나 예산 등 규정(연간 4000만원, 인원 20명)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 목적사업 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1994년 이후 00어린이집을 아동양육시설의 목적사업 외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

00 기관

- 시설 아동 중 5명이 교사 1명과 함께 시설인근의 동아아파트에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의 그룹홈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건비 지원이 1명 이어서 인력교대가 매우 어렵다. 현재 이 시범사업은 전국의 다수 시범기관에서 대부분 반납한 상황이다.

- 인근의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아동보호센터와 연계 활동하고 있다.

00 기관

- 현재는 목적사업 외 타 기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 시설의 다기능화는 시대적 변화이며 변화에 대한 준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활교사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

00 기관

- 현재 주차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자체주차공간이 있으므로 시설 내 주차공간 활용은 미비한 편이다.

00 기관

-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 상담시설 ‘문제행동 거점시설’ 지정받아 운영 준비 중이다.

00 기관

- 법인에서 푸드뱅크 사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00 기관

- 도서실과 컴퓨터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으며, 입소 아동들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용하고 있다.
- 공간의 부족으로 공간이 필요한 추가 다기능화 사업은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시설의 특색과 장점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아동상담의 강점을 지닌 사회복지사가 다수 있다. 프로그램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00 기관

- 지역사회에 도서관 개방,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지원은 없는 상태이다.

00 기관

- 운동장이 넓고 오래 되었지만 놀이터도 있고, 아동들을 위한 넓은 공간은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공간이 남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입소아동이 줄어듦에 따라 공간이 남기 보다는 활동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유희공간은 아이들의 활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 규모화 보다 지역사회 연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00 기관

- 이전에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를 수행하였다.
- 주말에 공부방 활용(안)도 가능하고, 지역사회 이용공간으로 가능하다.

00 기관

- 현재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장 개방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아동의 안전이 우려된다. 야간에 최소 근무인력이 있는 경우 차량 통제의 어려움이 있다. 불특정 차량들이 진출입 하는 경우 소음 및 불빛, 아동들의 숙면과 학업에 지장이 크다.

2) 다기능화 욕구**A 기관**

- 다기능화 추진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질의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
예) 입소아동의 감소 시 유희 인력을 다기능화 사업에 배치하는 방안→ 현행 법이나 지침 상으로는 방안 부재하다.
- 아동감소로 인한 인력을 다기능화 추진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B 기관

- 다기능 아동복지시설로서 아동복지센터가 설립된다면 지역사회 참여와 연계의 의지 있다. 법인 내 기관의 지역복지팀과도 인적 물적 자원의 연계와 활용 가능성 매우 높다.

F 기관

- 대전광역시에서 다기능 아동복지센터 설치 시 유치 희망한다.

- 넓은 유휴공간이 있어 추가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H 기관

- 기능전환과 다기능화의 필요성은 느끼나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I 기관

- 복합 다기능 시설화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한편 기존시설을 축소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시 건물에 대한 증개축과 시설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J 기관

- 상담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크다.

K 기관

- 여건이 조성되면 타 기능 수행 의사 있다.
- 대전광역시는 중앙아동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동의한다.

L 기관

- 추가 타 기능 수행 가능성은 낮다. 아동양육시설에서 기능을 다각화하거나 기능전환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이유로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현재 인력과 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기능전환이나 다각화는 무의미하다. 아동양육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충실하여 시설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3) 기능전환

A 기관

- 공간활용이 일차적인 문제이며 다른 기능의 사업수행의 의지는 있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공간이 없다.
- 다문화가족복지사업에 대한 의향도 있다.

-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역복지욕구에 대응할 의지가 있으며, 지역사회가 원한다면 어떤 기능이라도 수행할 의지가 있다(장애인, 노인복지 등 어떠한 복합 기능이라도 환영함).

5. 시설운영

1) 재정적 측면

A 기관

-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다.
- 2011년 인건비가 2009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2012년은 보건복지부 기준의 95%이며 기존의 특별수당을 포함시킨 것으로, 내용은 변화 적고 항목만 변화된 것이다.

B 기관

- 그룹홈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인건비 지원이 1인이어서 인력의 교대가 매우 어렵다. 적절한 인력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범사업이 기대한 효과를 가져오기란 어렵다.
- 현재의 효과적인 다기능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C 기관

- 다기능화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 현시설의 상황과 지역과 연계한 다기능화를 정부가 지원하기를 바란다. 아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설에서 보육과 보호가 우선이며, 보육교사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
-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하드웨어만 고치려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를 보강해야 한다. 직원들의 초임이 2000만원 이하이고 3년 경력자 정도가 되어야 연봉이 2000만원을 상회하게 된다. 종사자의 급여가 2012년 현재 2009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G 기관

- 시설직원 인건비의 경우 2년 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K 기관

-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가 국고지원일 때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지방이양이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특별수당 없애고 급여수준 조정을 간신히 하고 있다(실수령액은 감소되었음). 급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 피해는 종사자들이 안고 있는 상황이다.
- 시설관리비는 기관의 시설규모별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 시설장의 경우 30~40년 근무하고도 3천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상황이다. 시설장은 근무기간 동안 사택에서 거주하다가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갈 곳이 없게 되므로, 설립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 재정적 지원이 없을 때에는 타 기능으로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다기능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없다.

2) 인력 측면

A 기관

- 다기능화 사업에 인력의 배치이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또는 지침에 명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입소아동 감소 시 다기능 사업으로 인력배치가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으로...
- 현재의 운영지침으로는 배치인력이 퇴직하면 재충원이 안 되는 제도이다. 시설아동 감소 후 1년이면 인원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
- 아동상담사 배치가 매우 필요하다. 종사자 배치기준은 있으나, 인건비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타 시도(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인력을 배치해주고 있다.
- 아동상담요원이 배치되어 있다면 상담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동복지지침상 아동상담요원은 명기된 내용이므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B 기관

- 직원의 2교대 근무(24시간 교대)로 인원이 부족하며 근무조건이 어렵다. 아동 수 대비

생활교사 수가 적게 배치되어 있다. 구청에서의 인건비 때문일 것이다.

C 기관

- 아동상담사업을 추가로 수행하기 위한 의지는 있다. 하지만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력과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D 기관

- 시설의 경우 아동 수에 상관없이 사무국장이 필요하며, 30명 이하 시설에도 사무국장은 필요하다.

G 기관

- 프로그램과 자원개발, 후원연계 등을 수행할 만한 사회복지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I 기관

- 최근 영유아아동이 입소하였는데, 영유아는 보호의 손길이 많이 가고 있다. 인건비의 추가부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 종사자의 근무와 처우기준이 열악하다. 종사자 근무시간은 24시간 교대이다.

K 기관

- 인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노인과 장애인은 3교대인데 반하여, 아동시설은 2교대이다.
- 정확한 법적 받침이 필요하다.
- 현재 급여기준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2009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시설종사자의 인력난 및 처우개선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다.

제4장 결 론

제1절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정책적 함의



1) 대전광역시 관내 아동양육시설의 감소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아동양육시설의 정원 대비 배치아동의 감소 추세로 아동양육시설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호대상아동 수요 감소를 감안하여 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하여 향후 5년간 12개 시설을 9개 시설로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능전환을 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충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역 간 보호대상아동 수요와 배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제시 필요

대전광역시 관내 아동양육시설의 지역 간 배치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아동양육시설 이용률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서구의 경우 사회 환경과 제반 여건의 변화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이에 서구지역의 3개 아동양육시설(정림원, 시온보육원, 돈보스코의집)은 30% 정도의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다수 시설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서구는 타 구에 비하여 배치시설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구 지역 아동양육시설 일부의 기능을 전환하여 아동양육사업이 아닌 장애아동시설 등 타 분야의 사업으로 기능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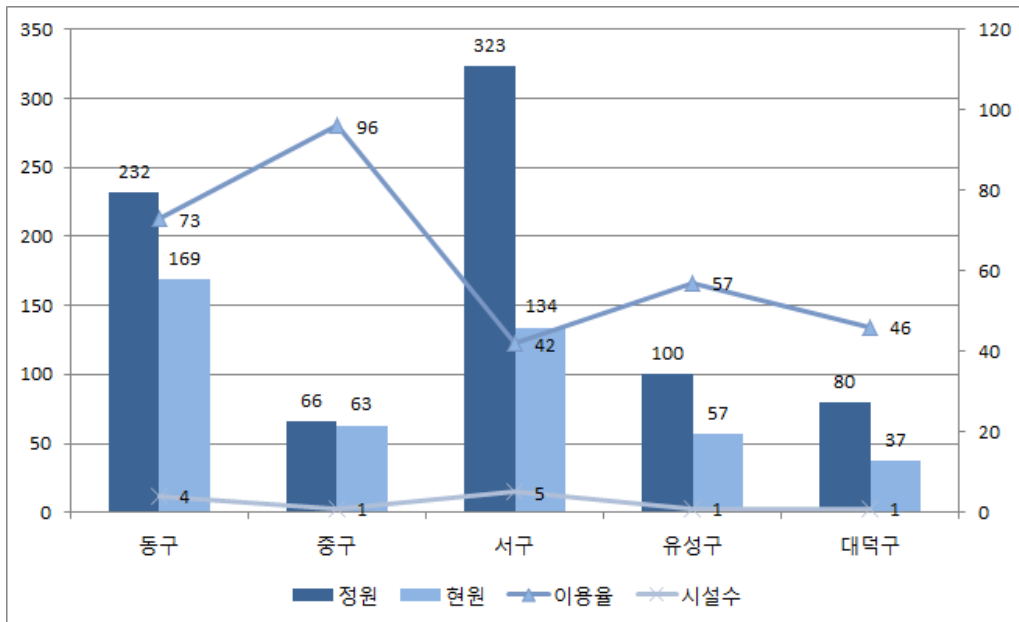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 시에는 해당 시설의 보호아동을 타 구의 아동양육시설로 전원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아동복지시설의 기능전환 이전에도 필요할 경우 구청 아동정책 담당자 간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구청 간 아동배치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1-1〉 아동양육시설 구별 아동배치 현황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합계
시설 수	4	1	5	1	1	12
배치 정원	232	66	323	100	80	801
현 인원	169	63	134	57	37	460
이용률(%)	72.8	95.5	41.5	57.0	46.3	57.4

주 : 2012. 12월말 기준.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그림 4-1-1]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현황(구별)



3)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모델 제시 필요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는 시설이 기존의 단순아동보호기능을 넘어 아동양육시설의 환경과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 입소되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가 있는 위기가정 또는 해체가정의 아동들이어서 가정환경의 결함과 변화로 인한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은 이들 아동을 상담하고 문제를 치료하는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기관에 전문상담원 배치가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 여건이 쉽지 않다면 적어도 구 단위에서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아동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 사업을 통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 사업은 아동상담과 치료, 교육, 보건, 건강 등 통합적인 아동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통하여 숙련된 아동복지전문가의 개입과 사례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다기능화 사업은 전문 인력과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하여 모범적인 시설 다기능화의 모델을 제시하고 점차적으로 관내 다른 아동시설에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기능화 사업은 이미 서울특별시 등 타 시도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므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다기능화 시도들을 벤치마킹하고 대전광역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을 구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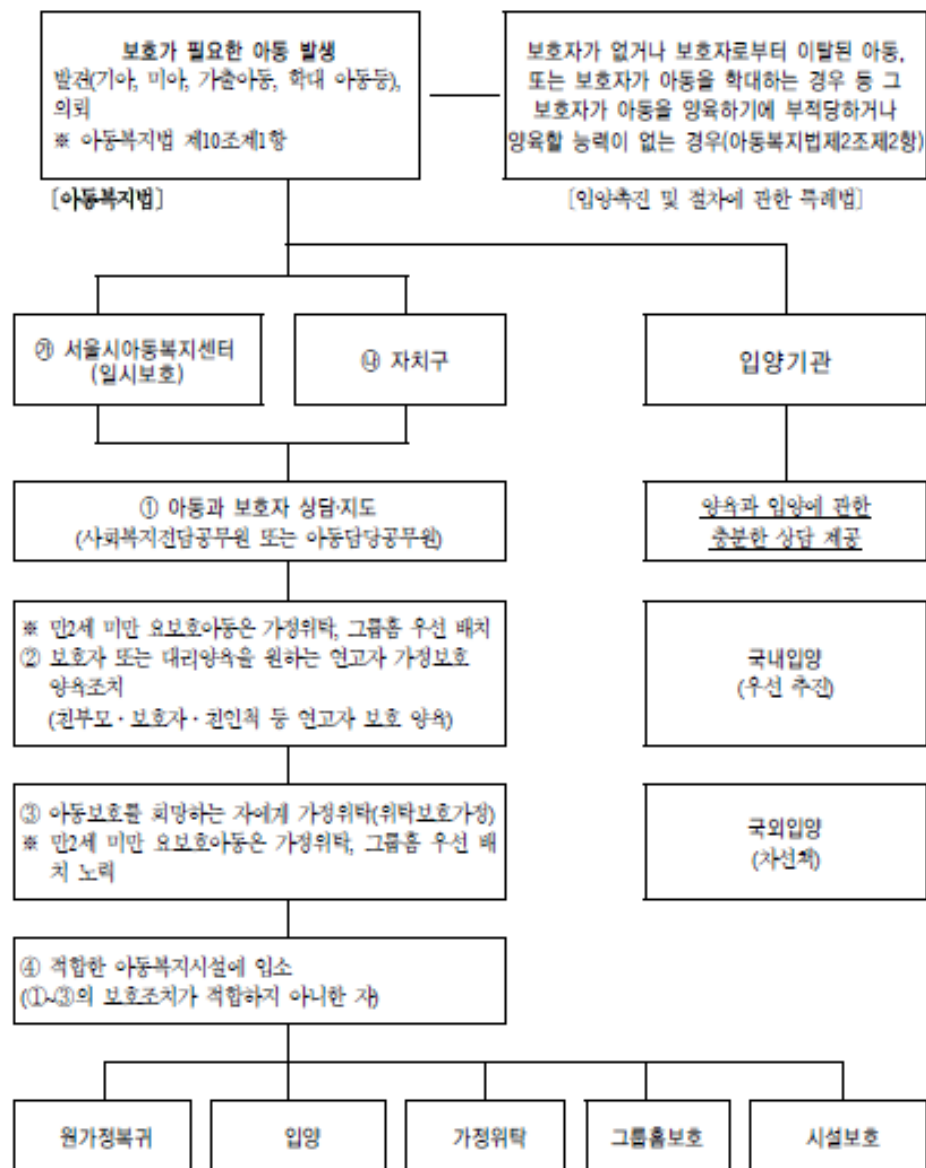
4) 보호아동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공공 아동복지전달체계의 구축 필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서 아동의 욕구와 문제를 체계적으로 사정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초기 대응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에는 아직 이러한 시스템이 없다. 이제까지는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매년 400명 이상 새롭게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 외 배치는 각 구청의 아동담당공무원과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초기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그림 2-2-6 참조),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학대아동에 대하여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센터가 개소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보호아동의 초기대응에서 배치 및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입시스템을 위해 공공차원의 아동복지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4-1-2]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의 보호아동 업무처리 흐름도



2. 12개 아동양육시설의 평가

최근 수년간 아동인구의 감소추세와 보호아동배치가 시설보호 보다는 가정위탁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를 강조하는 정책기조 등의 영향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이용률이 정원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전광역시 5개 구 아동양육시설 간 정원대비 이용률의 구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시설에 배치되어 생활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 보호대상아동들은 위기가정의 문제와 가정해체로 인한 충격과 상처를 경험함으로써 인지,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아동양육시설의 인력구성과 재정여건으로는 변화하는 아동양육 시설의 요구에 대응하는데 많은 제약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시설 운영책임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일부 아동양육시설에 일반아동과 장애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장애아동들에 대하여는 장애아동 전용시설에서 보호받게 함으로써 이들이 갖고 있는 장애특성에 따라 특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일부 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기능화사업의 수준은 일반아동주간보호사업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 외에도 푸드뱅크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주차장 개방, 도서실 개방 등 매우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시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시설장의 문제의식에 따른 변화의지가 더해져야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아동복지전문가, 실무자들의 FGI 조사결과와 지역사회주민의 욕구조사 결과는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와 기능전환의 방향으로 아동보호라는 목적사업 외에 아동복지사업 내의 다른 사업을 우선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등의 분야가 기능전환의 차순위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다기능화의 방향은 목적사업인 아동양육사업 외에 다른 아동복지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의 종합아동복지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다기능화 사업 중 아동상담치료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아동양육시설의 운영책임자들과 실무자들은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다기능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인력과 재정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어려우므로 시당국을 비롯한 외부의 인력 및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 시범사업모델을 개발하여 공모에 의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기능화에 대한 개별 아동양육시설 운영책임자와 직원들의 대응능력과 태도에 편차가 있으므로 다기능화 사업추진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능력을 가진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점차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아동양육시설에서 밝힌 다기능화 및 기능전환 의지를 정리해보면,

○ “가”기관은 아동상담치료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음. 다기능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관건물의 증개축이 필요하며 유휴 공간 확보 시에 아동상담 치료사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후면의 녹지공간을 개발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복지타운을 운영할 수 있음.

○ “나”기관은 현재의 건축물이 학교시설로 건축된 것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 소숙사 형태의 시설로 개축하고 아동양육사업을 포함한 다기능화사업에 적합한 시설로 구조 변경함이 필요함.

○ “다”기관은 아동상담 치료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음.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기능전환하는 타 지역 시설의 아동을 수용하고 다기능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라”기관은 장애아동 보호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아동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아동 어린이집 또는 장애아동 치료센터 등으로 기능전환을 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마”기관은 지역사회와 다소 거리가 떨어진 자연녹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밀접한 근접성이 요구되는 다기능화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애로점이 있으며,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그룹홈 등 별개의 다기능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바”기관과 “사”기관은 각각 보호처분을 받은 남자, 여자 위기청소년을 위한 아동청소년 시설로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다기능화 보다는 기존의 사업방향을 전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 방향

1) 아동상담치료 기능 강화를 통한 보호아동의 건전육성

다수의 아동양육시설이 공통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다기능화의 일차적인 사업의 대상은 아동 상담치료 분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다기능화의 사업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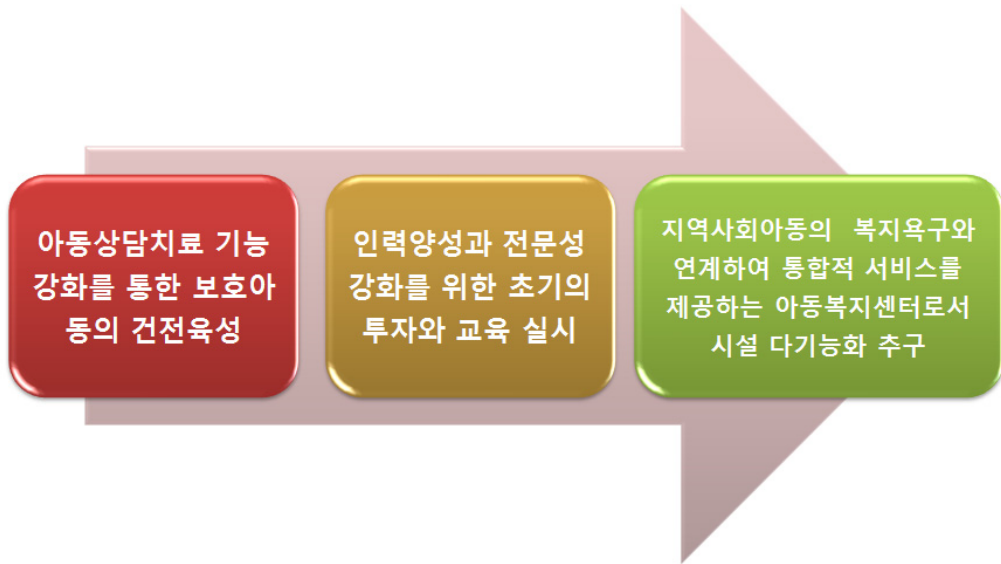
2) 지역사회아동의 복지욕구와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하는 아동복지센터로서 시설 다기능화 추구

현재의 아동양육시설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단순보호 기능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들과 시설 아동을 연계하여 다양한 다기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복지센터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인력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초기의 투자와 교육 실시

단순수용보호 중심의 현재의 아동양육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로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과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가 지원하고 대전아동복지협회와 대전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 준비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4-1-3]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 방향



4. 대전광역시의 정책방향

1) 아동양육시설 수요에 기초한 지역별 균형배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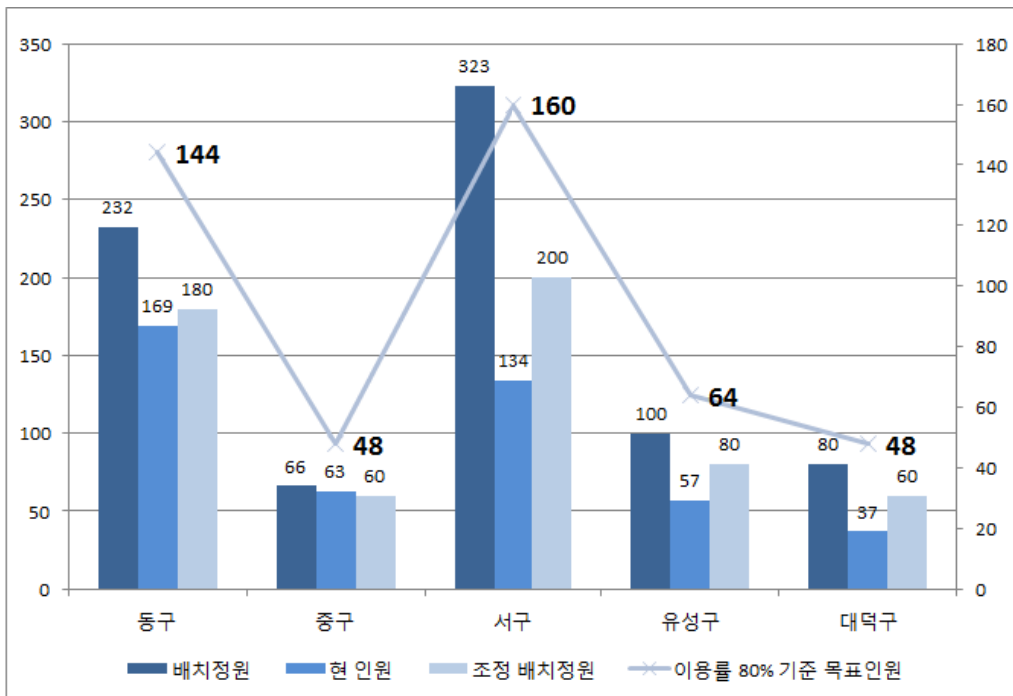
향후 중장기 아동양육시설 수요를 파악하여 아동양육시설을 감축하고 정원조정과 지역별 균형 배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2017년간 아동양육시설의 배치조정 방안은 다음 <표 4-1-2>와 같다. 이 안에 따르면 동구 1개소 서구 2개소의 시설을 다른 목적의 시설로 전환하도록 하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배치정원은 현재 801명에서 580명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된 배치정원 대비 이용률 80%에 기준한 배치 예상 인원(464명)은 현재 배치인원 460명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

장애아동시설 등 다른 분야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서구와 동구의 아동양육시설의 일부를 다른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대전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4-1-2〉 2013-2017년(5개년계획) 기간 중 아동양육시설의 배치 조정 방안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합계
현재	시설수	4	1	5	1	1	12
	배치정원	232	66	323	100	80	801
	현원	169	63	134	57	37	460
조정	시설수	3	1	3	1	1	9
	배치정원	180	60	200	80	60	580
	이용률 80% 기준 목표인원	144	48	160	64	48	464
증감	현 시설수 대비 증감시설수	-1	0	-2	0	0	-3
	현 인원대비 증감인원	-25	-15	26	7	11	4

[그림 4-1-4] 아동양육시설 배치조정방안(향후 5개년)



2) 다른 분야의 목적사업으로 기능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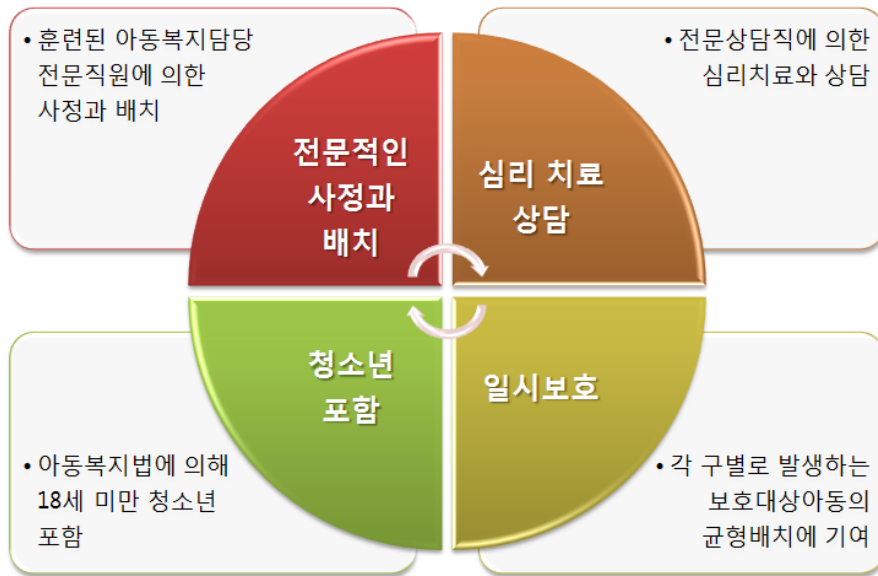
현재 12개 아동양육시설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개의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기능전환을 희망하는 시설을 파악하고 사·구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등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기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기능전환이 되는 시설의 직원들은 새로운 분야의 업무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아동들은 새롭게 기능 전환한 장애아동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를 위한 (지역)아동복지센터 시범사업

대전광역시 아동양육시설 중 시설조정 후 남게 되는 아동양육시설 9개 중 보호처분을 받은 위기청소년 보호라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돈보스코의집과 나자렛집을 제외한 7개 시설은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통합적이고 다기능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복지센터로 기능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초기년도 2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인력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차후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아동복지분야의 보호아동 초기대응의 중심축으로서 대전광역시아동복지센터 설치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에 부재한 공공 아동복지서비스의 중심축으로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보호대상아동의 욕구에 대한 전문적인 사정과 평가 없이 각 구청의 아동복지담당자에 의하여 배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유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차적으로 가칭 ‘대전광역시아동복지센터’에서 일괄 접수하여 훈련된 아동복지담당 전문직원에게 의한 전문적인 사정 평가 후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으로 최적의 가정 외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아동복지센터는 5~10명의 아동을 상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겸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각 구별로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의 불균형적인 배치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 국가인권위원회. (2010).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은주,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김정득 · 류진석 · 김성한 · 주은주 · 김태운. (2012). *대전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대전복지재단.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 동명아동복지센터. <http://www.dmchild.or.kr/>
-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1). *2010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사업결과 보고서*.
- _____ (2012). *2011 사회복지시설 특성화 다기능화 시범사업결과 보고서*.
-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2005). *아동복지시설 발전방안 개발연구*.
-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index.html>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2008a).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 _____ (2008b).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보고서*.
- _____ (2008c).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개선방안 연구*.
- _____ (2009). *아동청소년복지시설개선방안 연구*.
- _____ (2010a). *보건복지백서*.
- _____ (2010b).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보고서*.
- _____ (2011a). *보건복지통계연보*.
- _____ (2011b). *시설퇴소아동 실태조사 및 분석*.
- _____ (2011c). *연도별 요보호아동 현황*.
- _____ (2011d).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_____ (2012a). *2012년 아동분야사업안내*.

- _____ (2012b).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_____ (2012c). *아동복지시설 현황*.
- 보건사회연구원. (200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 _____ (201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 비교연구-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 서울특별시. (2011). *서울시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매뉴얼*.
- _____ (2012a). *서울시 아동복지사업안내*.
- _____ (2012b).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사업현황*.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http://child.seoul.go.kr/index.html>
- 석주영 · 안옥희 · 박인전. (2006). 집단게임놀이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활과학학*, 15(5), 709-718.
- 성미영. (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 및 내면화의 외현화 행동문제. *한국생활과학학*, 15(1), 17-29.
- 에덴원. <http://www.iedenwon.or.kr/>
-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백서*.
- _____ (2011). *청소년백서*.
- 오정수 · 이병승. (2008).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 조직혁신육구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26, 97-120.
- 오정수 · 정익중. (2008). *아동복지론*. 학지사.
- 오정수 · 이혜원 · 정익중. (2005). *선진복지국가 아동정책 비교와 21세기 한국아동정책의 발전 방안*.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복지학회.
- 오정수. (2006).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나눔의집.
- 이혜연 · 서정아 · 조흥식 · 정익중 · 김귀랑. (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정선욱. (2009). *시설보호 청소년이 경험하는 시설 생활의 의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20(3):193-219.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허남순. (2004). *친인척 가정위탁과 일반가정 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18, 243-270.

Mcfadden, E. J. & Downs, S. W. (1995). *Family continuity: The new paradigm in permanence planning*. Community alternatives, 7(1).

Brian F. O'Neill. (2004). *Influences on Disposition Decision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Journal for Juvenile Justice Services, 19, 29-46.

Britner, P. A., & Mossler, D. G. (2002). *Professionals' decision-making about out-of-home placements following instances of child abuse*. Child Abuse & Neglect, 26, 317-332.

Clyman, R. B., & Harden, B. J. (2002). *INFANTS IN FOSTER AND KINSHIP CARE*.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3(5), 433-434.

Daniel Leonard Webster. (1999). *California's Group Care Popul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of Placement Dynamics and Outcomes*. Berkeley: The Univ of California.

Denby, R. W., & Curtis, C. M. (2003). *Why Special Populations Are Not the Target of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A Case for Program Reform*.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 149-199.

Downs, S. W., Moore, E., Mcfadden, E. J., Michaud, S. M., & Costin, L. B. (2004).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 : Policies and Practice(6th ed)*. Pearson Education, Inc.

Ellis, R. A., Dulmus, C. N., & Wodarski, J. S. (2003). *Essentials of Child Welfare, Essentials of Social Work Practice series*, John Wiley & Sons, Inc.

Ira M. Schwartz. (1991). *Out-of-Home Placement of Children: Selected Issues and Prospects for the Future*.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9, 189-199.

John Devaney & Trevor Spratt. (2003). *The Fourteenth National Conference on Child Abuse & Neglect : Gateways to Prevention*. Conference Report, Child Care in Practice, 9(3), 251-255.

- Littell, J. H., & Girvin, H. (2004). *Caregivers' readiness for change: predictive validity in a child welfare sample*. Child Abuse & Neglect, 29, 59-80.
- Llewellyn, G., Dunn, P., Fante, M., Turnbull, L., & Grace, R. (1999). *Family factors influencing out-of-home placement decision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3(3), 219-233.
- Llewellyn, G., McConnell, D., Thompson, K., & Whybrow, S. (2005). *Out-of-home Placement of School-ag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High Support Need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8, 1-6.
- Marlys M. Stardt. (2001). *Use of Services Prior to and Following 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0(1), 101-114.
- Michael Ungar. (2001).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silience Among Problem Youth in out-of-home Placement: A Study of Health-Enhancing Deviance*. Child & Youth Care Forum, 30(3), 137-154.
- Park, J. M., Metraux, S., Brodbar, G., & Culhane, D. P. (2004). *Public Shelter Admission among Young Adults with Child Welfare Histories by Type of Service and Type of Exit*. Social Service Review, The Univ of Chicago, 284-303.
- Veitch, B. M., Bray, A., & Ross, N. (2003). *It was the hardest and most painful decision of my life! : seeking permanent out-of home placement for sons and daught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28(2), 99-111.
- Wattenberg, E., Luke, K., & Cornelius, M. (2004). *Brief encounter: children in shelter for 7 days or les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6, 591-607.
- Zima, B. T., Bussing, R., Freeman, S., Yang, X., Belin, T., & Forness, S. R. (2000). *Behavior Problems, Academic Skill Delays and School Failure Among School-aged Children in Foster care: Thier Relationship to Placem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1), 87-103.

부 록

○ 조사대상별 설문조사지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전문가 심층설문조사지

<전문가용 기입조사>

조사서 코드		조사서번호	
--------	--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 사회복지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사지입니다.

사회복지 환경은 날로 변화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중 특히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대적·지역적 욕구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에 대한 폭넓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귀한 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우리 시의 사회복지 발전과 아동복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디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 8.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본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응답 중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 042-331-8928/8909)

* 아래 양식에 V 표시나 번호로 응답해주시고, 기타 의견은 응답분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1. 귀하의 전문 영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 ① 학계 ② 아동복지기관 ③ 관련 공무원 ④ 기타()

2. 아동양육시설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접하시게 되는 사회복지환경 중 귀하께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 3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저출산과 아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아동양육시설 수요의 감소
 ② 미혼모와 아동인권 의식의 향상으로 미혼모에 의한 직접 양육 증가
 ③ 가족해체, 빈곤 등 위기가정 아동의 증가 혹은 감소
 ④ 가정과 지역사회중심의 아동양육과 지원으로 시설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감소하고 가정위탁과 입양 등 대안의 양육 필요성 증가
 ⑤ 아동복지의 전문화와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증가
 ⑥ 기타()

3. 2012년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기능화”를 주요 변경사항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아동의 권리와 잠재적 능력개발을 제한하는 비개방적인 집단생활
 ② 사회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는 시설운영의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
 ③ 아동의 배치과정에서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사정이 없이 입소되는 전달체계 (*서울과 부산 등의 타지역에서는 공공아동복지센터가 사정과 배치를 하고 있음)
 ④ 아동인원에 비례하여 운영되는 전근대적인 재정지원방식
 ⑤ 시설운영자의 노령화와 세대교체의 지연
 ⑥ 기타()

4.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에 대해 필요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에 대해 필요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6-1. 아동양육시설이 기능전환을 하게 된다면 적절한 방향과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영역에는 인구대상별로는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 영역이 있고, 사업내용에서도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아동복지 영역 내 다른 사업
- ② 청소년복지
- ③ 노인복지
- ④ 장애인복지 (장애아동복지 등 포함)
- ⑤ 여성복지
- ⑥ 다문화가족복지
- ⑦ 기타()

6-2.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기능전환 부분에 대해 다음의 의견란에 자유롭게 자세하게 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란]

7. 아동양육시설이 기능다각화를 하게 된다면 적절한 방향과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질문들에 답해주시요. (아동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사업 외에도 다른 아동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7-1. 아동복지 영역에서 아동양육시설 기능다각화의 적절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표시해주시요.(아동복지영역)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 제공 사업)
- ② 아동주간보호사업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 제공. 어린이집 등)
- ③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 아동 등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학교폭력예방 사업 실시)
- ④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실시)
- ⑤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제공)
- ⑥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저소득아동대상 방과후 보호와 교육,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
- ⑦ 기타영역()

7-2. 사회복지 전체 영역에서 아동양육시설 기능다각화의 적절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1순

위에서 3순위까지 표시해주십시오.(사회복지전체영역)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아동복지 영역 내 다른 사업
- ② 청소년복지
- ③ 노인복지
- ④ 장애인복지 (장애아동복지 등 포함)
- ⑤ 여성복지
- ⑥ 다문화가족복지
- ⑦ 기타()

7-3.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기능다각화에 대해서 다음 의견란에 자유롭게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란]

8.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기대하거나 요청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조사지를 작성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귀하가 응답한 본 자료는 대전광역시 아동복지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연구

아동복지기관 종사자 설문조사지

<종사자용 설문조사>

조사서 코드		조사서번호	
--------	--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사지입니다.

사회복지 환경은 날로 변화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중 특히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대적·지역적 욕구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에 대한 폭넓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귀한 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우리 시의 사회복지 발전과 아동복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디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 8.



본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응답 중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 042-331-8928/8909)

4. 아동양육시설의 다기능화에 대해 필요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전환에 대해 필요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6. 아동양육시설이 기능전환을 하게 된다면 적절한 방향과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영역의 기능전환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도 자세하게 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영역에는 인구대상별로는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사회복지 영역이 있고, 사업내용에서도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아동복지 영역 내 다른 사업
- ② 청소년복지
- ③ 노인복지
- ④ 장애인복지 (장애아동복지 등 포함)
- ⑤ 여성복지
- ⑥ 다문화가족복지
- ⑦ 기타()

7. 아동양육시설이 기능다각화를 하게 된다면 적절한 방향과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질문들에 답해주시요. (아동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사업 외에도 다른 아동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7-1. 아동복지 영역에서 아동양육시설 기능다각화의 적절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표시해주시요.(아동복지영역)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 제공 사업)
- ② 아동주간보호사업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 제공. 어린이집 등)
- ③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 아동 등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학교폭력예방 사업 실시)
- ④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실시)
- ⑤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제공)
- ⑥ 방과후아동지도사업 (저소득아동대상 방과후 보호와 교육.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
- ⑦ 기타영역()

7-2. 사회복지 전체 영역에서 아동양육시설 기능다각화의 적절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표시해주시요.(사회복지전체영역)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아동복지 영역 내 다른 사업
- ② 청소년복지
- ③ 노인복지
- ④ 장애인복지 (장애아동복지 등 포함)
- ⑤ 여성복지
- ⑥ 다문화가족복지
- ⑦ 기타()

8. 다음은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란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이용아동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공간활용이 효율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시설의 입지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법인의 경영실태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시설 운영진의 경영실태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대전광역시)에 기대하거나 요청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조사지를 작성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귀하가 응답한 본 자료는 대전광역시 아동복지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연구

지역주민 사회복지 욕구조사

<지역주민용 설문조사>

조사서 코드		조사서번호	
--------	--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지역사회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우리 시의 사회복지 발전과 아동복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디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1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2012. 8.



본 조사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응답 중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 (☎ 042-331-8928/8909)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답해주시시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3. 귀하가 거주하는 동은 무슨 동입니까? _____ 동

4. 귀하의 거주동의 거주기간은 얼마입니까? _____년 _____개월

(거주 시작년월 : 년 월)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기타 ()

6. 귀하의 가족 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함께 거주하는 가족 기준)

명
○

7. 귀하의 가족 중 해당하는 가족원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① 아동 (만12세 이하)
- () ② 청소년 (만13세~만20세)
- () ③ 장애인
- () ④ 노인 (만 65세 이상)
- () ⑤ 기타 ()

※ 다음은 사회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답해주시요.

1.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살기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좋은 곳이다
() ② 약간 좋은 곳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열악한 곳이다
() ⑤ 매우 열악한 곳이다

2.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 ② 조금 낮은 수준에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높은 수준에 있다.
() ⑤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앞으로 가장 힘써야 할 복지 분야 3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아동복지

② 청소년복지

③ 여성복지

④ 노인복지

⑤ 장애인복지

⑥ 정신보건복지

⑦ 저소득층복지

⑧ 다문화복지

⑨ 기타()

4. 지금 살고 계신 지역(동)에서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한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제내용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 수준 이다.	대체로 심각	매우 심각
1) 복지시설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미비한 교육환경문제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시설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아동 청소년 이용 시설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범죄, 학교폭력 등	①	②	③	④	⑤
6) 기타(내용:)	①	②	③	④	⑤

5.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다음의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며, 이용경험이 있으십니까? 또,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시설(기관)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의향		
	잘안다	조금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비해당
1) 종합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2) 아동복지시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3)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4) 노인복지시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5) 장애인복지시설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6) 주민자치센터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7) 보건소	①	②	③	①	②	①	②	③

6.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지역소재 아동양육시설은 _____입니다.)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거의 모른다.

() ⑤ 전혀 모른다.

7.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양육시설이 다른 사업을 할 경우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① 저소득층복지
- () ② 청소년복지
- () ③ 여성복지
- () ④ 노인복지
- () ⑤ 장애인복지
- () ⑥ 정신보건복지
- () ⑦ 기타()

8. 아동복지 사업 중 추가되거나 변경되기를 바라는 분야나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 이 있습니까?

[illegible]

■ 수고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 귀하가 응답한 본 자료는 대전광역시 이동복지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 2012-4]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연구

발행일 : 2013년 2월

저자 : 김 정 득 외

발행처 : 대전복지재단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 (우: 301-722)

전 화 : 042-331-8909

팩 스 : 042-331-8924

홈페이지 : <http://www.dwf.kr>

ISBN 978-89-98568-04-7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에 있습니다.
